第304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11年12月30日(金) 午後 3時

議事日程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 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1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 2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 30.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요구안
- 3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
- 3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 4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51.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59. 씨름진흥법안
-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9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9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10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1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6.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27.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1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3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附議된案件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 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손범규 의원 발의)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ㆍ권영진ㆍ김정권ㆍ서병수ㆍ이진복ㆍ 김용구ㆍ황영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이한성ㆍ장제원ㆍ김호연 의원 발의)8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ㆍ이정선ㆍ이종혁ㆍ박대해ㆍ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송민순·원희목·유재중·윤석용· 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이한성 의원 발의) ········ 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8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1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8 1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강창일・ 16.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2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15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15 2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구상찬·박민식·박준선· 26. 서병수・유기준・윤상현・이명규・이사철・이진복・임동규・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15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박선숙·신건·김성곤·조배숙·강창일·강봉균·박영선·홍재형·오제세·김효석·
	박주선·백재현·조영택·신낙균 의원 발의)15
2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
	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
2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
	조영택·장병완·문희상·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창일·김영진·홍영표·이성남 의원
	발의)(계속)
30.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
	요구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17
3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여성가족 제외)
	제출]18
3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8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ㆍ김성수ㆍ김상희ㆍ
	김효석 · 김영록 · 송훈석 · 정해걸 · 오제세 · 강기갑 · 강석호 · 조경태 · 이용희 · 김춘진 · 김학용 ·
	최인기 의원 발의)19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
	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걸・황영철・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
	나성린・홍일표・여상규・박보환・김성회・안효대・윤영・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
	유일호·이화수 의원 발의) ······19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ㆍ강기정ㆍ
	조경태ㆍ이용희ㆍ김효석ㆍ오제세ㆍ이사철ㆍ송훈석ㆍ최인기ㆍ최영희ㆍ김성수 의원 발의) … 19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9
3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19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20
3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20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창일·양승조·조경태·
	강기정・원희룡・유성엽・김영록・김재윤・김동철・최규성・황영철 의원 발의)20
4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홍사덕ㆍ김태환ㆍ이해봉ㆍ유승민ㆍ박종근ㆍ배영식ㆍ정희수ㆍ주성영ㆍ이명규ㆍ조전혁ㆍ최경환ㆍ
	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
	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헌 의원 발의)21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2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2
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2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2
4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22
47.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2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22
4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22
5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22
51.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
	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
	이경재·안홍준·안상수·이성헌·강승규·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26

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
	이명수・이사철・노철레・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한기호・
- 0	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윤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
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7
5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8.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유기준·원혜영·
	고흥길・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
	홍사덕 · 조진형 · 나성린 · 박진 · 이한성 · 정두언 · 한선교 · 허원제 · 이철우 · 진성호 · 장광근 ·
	황영철 · 신성범 · 김성수 · 조전혁 · 이춘식 · 유일호 · 이은재 · 이사철 · 배은희 · 진영 · 임동규 ·
	최경희ㆍ이성헌ㆍ김금래ㆍ황진하ㆍ김장수ㆍ이정현ㆍ강명순 의원 발의)28
59.	씨름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강승규・김성동・김세연・박보환・이경재・
	임해규·정해걸·정희수·조윤선·조전혁·주호영 의원 발의) ···································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
	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29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30
6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
	정해걸ㆍ김을동ㆍ최구식ㆍ정갑윤ㆍ이명규ㆍ박민식ㆍ이정선ㆍ배은희ㆍ이사철 의원 발의)30
6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0
6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0
6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30
6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
	주승용ㆍ김재균ㆍ유선호ㆍ김창수ㆍ문학진ㆍ박우순ㆍ이찬열ㆍ전병헌ㆍ송훈석ㆍ김진표ㆍ홍재형ㆍ
	김영환 의원 발의)30
6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주승용·강창일·
	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전병헌・김상희 의원 발의)30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30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30
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34
7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5
7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ㆍ이명수ㆍ
	오제세 · 임영호 · 김낙성 · 김창수 · 변웅전 · 이영애 · 주승용 · 신낙균 · 조배숙 · 김성곤 · 강성천 ·
	아구배 · 시여수 · 이 재서 · 귀서태 · 유저혀 · 류그차 · 기재구 · 이나여 · 바서여 · 저지서 · 호히더 ·

	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	• 35
8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35
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토	∄ •
	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정갑윤・정진섭] .
	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 35
8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S	<u>.</u>
	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	. 36
8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6
8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ㆍ이종걸ㆍ양승조ㆍ유선호ㆍ전병형	નું •
	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	. 38
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이애주	٤.
	윤석용·유승민·이윤성·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김성동 의원 발의) ·······	. 38
9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전	<u>.</u>
	김영진 • 오제세 • 유성엽 • 김성곤 • 안민석 • 김영록 • 이용경 • 최재성 • 강창일 의원 발의)	. 38
9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8
9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38
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8
9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9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38
9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 40
9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 45
9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45
1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45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	} •
	이종혁ㆍ이인기ㆍ한기호ㆍ박대해ㆍ김을동ㆍ정갑윤ㆍ최병국ㆍ임동규ㆍ김소남ㆍ김태원ㆍ김정전	
	안경률・유정현・진영・윤상일・이명수・신지호・안효대・김충조・문학진・장세환 의	
	발의)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49

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1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12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49
1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1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9
126.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56
127.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56
О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5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57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57
1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57
О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60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60
13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60
О	5분자유발언61

(15시35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 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 손범규 의원 발의)
- 2.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 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이한성· 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 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 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 최구식 의원 발의)
- 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송민순·원희목·유재중· 윤석용·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

이한성 의원 발의)

- 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 원장 제출)
-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 원장 제출)
- 1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 1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해양위원장 제출)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 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선박관리 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해외건설촉진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댐건설 및 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 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현기환** 박희태 국회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 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 법안은 선박관리산업의 정의와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심의위 원회'의 명칭을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 택의 형태로만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소남 의원, 김우남 의원, 박민식 의원, 안홍준 의원, 최 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 설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 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 공기관이 업무시설의 신축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총저수용 량 1억 5000만m³ 이상의 댐에 대해서는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댐건설 사업시행자의 타 인 토지 출입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소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수정·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한 것으로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 기를 조작하거나 도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조항 등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허천 의 원, 김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 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 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정기 · 수시점검을 실시하도 록 의무화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에서는 건축하려 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 의원, 이명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세종특 별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정신질 환 등의 증상이 경미한 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면허 결격사 유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동일 하게 규정하였으며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건설기 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박희태 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갑자기 반대토론이 있어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장기갑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부터 먼저 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4인 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선 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8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 시 삭제하였던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과태료 부과 등 3개 조항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 운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항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의민영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항공법 개정만으로 인천국제공항의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경우도 공항 운영권만을 매각하고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이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 어떠했습니까?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

항공사법과 항공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분 매각을 전제로 3년 연속 정부 예산을 편성해 왔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성 제고를 당초 민영화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들고나오는 등 사실상 매각을 위한 매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 지방 공항 민영화를 통해 공항 경쟁력을 높인다며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된 매각 공개입찰에 적격 자가 없거나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미국과 캐나다 합작회사와 흥국생명, 한국에 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참여하여 급조한 청 주공항관리주식회사 측과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 운영권을, 250억에서 300억 사이에 30년간 운영 권을 매각할 생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이 공항 운 영권만 넘기면 된다는 발상이 결국 공개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에 의한 헐값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 재벌을 위해 공항마저 민영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논란에서도 알 수 있 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민 영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 니다. 또한 야당은 물론 다수의 여당 의원들 또 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난 8월에 국토해양위원 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했던 공항 민영화의 근거를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 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그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 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반대토론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공항 민영화의 길이 트인다면 향후 국부 유출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법 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9인, 기권 13 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5인 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해 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14.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1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 강창일·강기갑·노영민·이찬열·오제세· 김재윤 의원 발의)
-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19.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 2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

(15시59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1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신영수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신영수**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출신 국토해양위 소속 한 나라당 신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곽정숙 의원, 김소남 의원, 이병석 의원, 백재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및 재정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영민 의원, 안홍준 의원,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3 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물 부족이나 가뭄에 대비하여 도서 · 해안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 · 이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병 석 의원, 이정선 의원,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 기본계획과 집행계 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근거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에 관한 규 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준선 의원, 김효재 의원, 이병석 의원, 원유철 의원, 박상돈 의원,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 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 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 획에 독도의 관광촉진과 거주민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 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근 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철도횡단교 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 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진표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광 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하고 부담금 이 중부과 면제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광역 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

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에 걸치는 대지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은 권경석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지역별 건축물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 지 소비 총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 하도록 하며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려는 경 우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규 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 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개발계획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확대하며 인허 가 등의 의제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간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 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먼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독 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2인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통합진보당의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뿐만 아니 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나 공기업 등이 주도하였던 도시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업자나 부 동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 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를 무색하 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 다. 이것은 얼마 전에 법 개정안으로 반영이 되 었던 것입니다. 이미 현행법 제11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국가나 공기업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타당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검토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과도한 특혜가 주어질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동산투자회사는 바 로 맥쿼리의 한 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 니다. 맥쿼리 리얼에스 테이트 코리아라는 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로서 상 업용 건물을 인수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입니다.

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부동 산투자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내용인데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24개뿐입니다. 그중에서 이 특정 회사는 두 번째로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 고 있는 회사인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특정 부동산투자회 사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차익만 노리 는 무분별한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거·상업·산업· 교육・유통・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 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칫 부동산을 사고파는 특정 기업에게 도시개발의 막중한 권한을 주는 것은 타당치 않 은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함께 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25 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을 의결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이 두 안건은 법제사법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 2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구상찬·박민식·박준선· 서병수・유기준・윤상현・이명규・이사철・ 이진복·임동규·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건・김성곤・조배숙・ 강창일 · 강봉균 · 박영선 · 홍재형 · 오제세 · 김효석 · 박주선 · 백재현 · 조영택 · 신낙균 의원 발의)
- 2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16시17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 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 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李珍福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부산 동래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권택기 의원, 이상민 의원, 김재균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묘지에 소방공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공무원으로서 알선수재의 죄를 범한 사람 등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조정식 의원, 김충환 의원이 각각대표발의한 2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헌법 전문에 명시된 $4\cdot 19$ 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cdot 19$ 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 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건 등 이상 3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독립유공자로 뒤늦게 밝혀져등록 당시 현행법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자녀및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한 명을 손자녀로보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법률 안은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 등의 조사 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법률 안의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훈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은 현충일 등과 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도록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국 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중 국회와 대법원장 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각 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6인, 기권 2인으로서 국 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3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2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동철·조영택·장병 완·문희상·신낙균·강기정·원혜영·강 창일·김영진·홍영표·이성남 의원 발의)
- 30.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6시27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한 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0항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 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가 성립하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 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26인, 반대 41인, 기권 35 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 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35인, 반대 22인, 기권 42

인으로서 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건)[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여성가족 제외) 제출]

(16시2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1항 2011년도 국 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4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 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6시3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2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 법 제34조에 따라서 제출한 것입니다.

수입위생조건 그 자체에 대한 국회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고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 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반대토론에 계속 나오지요?

이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의 심 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캐나다는 올해도 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쇠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촛불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30개월 미만으로 민간자율로 조정을 했고 또 국회에서는 특위를 열어서 어떻든 3년 이내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대한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법제처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보도자료 낸 내용에는 국회의 심의는 예산안심의·확정이나 법률안 심사와 같이 체계·형식·자구 및 내용 변경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보다도 훨씬 행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약화 내지 상쇄시킬 우려가 많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의권에 대한 권한을 엄청나게 우려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심의권을 해 놓은 것인데 이번에 이 캐나다산 수입 쇠고기를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 심의권한은 어디로 갔는지 싹 다 달아나 버리고 허물만, 빈껍데기만 남겨 놓은 의견서만 제출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협상을 할 때 국회가 이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합의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을 먼저 해 놓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는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캐나다산 쇠고 기 수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보도하고 입 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 는 겁니다.

왜 캐나다가 대한민국만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를 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 만이나 다 캐나다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수입을 안 하고도 있고 20개월 미만으 로도 하고 있고 30개월 미만 살코기만도 하고 있 는데 30개월 이하의 뼈까지 통째로 수입하는 이 안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우 농가들의 송아지값이 35만 원, 30만 원이라 했지만 젖소 송아지 한 마 리 1만 원도 안 합니다. 1만 원 주고 가지고 가 래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축산농가들이 이 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산 쇠고 기가 40%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산 고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반대를 해도 수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찬성을 해도 수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찬성・반대가 아니라 이것은 성원이 안 되도록 재석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국회가 심의를 보류하면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가 호소를 드리는지는 잘 아 실 겁니다. 농민들이 지금, 특히 축산농민들, 한 우 농가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에, 송아지 한 마리에 1만 원도 안 한다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다가 제일 강하게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서 30개월 이상짜리 통뼈까지, 내장까지 다 수입을 했고, 광우병 위험 통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수 입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만 지정을 해 가지고 WTO에 제소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책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입법부로서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고 농 민들, 축산농민들의 울부짖음을 반영한다면 재석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심의를 19대로 넘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09인, 반대 45인, 기권 24 인으로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위문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

(16시39분)

○**부의장 정의화** 다음은 어제 의결하려고 하다 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 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등을 위로하고 그 노 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서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 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수· 김상희 · 김효석 · 김영록 · 송훈석 · 정해걸 · 오제세・강기갑・강석호・조경태・이용희・ 김춘진·김학용·최인기 의원 발의)
- 3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 정해걸 · 황영철 · 이사철 · 이철우 · 김호연 · 주성영 · 김우남 · 나성린 · 홍일표 · 여상규 · 박보환 · 김성회 · 안효대 · 윤영 · 유재중 · 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이화수 의원 발의)
-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 조경태 · 이용희 · 김효석 · 오제세 · 이사철 · 송훈석·최인기·최영희·김성수 의원 발의)
- 3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 식품위원장 제출)
- 3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 식품위원장 제출)
- 3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3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 수산식품위원장 제출)
-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창일·양승조· 조경태·강기정·원희룡·유성엽·김영록· 김재윤·김동철·최규성·황영철 의원 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33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38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38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39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39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제40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이영애** 존경하옵는 정의화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인증받을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정하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탄소흡수원 증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 한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협정 및 민간 어 업협력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연근해 어선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 어선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계산의 산정기준을 현재 월단위에서 일 단위로 완화하고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선중계

시설 설치를 산지전용신고제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석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며, 산지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사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과 학적인 예측정보체계의 구축 등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 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농어촌 주택 등에 설치 된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사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 축장의 자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및 그 적정 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등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 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논농업과 밭농업 간 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존의 논농업뿐만 아니라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밭농업에 대해 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5년부 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영애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 그렇습니까?

권영길 의원님 찬성이 기권으로 됐다고 그러니

까 고치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반대 5인, 기권 1인 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산 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시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농 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축 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홍사덕 · 김태환 · 이해봉 · 유승민 · 박종근 ·

배영식 · 정희수 · 주성영 · 이명규 · 조전혁 ·

최경환 · 이인기 · 김성조 · 박보환 · 주호영 ·

조원진 · 원희목 · 이한구 · 권영진 · 김세연 ·

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

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헌 의원 발의)

42.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 기술위원장 제출)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 기술위원장 제출)
- 4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7.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 기술위원장 제출)
- **4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5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6시52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41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2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6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안민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입니다.

우리 18대 국회에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외국어전용타운의 조성, 외국어 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특구교육감은 외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외국어교원 양성 과정의 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학교 산학겸임강사 등의 미성 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 교법의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할 때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소외계층에게 온 라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미성년 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 되도록 하며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녀 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교육공무원의 근 속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유치원 강사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사유, 비위사실의 통보제도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임용 제한 등에 대해서 국공립 교원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재외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 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참여자 등도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은 일반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학교체육과 청소년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또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 지 못한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학기 중의 상시 합숙 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간강사 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 를 부여하는 한편 대학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하여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 원 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임용 절차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임용계약 기간 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입학사정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원에 준하여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교육 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 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현재 인천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 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안민석 의원님 제안설명하는 것 참 오래간만에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9인, 기권 3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으로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초・중등교육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조정식 의원님 하시겠어요? 투표하십시오. 천 천히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5인, 기권 2인으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3인 으로서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을 출신 권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7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서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지만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법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회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 시간 강사 양산 법안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평생 비 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권장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문제점이 많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시급을 1만 원 늘려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는 대신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본래 이 법의 개정 논의의 시작은 교육자인 시 간강사들이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교원지위를 가 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교원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교원 외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외교원이 무 슨 말이냐 하면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고되어도 교원소청심 사위원회에 제소 권리도 없고, 사립학교 연금 대 상에서도 제외했으며, 교육연구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용안정조치도 없는 껍데기 교원으로 시간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되 교원이 아닌 현대판 홍길동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데는 정부 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의 절반을 시간강사들이 책임지고 있고, 정규교원 충원율은 정부 발표로 72%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대학의 교원 충원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정규교원, 즉 교수를 충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 충원율을 올리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백마에 검정 줄 칠하고 얼룩말이라고 우기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교수노조, 즉 강사노조가 결사 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교수노 조의 한 축은 이 국회 앞에서 3년 동안 천막 농 성을 하면서 이 법안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족집게 과외를 받아 대학에 입 학하면 시급 6만 원짜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 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 결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자격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 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부결시켜야 합 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노조들이 이 법안을 막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들의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17대 국회가 범한 우를 18대 국회가 범하지 맙 시다. 18대에 17대 국회가 만들었던 비정규직 악 법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28인, 반대 31인, 기권 53 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유 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또 반대토론이냐고 생각들 하실 텐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에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 된 적이 없던 서울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장에서 4 분 만에 날치기 통과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 억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법인은 이틀 전인 28일에 공식적으로 발 족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법인화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인천대 법인화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무한 경쟁과 교육 신자유주의의 상징이 바로 대학 법인화입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가장 분명한 복지인 교육은 대학 법인화로 풀 것이 아 니라 국공립대 확대로 풀어야 합니다.

돈 안 되는 기초학문을 폐지시키며, 등록금이 비싸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법인화가 아니라 정부 의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공립대 전 환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선배 · 동료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반대투표 해 주시지 않으면, 부결시켜 주 시지 않으면 기초 전공학과가 폐지되고, 1000만 원 등록금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와 마 찬가지로 국공립대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앞으로의 미래도 그렇게 될 가 능성이 농후합니다.

나아가 모든 대학은 강의 연구 기관이 아니라 취업학원이나 이윤을 남기는 회사로 전락할 것입 니다.

저는 국립대 하나 없는 인천시의 280만 시민들 의 시립 인천대에 대한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 호소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의 재정을 확충하고, 인천에 장 기적인 인재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인 천지역 여러 동료 의원들의 심정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대의 발전은 법인화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국립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립대 전환이 올바른 정책인 겁니다.

정부의 법인화 정책에 밀려 경쟁 교육, 신자유 주의 교육의 상징인 법인화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학의 발전 방향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20%도 되지 않는 국공립대를 법인화시키는 것은 고등교육 공공성에 역행하는 길입니다.

교육의 가치와 고등교육 공공성을 위해 인천대 법인화가 아니라 인천대 국립대를 위해서 이 법 안에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조전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약 15년 간 인천대학교에서 강의를 맡았던 인천대 교수 출신 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추진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잘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죽 지켜봐 왔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정책은 사실은 민주당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지금 원내대 표로 계시는 김진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서 추진하던 정책이었습니다.

이 법은 인천 285만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에 적어도 1개, 많게는 서너 개의 국립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는 국립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에 있어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은 그동 안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아픈 역사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일주일 만에 130만 인천시민들이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야관계없이 인천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님, 홍영표 의원님도 이 법안에 대해서지지하고 서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시장이신 송영길 시장 그리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 인천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지지 하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법인화 법안과는 달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인천대학의 내부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대부분이 역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조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1인, 기권 11 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1.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이경재·안홍준·안상수·이성헌·강승규·김용대·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
- 52.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결·정미경·조진래·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윤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
- 5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5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5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20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1항 이스포츠 진 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문화예술교 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출 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54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장병완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장병완 존경 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광주 남구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먼저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 에 관한 법률안은 공표된 게임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스포츠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 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 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건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간행물 수입 추천제 폐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확 대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 운영 등입니 다.

다음으로 임두성 의원, 강승규 의원, 조배숙 의 원, 윤석용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 고 정부가 제출한 총 7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를 개 편하고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등 금지 행 위를 구체화하여 관련 벌칙을 신설하며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등에 대 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문순 의원, 김금래 의원, 전혜숙 의 원, 전병헌 의원, 김재윤 의원, 장병완 의원, 김성 동 의원, 이낙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1 건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 · 통합한 위 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 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은 위탁 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게임물 등급분류기 관이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게임산업 이해 관계자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 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 이철우 의원, 홍사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립제 작사의 폐업 신고 의무화, 둘째 우수문화상품 지 정권자 확대, 셋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효과적인 문화기술 연구를 위하여 전담 연구기관을 만들어 운영하 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부대의 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장병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출 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국 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기권 6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4인 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8.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유선 의원 대표발의)(조유선·유기준·

원혜영 · 고흥길 · 이정선 · 이범래 · 나경원 ·

강용석 · 이두아 · 김성동 · 이병석 · 구상찬 ·

박준선 · 권영진 · 홍사덕 · 조진형 · 나성린 ·

박진 · 이한성 · 정두언 · 한선교 · 허원제 · 이철우 · 진성호 · 장광근 · 황영철 · 신성범 · 김성수 · 조전혁 · 이춘식 · 유일호 · 이은재 · 이사철 · 배은희 · 진영 · 임동규 · 최경희 · 이성헌 · 김금래 · 황진하 · 김장수 · 이정현 · 강명순 의원 발의)

- 59. 씨름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 강승규 · 김성동 · 김세연 · 박보환 · 이경재 · 임해규 · 정해걸 · 정희수 · 조윤선 · 조전혁 · 주호영 의원 발의)
- 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김우남 · 김재윤 · 김학송 · 김부겸 · 조영택 · 유선호 · 김춘진 · 최규성 · 홍영표 · 백재현 · 전혜숙 의원 발의)

(17시31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8항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9항 씨름진흥법안, 의사일정 제60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님 나 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이철우 존경 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북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 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 관광숙박시설 확 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호텔시설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면서 관광숙박시설 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 책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씨름진흥법안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씨름 전용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조성 운영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 정한 내용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 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요금 약정 한도 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사

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를 유선전화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동전화사업 자만 부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씨름법안에 대해서는 천하장사들이 지금 이 자 리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봉걸, 이태현 또 황규 연 그리고 현재 씨름선수들 또 씨름 관계자, 단 체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동안 침체된 씨름 활 성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료 ·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사한 대 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철우 의원님께서 씨름협회장 아니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5인, 기권 2인 으로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씨름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씨름이 일본의 스모 이상으로 크게 발전 진흥될 것을 희망하면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씨 름진흥법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수 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6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6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환 의원 대표발의)(김대환·박보환·이철우· 정희수·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 이명규·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
- 6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6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6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 강창일·주승용·김재균·유선호·김창수· 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헌·송훈석· 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
- 6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주승용· 강창일·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 전병헌·김상희 의원 발의)
-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 6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 경제위원장 제출)

(17시3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61항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6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69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이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知識經濟委員長代理 李和洙 7분 정도 걸리니까 차 한 잔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입니다.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 가 제출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유사석유제품'이라는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하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그 영업시설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가짜석유제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성격의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석유제품 취급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 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수입에 대 한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 로서 우리 위원회는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사전 및 사후 신고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 니다.

다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상기 의원, 강창일 의원, 김재균 의원, 김유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을 합한 총 6건의 동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첫째, 연구개발특구의 추가 지정에 따라 법률 제명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대한 특별법' 으로 변경하고,

둘째, 특구지원기구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개편하되 특구별 차별화된 육성을 위해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신탁관 리업에 대해 원칙적 허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할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환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동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 화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지 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정 · 지원 규정을 신 설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 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괄수주사 업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조합의 보 증ㆍ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활 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사채유동화증 권 인수 업무는 조합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을 고려하여 사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받은 신제품의 구 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매책임자 를 지정하게 하고, 구매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지 식경제부장관의 권고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 로 우리 위원회는 자료제출 절차 등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동반성 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둘째,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적인 합의에 따 라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 합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하여 현행 사업조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가 대기업의 사 업이양인 경우에는 사업이양 권고만을 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정갑윤 의원, 이춘석 의원, 강창일 의원, 김 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동 개정법률 안을 통합·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하 여.

첫째,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 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야간수송 등 농수 산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 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하였고, 규제범위의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령 별표1에 있는 대규모점포 종류 중 제1호인 대 형마트에만 한정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거나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화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다.

그러면 먼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으로서 대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1인, 반대 4인, 기권 2인 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미 FTA의 이른바 피해대책 법안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는 꼭 짚을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토론을 신 청하였습니다. 다만 형식을 토론기회를 얻기 위 하여 반대토론으로 신청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진전이 있기는 하나 그런 점에서 여러 가 지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지 금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 정, 그리고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서 영업제한 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한미 FTA나 한 · EU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 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취지로 하고 있는 중소 영세상공인과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 식의 권리를 위하여 이런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통합진보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유통산업에 관하여, 유통업에 관하여 아무런 조 건 없이 개방한 것과는 정확히 이것은 일치할 수 없는, 즉 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한미 FTA 나 한·EU FTA에서 유통업과 관련돼서는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보호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확히 두지 아니하면 지금의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계속 존속되기 어려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 미 FTA와 한 · EU FTA에 유보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재협상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미 FTA는 발효되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를, 국 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장차 발효될 가능성이 있 는 한미 FTA와 충돌을 피하려다 보니 상생법의 내용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이 조 항과 관련돼서는 좀 더 넒은 범위의 영업시간 제 한, 그리고 좀 더 많은 의무휴업일수가 필요하다 는 그런 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당초 오후 11시 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사위 논의에 서 1시간이 줄어들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 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사위는 체계ㆍ자구 수정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사위에서 내용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또한 이 조항에서 12조의2의

1항에 단서조항을 넣고 있어서 실제로 농산물 판 매가 5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마트 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중소 도시들에서 실제로 중소 영세 자영업 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로마트 때문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 골목 상권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대기업의 저항에 직 면해서 법사위에서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영업품목 제한이라든가 허가제 도입 등이 반드 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점이 정확하게 지적되지 아니하고 매우 후퇴된 내용이 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유통법에 대해서 찬성하나 이것은 이미 한미 FTA가 발효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것과 위배된다는 가능성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의 입법권을 줄이는 것으 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 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 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미 FTA의 이 부분에 대 한 재협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률, 앞서서 통과시키셨습니다만 그 법률 역시 사 업 이양의 경우에는 권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우 축소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 습니까? 역시 한미 FTA 때문에 위축 효과를 발 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협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의화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래도 이미경 의원께서 열심히 뛰어오는 성의 가 대단합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진수희 의원님, 투표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7인 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0.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 7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7시58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0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공공보건 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74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75항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주승용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외에 지방의료원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배아 및 유전자 연 구 분야에 한정돼 있는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 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여 주 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한국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인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성범죄 경력자의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며, 시설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중앙자활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명시하고, 광역 자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면서 그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생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공 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장 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7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 노동위원장 제출)
- 7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7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 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 이명수 · 오제세 · 임영호 · 김낙성 · 김창수 · 변웅전 · 이영애 · 주승용 · 신낙균 · 조배숙 · 김성곤 · 강성천 · 안규백 · 신영수 · 이재선 · 권선택 · 유정현 · 류근찬 · 김재균 · 이낙연 · 박선영 · 정진섭 · 홍희덕 · 손범규 · 정병국 · 홍영표ㆍ이미경 의원 발의)
- 8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 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8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 김성태 · 김재경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헌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 8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30 . 1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 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 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

8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8시06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6항 잔류성유기오 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78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악 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0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81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82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근로기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5항 임금채권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6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이상 1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金容九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2건의 법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관련 법률안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구 의원 대표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정부 제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노동 관련 법률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위원회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영 의원 대표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이상 12건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대안·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〇**부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의결정족수를 한 열서너 분 초과하고 있 기 때문에 오늘 밤늦게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꼭 자리 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 진행 중입니다.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기권 2인으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환

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배영식 의원님, 하십시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 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녹 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잠깐만, 김소남 의원님 하시고요.

아, 나중에 하나 플러스하시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최 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나성린 의원님, 빨리 하시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임 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8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종걸·양승조·유선호· 전병헌·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 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
- 8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김성동의원 발의)
- 9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김영진·오제세·유성엽·김성곤·안민석· 김영록·이용경·최재성·강창일 의원 발의)
- 9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 가족위원장 제출)
- 9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9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8시19분)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8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1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4항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4항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5항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최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家族委員長代理 崔敬禧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최경희 의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한 청소년보호법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부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의 책임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흥업소 등에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구제와 관련한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최규성 의원, 유선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 으로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청 소년단체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 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그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오제세 의원, 여상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전 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서 체계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하였으며, 이주배 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근거 등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동 법률안은 이정선 의원, 김소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 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성폭력피해자에 대 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 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 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하는 것이고, 정 부가 제출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 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최영희 의원, 신낙균 의원, 김혜성 의원, 김유정 의원 등 10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 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ㆍ청소년 대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에 의료인과 일명 학습 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 부터 한층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최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청 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청 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백……

(○강창일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나중에 속기록에 추가해 드릴게요.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가 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건 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7.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18시33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97항 통상조 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낙균 의원 외 87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낙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낙균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신낙균 의원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자간 협상과 FTA 및 국 민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조약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통상조약 추진에 대하여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회가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

비한 상황에서 통상조약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 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 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은 정 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정부 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의 외교 통상통일위원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통상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 분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권이 무력화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 관련 특 별위원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본 수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위헌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된 조항 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이미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 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 대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본 수정안 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신낙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통상절차법 제정은 18대 국회가 개원할 때 당시 한나라당과 교섭단체였던 민주당 간에 서면합의로써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되기로 약속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 오지 않으셨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그리고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문제로 매우 심각한 양 상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와 협상하고 도장 찍기 전에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것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 째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권과 그리고 협상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강제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통상절차법은 만약에 이 세 가지 요구가 충족 되지 못한다면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심지 어 이번 통상절차법은, 이번 안건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 발효 를, 한미 FTA 발효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야당 이 받아들여 달라는 일종의 거래 대가로서 한나 라당과 합의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 가 있는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건대도 첫 번째, 지금 수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위원회안 에서 수정안이 나왔던 것 중에 삭제된 안이 있습 니다. 그것은 통상조약이, 통상협정이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상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에 국내법에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통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21조에 넣어 놓으려고 했 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위헌 시비가 불거지자 비로소 수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당시 외통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셨던 한나라 당 위원들께서 '위헌이지만 야당이 요구하니까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헌인 법안도 넣어 준다'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법안이 거래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래가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정확히 판 단해야 하고 통상협정이 어떠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저는 21조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헌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16조에 보시면 "경제적 권익의 보장"이라는 조항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법률에서 하나의 통상협정이 이렇게 해석될 수 없다고 정할 수 있습니까? 법률의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삼권분립 원칙의 기초입니다.

이 16조는 이른바 한미 FTA가 국내 법률을 무효화하고 국내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없앨 수 있다는 합리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렇게 해석하지 않겠다고 우리 법률로 정하면 되 지 않느냐라는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 삼권분 립에 위반되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것은 위헌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아무 런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9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헌법 123조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적어 놓고있습니다.

'이런 통상조약을 체결하지 마라'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이런 의무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킬 수 없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조약을 체결하면 그 통상조약에서 우리 정부에게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의무는 국내법적 의무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두 의무는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두 충돌하는 의무를 지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는 할 수 있으나 두 충돌하는 의무를 이미 진상태에서 하나의 의무만 이행하여라라는 의무는, 이런 요구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통상협정 문제에 대해서, 통상절차

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17조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때 정부가 응하게 할 의무이지 정부가 국내 피해가 일정하게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려면 그런 정부의 재협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 번째로 이 17조는 피해가 생겨야만 정부에게 대책 강구 의무가 생깁니다.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순간에 정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앞으로 농축수산업이 무너질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항은 이렇기 때문에 실효성도 부족하고 실제로 문제를해결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2조가 있습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외교통상 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제가 낸 통상절차법과 많은 의원님들이 내신 통상절차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 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 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정할 수 있는……

(「부의장님, 토론 종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셔야 할 만큼 대단 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위원회를 정해서 정부 차원의 통일된 입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법안 내용이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위원회가 사라지고 통 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의 문제인데 수정안에서 다른 보완을 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인 보완이 전혀 되지 않 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조1항에서 "통상협 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에 정해 놓았습니다. 실 질적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한국이 취해 왔던 미 국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 헌장을 보면 이 조항은 '공개할 수 없다'로 해석되고 적용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한미 FTA에 관해서도 정오표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제 정리하시죠.

○**이정희 의원** 심지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이유에서 외교통상부교섭본부는 이 정오표 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의장님, 의회 규칙을 지키세요」하는 의 원 있음)

통상 협상의 상대방이 자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부의장님, 뭐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미 FTA 비준 날치기하신 분들입니다. 들어 주셔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 홍재형** 이제 정리하시지요.

○이정희 의원 정보 공개가 요청될 경우에 상대 방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단하 여 그것이 정말 비밀의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다 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 니다.

수정안의 문제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 겠습니다.

수정안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서 국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공개를 거부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수정안입니다.

왜냐하면 4조2항의 기본적인 문제는 4조1항에 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 률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국 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국회의장이 요구하 면 국민의 권한은 아무리 침해되어도 국회가 받 으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안 들려!」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 권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개인의 권한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 고 수정안도 이런 잘못이 매우 있기 때문에 의결 되어서는 아니되고, 그리고 원안은 더욱더 의결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통상절차법은 다시 원점 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 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박선영 의원님!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양심이 있으면 말이 나와? 어디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당 대표야, 당 대표. 뭣들 하고 있어!)

(「조용히 해요」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날치기해 놓고 뭣들 하고 있어!)

(장내 소란)

정숙하세요. 그만하세요.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지도 않 아? 그따위로 해 놓고 말이야.)

(「부의장님, 사회를 잘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양심이라도 있 어야지, 못된 것들. 조용조용히 하라니까…… 뭣들 하고 있어!)

박선영 의원님, 하시죠.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절차법은 18대 국 회 원 구성을 할 때 선결조건으로 나왔던 법입니 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조약체결권에 대한 감독 권과 견제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 습니다. 본 의원도 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절 차에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한 오류 를 가지고 있어서 위헌적일 때에는 그 위헌성을 알면서까지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법은 외통위에서 절차를 위배하면서 졸속 처리됐습니다. 법안 상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법안 내용을 회의가 시작되도록 배포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의 조항 들은 수정해서 오후에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 법의 경우에는 공청회도 거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정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거래의 대가로 태어난, 태 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당장 우리는 한미 FTA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국 관련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면충돌하는 모순적인법을 우리가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셈입니다. 입법부가 상호 충돌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또 위헌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조문들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장 문제가 큰 21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조1항은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에 대해서 국회가 통상조약의 이행 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로 한 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헌법이 아닌 하위법에서 규정하는 건 체계상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력발생 시기를 국회가 일정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점으로 한다면 그것 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 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를 다시 해서 부결을 시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하 나둘이 아닙니다.

더욱이 21조제2항은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자체의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는 협정문에서 미국 투자자

가 한미 FTA 11장 위반을 이유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 다.

결국 한미 FTA와 통상절차법 내용이 상호 모 순되면서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한미 FTA 통과시킨 것부터 다시 철회를 하고 이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법을 만들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위헌성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외통위에서 이 법은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 당을 초월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헌성을 제기하 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한미 FTA를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서 순조롭게 통과시키고 싶었던 목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위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법부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냉대받지 않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이제부터라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헌적인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대안이든 수정안이든 똑같이 위헌적이고,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입 니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2개 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 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30인, 반대 29인, 기권 35 인으로서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통상조 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에서 제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신낙균 의원 외 87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97 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98.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18시55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98항 2012여수세계 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 합니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김성곤 의원님 나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대리 김성곤 존경하 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갑 출신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 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김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 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법률 제명을 '여수세계박 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하고 이 법의 목적을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 · 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으며 박 람회 사후 활용 준비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와 조직위원회 사후 활용을 위한 수익사업 및 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 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해서 도와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내년에 모두 당선되셔서 5월 달에 꼭 여수를 방문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9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 10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정수성・이종혁・이인기・한기호・박대해・ 김을동 · 정갑윤 · 최병국 · 임동규 · 김소남 · 김태원 · 김정권 · 안경률 · 유정현 · 진영 · 윤상일 • 이명수 • 신지호 • 안효대 • 김충조 • 문학진 · 장세환 의원 발의)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
- 1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18시59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99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0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1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3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4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6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6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8항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8항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9항지방세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9항지방세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유정현 의원님 나 오셔서 1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유정현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울 중랑갑 출신 유정현 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법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겠습니 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보행량이 많거나 역사적 전통과 문화가 형성된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보행자길 중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에 보행자 전용길을 지정하거나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피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임

명 및 지도·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방송사업자 또는 휴대폰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재난정보가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기될 수 있도록 2013년부터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의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승강기의 제조 및 도입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둘째 승강기 설치업자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무적 승강기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하더라도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중앙본부장은 도로·하천 등의 복합적인 피해로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목표 강우량인 방재성능목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등을 공공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은 지자체에 이를 무상 양도하도록 하고, 둘째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의 실시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감면 여부를 의무사항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감면은 일몰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실종 등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둘째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 환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향후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경우 법률에 따라국가 등의 보조금이 입금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세범칙행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정해걸 의원 통로에서 — 홍재형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해걸 의원 통로에서 ─ 단독으로 쓰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정해걸 의원 단상에서 ─ 쌀값 때문에,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장내 소란)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민 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비 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승 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주 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권을 찬성으로 바꿉니다.)

강기갑 의원님 기권을 찬성으로요.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지 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11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 1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 11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1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 재정위원장 제출)
- 1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 12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18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10항 법인세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1항 부가가치 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2항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11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114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 의사일정 제11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6항 주세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7항 교통ㆍ에너지ㆍ환

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8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9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120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2항 조세범 처벌절 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3항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4항 교육세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나 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길부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울산 울주군 출신 한나라 당 강길부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표 준 200억 원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로 높이는 한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을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동주 택 내 영유아보육시설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업상속재산 공제율을 7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300억 원으 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근로 장려세제의 적용대상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 대하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하되 위탁 및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배 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할당 관세의 연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하였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전기승용차에 5%의 개별소비세 과세를 도입 하고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한하여 2년간 유예하였습 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 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을 포함시켰으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세를 신용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 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납세금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 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 명 칭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을 의 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신청 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의 핵심은 법인세에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그 부분의 세율을 내리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보다 매년 1조 원 이상 법인세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속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인세 과

세대상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 세율을 2%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연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일어납니다.

나라의 재정은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줄이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메워주어야 합니다. 이렇 게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 킨다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새롭게 마련할지 대 책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제시하지 않는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복 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 해 온 것이 정부 여당의 논리였지만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에게 복지수요가 긴요한 데도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야말로 포 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세율은 가장 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증세·감세 논쟁의 핵심입니다. 통합진보당의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속하는 단 200개의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적용한다면 4년간 50조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법인 약 236만 개의 법인 가운데 충분히 경쟁력 있고 자금여력이 있는 재벌기업 200개에만 해당하는 세율만 조정한다 하더라도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가 부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 200개에도 지나지 않는 재벌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 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로 저희 통합진보당이 제 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낮추는 방식 으로 현행보다 법인세 세수를 1조 원가량 낮춘다 고 합니다. 1조 원 이상 세수가 감소한다면 그만 큼 중요한 재정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거나 국가부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 건너가거나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배당이익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율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없습니다.

국내 세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직접투자 역 시 OECD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 규

모와 각 국가별 법인세율을 분석해 보면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외국의 기업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OECD 나라 중에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법인세가 얼마나 낮은지보다 얼마나 좋은 인프라와 잘 발 달된 시장이 있는지를 보고 기업투자를 일본과 미국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최근 넥슨이나 현대차와 같은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최고 법인 세율이 40%, 3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에 진출해 서 현지 공장을 세우고 일본과 미국시장에서 고 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 한 증세의 필요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에 중간 부분을 신설하고 세율을 낮추어서 현재 보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조 원 이상의 세수를 감소시킨다면 복지국가 건설은 더욱 요원해집니다. 이러한 법 인세율 인하는 조속히 고쳐져야 하고 조만간 최 고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올리는 적극적인 증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조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법인세법 개정 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셔서 그 뜻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20인, 반대 41인, 기권 12 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세금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 형평성을 이 세금을 통하 여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으 로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이 바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라는 명분으로 300억 원을 상속해도 그 70%까지 공제한다는 내 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 다.

이명박 정부 이전 2007년도에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는 단 1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그 한도가 30배로 올라서 30억 원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1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00 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제율 역시 2008년 20%에서 2009년에 40%로 두 배가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70%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10년 상속세 발생 대상 피상속인이 32만 5000명입니다. 그중에 32만 명은 과세미달자입니 다. 단 4547명만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 공제 한도액도 이미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

100억 원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2010년 한해를 통틀어서 단 93명에 지나 지 않습니다. 즉 32만 5000명 피상속인 가운데 단 93명만 해당하는 100억 원 이상 상속자만을 위한 법개정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상속세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경영 인 2세, 2세 경영인이 상속받은 기업의 지분만큼 그 개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는 엄밀히 말해서 기업을 위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이 아닙니다. 기업 경영자 2세 개인을 위한 특혜, 이것이 바로 가업상속 공제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두었던 취지는 건전한 가족기업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4년 사이에 1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300배나 늘어나면서 이 공 제를 받으려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2세 경영인 의 이익과 기업의 발전이익이 충돌될 가능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가족기업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등으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나 혼자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도 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 소규모 가족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는 필수적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유지할 것은 물론 기업의 설비등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지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몰두해서 10년 동안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회피하거나 또는 시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20% 이상 기업 설비를 매각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데 10년 동안 기존의 설비라인을 매각하는 등으로 처분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었다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설비라인을 증설하는 것도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용할 수 없는 오히려 대단히 보수적인 법안이,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93명을 위한 이법안입니다.

현재 경영인이 사망했을 때 2세의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 외에도 경영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30억 원 한도로 10%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사전에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사망 시까지 기다려서 가업상속 공제를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창립한 경영인이 자녀에게 경영을 물려줄 때 가업을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고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경영의 공백을 초래하게만드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단 93명의 슈 퍼리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한 기업의 발전단계를 왜곡하고 경영의 공백을 초래해서 기 업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 외에 재벌 일 감 몰아주기 과세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대계열사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과세조항을 만들게 된 단서를 제공한 것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물류 계열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높은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 공정상 체계에서 일감이 집중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되는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의하면 글로비스보다 모비스에 더 많은 세금이부과됩니다.

통합진보당은 오히려 이 세금을 바로잡는 안을 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이 법 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93명보다 더 많은 사회 적 형평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19인, 반대 38인, 기권 19 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정희 의원** 의원 여러분, 국회가 가지고 있 는 무게를 감안하셔서, 그리고 반대토론의 기회 를 당연히 보장하셔야 된다는 의무를 감안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현 연 2.7조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R&D 세액공제 확대와 사실상 이름만 바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존속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R&D 세액공제는 2012년에만 2.7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불러오는 조항입니다. 2.7조 원의 예 산은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거 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은 물론 고등학교까 지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R&D 세액공제가 만약 필요하더라도 투자 여 력이 있는 대기업에게까지 지속시킬 필요는 없습 니다. 그런데 2009년 R&D 세액공제 혜택의 93% 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특히 42%는 상위 재벌 10개 기업 그리고 약 4분의 1, 23%는 오직 단 1 개의 기업을 위해서 조세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R&D 세액공제 개정의 핵심은, 원래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대기업에 지출되는 R&D 세액공제를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이것을 전혀 건드리 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업까지 이 조세 지출의 대 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 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지어 상품판 매의 동선 개선을 위한 연구 같은 이런 주제들을 서비스업 분야의 R&D로 분류하고 세액공제 혜 택을 준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해외 토픽 감이다' 이런 언급이 있을 정도로 강한 비 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고용창출 세액공 제로 전환했다고 선전하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이름만 바뀐 채 존속하고 있습니다.

즉 신설된 고용창출 세액 기본공제는 기존의 고용창출 세액공제처럼 고용을 늘리는 것을 조건 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세 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기존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처럼 설비투자금에 비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면 이 름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혼 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도 고용창출 세액 기본 공제를 통해서 4%의 임투공제 중에 3.6%의 공제 가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현재 4%의 임 시투자 세액공제 혜택 중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3.6%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사실상 임투공제와 다르지 않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4% 외에 추가 공제도 기존의 1%에서 3%로 크게 확대되어서 실제로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말은 눈속임에 불 과하게 됐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역시 이 R&D 공제처럼 대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 합니다. 87%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갑니다. 53%의 혜택이 상위 10개 재벌기업에게 집중됩니 다. 특히 24%, 4분의 1에 해당하는 혜택이 단 1 개의 기업에 집중됩니다. 결과적으로 R&D 공제 와 임투공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기 업인 삼성전자가 누리는 혜택만 1조 원에 이릅니 다.

조세감면이 재벌기업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피 하고자 지금 이 개정안에는 눈속임용 조항도 포 함돼 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한다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면제하겠다, 이 제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 러나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매 우 큰 현실에서 정책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기업 신입사원 초봉은 3500만 원입니 다. 중소기업 초봉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소 기업 임금에 따른 연간 소득세액은 평균 16만 원 입니다. 16만 원을 감면받고자 연봉이 1400만 원 더 많은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 효과가 없는 제도를 도입 하고 국민들에게 실제와는 다른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착시효과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감면을 줄이자는 것은 그 정치적 성향이 무엇이든 간에, 진보든 보수든 학계, 시민사회 모 두가 주장하는 조세개혁의 과제입니다. 정부도

조세감면을 줄인다고 항상 말하면서 각각 2.7조 원 그리고 1.7조 원에 달하는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투공제를 이름만 바꾸는 눈속임으로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 는 명분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조세감면 항목 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의미로 이 조세특례제 한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5인, 기권 8 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관 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3인 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1인 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교 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농 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 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정희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체 납세금 징수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 는 내용입니다.

그 위탁 대상을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 다. 체납자 주소 및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 사,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과 전화ㆍ방문 상담, 그리고 위에 준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 당하는 업무 이렇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소 확인과 재산 조사 등은 자산관리공사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그동안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지속 적으로 해 왔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등은 국세청의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자동적인 업무 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전화와 그리 고 방문상담인데 이것은 납세자에게 공권력 작용 으로 인식됩니다.

즉 세금을 내라고 누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세금을 내라고 사무소나 거소지에 찾아오는 것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 작용이라 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강제나 또는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언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가진 공권력이 이 문제를 매우 조 심스럽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를 민간 추심회사, 아무리 자산관리공사라고 하더라도 민간 추심회사에 위 탁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의 조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전화나 또는 방문 과정에서 민간 납세자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렇게 느 낄 수 있는 추심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채권추심회사들이 전화라든 가 방문해서 채권·채무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라고 하여 여기에서 특별히 안전하 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도 그 어떤 것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업무를 한다

면 채권추심업무를 국세청보다 더 잘할 수 있느 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첫째로 국세청은 재산세와 소득세 등의 모든 과세정보를 가지고 있고 체납자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거래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폭넓은 정 보력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관리공사와 같은 민간 부문의 추심기관은 국세청 보다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채권추심업무를 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자산관리공사는 지금도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하고 있지 않고 직접적인 채권추심업무는 모두 다른 곳에 위탁하고 있어서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추 심업무가 발생하면 민간 채권추심회사 등에 그 업무 전체를 아웃소싱 하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직후 직접 추심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입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화라든 가 방문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 제로 국세청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기하셨습 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산관리공사가 써야 할 인 력을 국세청이 충원하면 됩니다. 정부는 현재 자 산관리공사가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원할 필 요가 없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지 자산관리공사의 유휴인력을 처리하고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납세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서 해야 할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더욱 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과세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서 추심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전문성이 없는 자산관리공사가 국세 청보다 더 추심업무를 잘할 만한 근거도 없고 오 히려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징수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기 때 문에 이 국세징수법안은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5인, 반대 16인, 기권 13 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조 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25항 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27.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시56분)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26항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127항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혜훈 의원 나오 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혜훈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 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생 하는 채권 5조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 증하는 것입니다. 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 장학재단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3조 4075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만 부대의견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이혜훈 의원 님.

그러면 먼저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0시00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 일정 제2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의사 일정 제128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추가하여 상정합니 다.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 1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부의장 홍재형 국토해양위원회 차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위원장대리 차명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이미경 의원 등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 제출 안 등 총 2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조합을 해산 하고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 한 경우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 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다 양화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 군수 및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 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업자 선정 및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 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합의 투명성 제고 및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 도록 하고,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를 조정하여 주변지역의 전월세 가격 상승을 예방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였습니 다

그리고 주민과 공공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분 형 주택제도를 도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 리처분 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하는 신영수 의원이 특별히 제안한 안입니 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최규성 의원, 김상희 의원, 임해규 의원, 이미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 로 제시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이 원 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 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된 재정비촉진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 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진수희 의원 등이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3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차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8인 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7인 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토론신청이 있 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웅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웅전 의원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5억 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에 서 하게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을 훼손했기 때문 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 로 생전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 건설사가 아닌 타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하 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업체 제한규정에 분명히 위배됩니 다.

즉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없이 지역제한을 무너 뜨리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율 체계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 켜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라는 예외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경쟁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규정에 대해서 또다시 예외를 설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시마다 국가계약질서에 대혼란을 초 래해서 특례 특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이요, 소외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힘들어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원망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억 미만의 작은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하면 강원도 업자들이 하고, 전라 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어느 지역이든지 95억 미만의 작은 공사는 그 지역의 건설업자들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이 아닌 다른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업체가 들어온다면 이 나라 건설업계는 어떻게 되겠습니 까? 특히 그 지방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 드립니다.

절대다수의 압도적 반대로 지방의 영세 건설업 자 종사자들에게 새해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원** 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의원 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종시의 건설을, 그 업체를 충청남도로 한정 할 것이냐,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3개 시도 의 업체가 함께할 것이냐의 초점입니다.

오늘 올라온 법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함께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렇습니다.

우선 세종시는 충청남도의 일부와 충청북도의 일부가 섞여 있는 곳이고, 대전시와 경계를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한 생활권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의 수돗물은 100% 대전시에 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기반이 갖추 어질 때까지의 모든 행정편의를 대전이나 충북도 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 공식적으로 요청 한 한 가지 예를 보면 문화예술 공연을 대전팀이 와서 좀 해 달라 하는 등등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어느 단계에 정착될 때까지 3년 한시법으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시의 건설업체가 함께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것 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오랜 토론을 거쳤 고, 또 3개 시도의 시민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 시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전이 거점도시 고, 바로 세종시가 기능도시입니다. 어차피 세종 시와 대전, 충남북은 한 묶음으로 건설을 해 나 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초점은 건설업자 중심으로 사안을 보느냐, 세종시민의 중심으로 사안을 보느냐 하 는 것이 초점입니다.

세종시는 어느 특정 도의 세종시가 아니라 대 한민국의 세종시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이 옮기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종시의 시민이, 국토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세종시가 좀더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가 오랫동안 토론해서 내린 결론이고, 3개 시도의 시민들이 사실상 합 의한 대로 대한민국의 명품 세종시가 될 수 있도 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세종시가 축복과 박수 속에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이 법안에 너무 나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얻어먹 을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3월 11일 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었 던 것입니다.

그때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아까 변웅전 의원 님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국가 계약법에 특례를 정하는 내용인데 국가계약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나 또 우리 국회의 해당 위 원회와 아무 상관없이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특례규정을 두는 체계상에 중대한 모 순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어봤느냐.

또 하나는 이 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에 소재하 는 건설업체의 기득권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중대한 훼손을 입게 되는데 충 청남도의 의견을 들어보았느냐, 들어본 일이 없 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결 처리를 했는데 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때 대전제가 충청남도 도지사가 동의했 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저 자신도 충청남도 도지시가 합의를 해 줬다 면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아무 이의 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지사는 반대라는 것입니 다.

또 여기 문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3월 11일 날 부결 처리되고 난 이후에 기획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4월 21일자로 절대 반대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이렇게 개별 입법에 서 함부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4월 22일자로 절대 반대한다, 특히 충청남도는 이 세종시 건설 때문에어떤 혁신도시 건설에서도 다 제외됐기 때문에이 세종시 건설에서 95억 미만의 공사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발주하는.

이것에 관한 법에 의한 권리조차도 훼손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문서로서 명백히 반대하 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지금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동의했다는 것을 전 제로 해 가지고 합의가 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확 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돼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결에서는 반드시 부결시 켜 주시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기획재정부 또 기획재정부를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 그리고 우리 국토해양위원회 이렇게 합동으로 다시 한번 타당성 있는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호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찬성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세종시가 유치될 적에 충청남도는 물론 충청북도 또 대전도, 모든 도민, 시민이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유치가 됐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이 세종시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 건설 업체로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는 1개 면이 세종시로 완전히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는 땅도 주고 그동안 노력도 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익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어떤 법정신이 훼손된다 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에 국한돼서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에 꼭 표를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07인, 반대 20인, 기권 41 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0시21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사일정 제130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 건을 추가하여 상정합니다.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30.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부의장 홍재형**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배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배은희 존경하는 홍 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학교폭력과 별도로 따 돌림 규정을 추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및 따돌림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도록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구성에 있어서 필요시 2 이상의 학교가 공 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치위원회의 소집 요건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으로 완화하며,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전학을 요청한 경우 이의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 금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 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보공개 대상 교육 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유치원의 장은 그 기 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보를 매 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 관과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 가공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교육관련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20시25분)

○**부의장 홍재형**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ㆍ경 수 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을 개정하여 60여 년 만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검ㆍ경 간 명령복종관계를 폐지하였습 니다.

이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향상시키고 변화된 시대에 걸맞게 검·경 관 계를 재정립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이 대검 중수부 폐지, 특 별수사청 설치 등 사개특위의 검찰개혁 논의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분산과 견제라는 취지 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수사 개시 · 진행 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리실이 지난 11월 24일 검ㆍ 경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검찰의 입장만을 고려 하여 입법예고한 강제 직권 조정안을 그대로 대 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수사의 자율성 · 책임성 향상과 검 찰개혁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오히 려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대다수의 수사관들은 형사의 상징인 수갑을 반 납하는 등 자괴감에 빠져 수사 업무를 포기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의 형소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대통령령은 경찰관들의 반발을 사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령의 가장 큰 문제는 개정 형사소 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의 본질 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선거·공안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미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선거 등 공안 범죄는 견제와 균형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사의 입건지휘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중단·송치명령은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나 경찰 사건 가로채기로 악용되어 왔고 학계에서도 대표적인 부당 수사지휘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권이 미치지 않았던 내사에까지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여 검찰이 범죄정보권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사는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검사의 지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난 6월 20일 정 부 내 합의사항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 다.

지난 12월 9일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검찰이 경찰의 내사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을 했고 19%만이 정당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는 국민 의 여론에도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검사가 수사대상인 경우 검사의 지 휘를 제한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검사의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검찰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감찰의 문제로 보고 제 식구 감싸 기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 다.

검찰의 윗선에 면죄부를 주고 단순한 삼류 치정극으로 결론이 난 벤츠 검사 사건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청이나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번번이 무산되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의 대안은 경찰을 통한 검사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검사의 지휘라는 강력한 장벽에 부딪혀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만이라도 검사의 지휘를 제한하여 법치주의 의 성역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은 해당 기관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심각 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고 양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했습니다만, 양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한 번 개최한 적이 없고 법 개정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총리실이 한 것이라고는 두 차례의 서면 교환과 3박 4일간 합숙토론이 전부였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11월 23일 입법예고를 유예를 하고, 12월 23일 입건지휘와 수사중단·송치명령, 내사 관련 규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령 제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입법예고안을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고 원안 그 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형소법 개정을 통해 표출된 국회와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뒤엎는 것 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정부에 의해 침해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수사구조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이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국회가 국민여론과 정서를 감안하여 문제 해결의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개특위는 주어진 시간에 비하여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개혁 대상 기관의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못 미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통해 사법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과 경찰의 관계 를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인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 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큰 별인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서해안 유류 피해민들은 삼성본 관 앞과 과천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 습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이 지나가도록 정부는 무관심으로, 가해자인 삼 성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 민 수천여 명이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해기업 삼성에 대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피해민들에게 진정 어 린 사과를 할 것,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와 대 화에 나서고 상시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설 것, 삼성은 정부에 약속한 대로 피해지역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에 적극 나설 것, 삼성은 지역발전기금을 증액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27개로 축소하지 말고 101개 사업 을 실시할 것,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특별 대책위원회를 4년 동안 2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는 데 분기별로 개최해 피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 고 현실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할 것, 가해기업 삼성그룹과 피해주민들 간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 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것 등입니다.

피해주민들은 2조 6000억 원의 피해액을 요구 했지만 지금까지 6.4%에 불과한 약 1676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 민들 중 4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서해안 유류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을 촉 구합니다. 삼성그룹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 설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촉구해 주시고, 피해보 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을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피해지역을 방 문하여 봉사활동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 피해지역 방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 에는 직접 챙기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상한선 31만 406명, 하한선 10만 3460명을 기준 으로 내년 총선에서 천안을 선거구를 분구하라고 정개특위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 개특위 일각에서는 세종시 단독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긴 천안시의 국 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연동하여 천안을의 선거구 증설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결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종시의 단독선거구 신설과 천안시 선 거구의 증설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고 독 립적으로 분리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 정 치적 흥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를 가지는 것은 특별자치 시로서의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것이며, 완전하 고 완벽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우 리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천안을 분구는 인구상한선을 넘었 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 기 위해서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에 2개의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 하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 충남의 인구수는 209만 6445명으로 전남 인구수 191만 2509명에 비해 약 18만 4000명이 많고, 전라북도 인구수 187만 4058명에 비해 22만 2387명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국회의원 수는 10 명으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수 12명보다 2명이 적

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수 11명보다 1명이 적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지역의 선거구는 세종시를 포함해서 2개가 늘어나야 합니다.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보장하기위해서 2개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헌법정신을 구현 하기 위해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세종시 독 립선거구 증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강명순 의원님 나오 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순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명순 의원입니다.

죽어 가는 이 땅의 아동·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희생된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조의 를 표하면서 위로를 보냅니다.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등학교 720만 명 중에 집단괴롭힘, 왕따를 당하 고 있는 학생은 30만 명에 이릅니다.

전국 1만 1000개 초·중·고의 학교별 각 학교 마다 평균 27명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의 유서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호소는 온 나라에 슬 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오늘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샌드 백처럼 맞으면서 학교폭력을 견다다 못해 또 한 명의 중학생이 29일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를 접 했습니다.

정부에서 학교폭력 2차 대책, 2012년 1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안에 대해서, 또 법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각종 대책은 끊임없이 세워졌지만 왜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죽어 가고 있습니까?

게임중독에 빠지거나 학교폭력의 가해자·피해 자를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는 얼마나 깊이 있게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었고 예산을 지원했습 니까? 평가는 제대로 했습니까? 중학생이 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청소년 전용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3만 5945명의 시민이 서명한 청원서는 3년 동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힘겨운 아이들을 위해 이러한 청원이 조속히 받아들여졌다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많 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통탄합니다.

더구나 농어촌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도 하나도 없습니다.

왕따 가해자·피해자들이 이제는 살인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 가는 아이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자식 키 우는 부모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아주 일부분만 보도된 빙 산의 일각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아무런 가책도 없이 폭력하고, 장애 여중생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조폭들보다 더 잔인해지고, 집단화되고,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친구를 세 번 폭행하면 무조건 퇴학시키고, 가해학생과 가족들은 반드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욕을 세 번 하면 학교 내 자체 감옥에서 반성하 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학교마다 왕 따 전담교사를 두고, 노르웨이에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할 당시 '스톱' 중지하라고 외치는 교육제도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폭력이 2005년보다 3.7배나 증가해서 5376건이나 되고, 가해 중학생 수는 1만 4179명으로 전체 수의 71.7%나 됩니다. 더구나 SNS가 늘어나면서 사이 버 왕따도 성행합니다.

이제는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학교 내 성폭력, 왕따 문제를 감추고 축소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는 근무태만 학교장과 교사도 징계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과 사회 차원에서 공동시스템을 만들고, 심리상담과 청소년 사례관리인력과 전용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정식교과과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중산층 아동·청소년, 빈곤한 아동과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장애나 부모의 빈 곤으로 더 이상 죽어 가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 다.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나 나머지 힘겨움 과 외로움을 떨쳐내고 자유로운 숨을 쉬면서 스 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공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들의 폭력과 따돌림은 우리 어른 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직접·간접으로 대물림시 키고 가르쳐 온 것임을 우리가 모두 고백해야 합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해자로서의 잘못을 시인하 며 조속한 시정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이 들의 생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려 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는 자살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없는 생명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 얘기 를 담고 있지만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징계할 것 은 징계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나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어른들, 훌륭한 국민이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강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 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 법안이 13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140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처리된 법안 내용 중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 를 해소하고 또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해 지원되 는 그런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12년도 예산안에, 세입안에 이 명박 정권이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했던 감세 부 분이 일부분은 철회되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 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등 이 세법 내용에 보면 그래도 아직도 재벌들에게 곳 간을 채워 주고 감세를 더 강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그렇게 고수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한나라당 의원 내에서마저 '감세가 부당했다' '철회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 신음하는 우리 서민경제를 살려 내고 이 성장의 그늘 속에 떨고 있는 연세 많으신 고 령 노인분들, 국민의 어머니인 생산자인 농민 들 · 어민들, 비정규직, 장애인들, 사회의 약자 이 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된 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주장까 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줄곧 이야기 하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면서까지도 우리가 막아 내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정당하고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 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계 십니다.

이런 법들을 통과시킬 때 그 무엇보다도 충분 하게 심의하고 반대 토론할 것은 반대하고 문제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법안을 빨리 빨리 통과 시키자고 반대 토론하는 거기에 시간 좀 넘긴 당 의 대표에게 야유를 보내고 비난을 하고…… 어 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부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기름값 좀 아 끼려고 공동으로 밤을 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 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쌀을 조금씩 가져오고 옆에서 좀 도와주고 밥을 해서 대부분 공동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이었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국가가 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 는 근거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이 이번 예산 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기재부장관한테 우리 존경하는 정해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부탁을 했지만 이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된다 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 농민들 부분만 보더라도 한우 농민들은, 지금 사료 값은 뛰어오르고 가격은 바 닥을 치고 있는데 시중의 식육점이나 식당의 가 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 는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절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우, 소들을 정부가 수매, 자금을 풀어서라도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숱한 일들이 지금 입법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그런 절규들을 해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 해소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화와 다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어 렵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행 복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더 각성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당장 벗어 던지고 지금 이라도 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9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종 강성 천 강 창 일 고 흥 길 강 승 규 고 승 덕 권경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옥 이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근 혜 박기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원 우 박 희 태 백 재 현 서병수 손 범 규 손 숙 미 성 유 환 송 영 선 송 훈 석 송 광 호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아 형 환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 률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유 상 현 유 석 용 이 두 아 윤 영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유 성 이성헌 이 은 재 이 인 제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의 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워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진 형 조 정 식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규성 최 병 국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3인)

강기갑 곽정숙 조승수

기권 의원(4인)

김 진 애 이 미 경 전 재 희 홍 희 덕 (강기갑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89인, 반대 의원 3인임)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6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택 기 김 광 림 권성동 권 영 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성동 김성수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진 애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송 김호연 나 성 린 김 효 석 김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상 천 박 보 환 박 우 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양 승 조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진 식 이 낙 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 사 철 이 범 래 이 병 석 이상권 이성남 이성헌 이석현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한 구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 회 창 장 광 근 장 병 완 임동규 임 해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미경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회 수 조 경 조 문 화 조 배 숙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규식 최병 국 최영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홍 영 표 천 현 기 환 홍 재 형 황 영 철 홍일 표 홍 회 덕 기권 의원(4인) 김성 곤 이 종 구 김성 태 안 홍 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홍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진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金先東 김성동 김 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 태 김 장 수 김 유 정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영 아 박 주 선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준 선 백 원 우 박 박 회 태 진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률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오 제 세 원 희 룡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영 윤 진 식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석혀 이성허 이 상 권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갑윤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세 균 정 옥 임 정 의 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승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정 식 주 승 용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태 열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박 우 순 송 훈 석

(박상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2인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정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성 관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순 자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워 우 서 병 수 백 재 현 변 웅 전 서종표 성 윤 환 손범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선호 유 일 호 유정복 유 기 준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헌 李玲愛 이 유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이회창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영 희 최인기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허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반대 의원(4인) 홍 희 덕 金先東 이정희 조 승 수 기권 의원(2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정 갑 윤

찬성 의원(173인)

곽 정 숙

강 길 부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권 경 석 고 승 덕 고 흥 길 권선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정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박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지호 신 성 범 신 영 수 심 재 철 안 상 수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상 현 유 영 윤 진 식 이 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병석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李玲爱 이영 애 이 은 재 이 재 오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전 재 희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갑 윤 정미경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의 화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태 근 조 경 태 정 하 균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주 승 용 조 진 형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회 최영희 최 인 기 허 태 열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홍 준 표

반대 의원(20인)

박 영 아

강 기 갑 강성종 곽 정 숙 김 낙 성 김 영 록 류 근 찬 양 승 조 金先東 이애주 이인기 이재선 이정희 이 학 재 이 한 성 전 병 헌 정 희 수 조 워 진 최경희 최종워 홍 희 덕 기권 의원(13인) 강 명 순 김 상 희 김 진 애 김 효 석

송 민 순

신 낙 균

서 병 수

원혜영 유 승 민 정범구 추 미 애 홍일 표

(안홍준·이학재·전병헌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3인. 반대 의원 20인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선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송 민 순 송 훈 석 손 범 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여 상 규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이 낙연 이두아 윤 진 식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현 희 전 병 헌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범 구 정 몽 준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회 정 옥 임 정의화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영 택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윤 선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진 최 규 성 최병국 최 연 희 최 규 식 최 영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홍 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2인)

박 상 은 변웅전

기권 의원(5인)

찬성 의원(217인)

곽 정 숙 손 숙 미 심 재 철 조 전 혁 홍 희 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동 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재 김호연 김희철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변웅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손 숙 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영 윤 진 식 이 두 아 이 낙 연 이명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정선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미경 정 두 언 정 몽 준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규성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4인)

강성종 김 진 애 백 재 현 이미경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식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경 김 정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대 해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순 자 박 영 아 박선 영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박 회 태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혅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송 영 선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유 석 용 영 윤 상 현 윤 이두아 이 군 현 이 낙연 윤 진 식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희 이종구 이 재 선 이정 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이 한 구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미경 정 두 언 정 갑 윤 정 몽 준 범 구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정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주호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병 국 최 규 성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최연 희 허 태 열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3인) 류 근 찬 안 경 률 최 규 식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8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진 권성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영 우 옥 이 김 영 선 김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박 기 춘 박 민 식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우 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신 영 수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유기준 워 희 목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군 현 이 두 아 윤 진 식 이 낙 연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성남 이병석 이상권 이석현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임 해 규 장 병 완 전 여 옥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정 몽 준 회 정 갑 윤 정미경 정 범 구 정병국 정세 균 정 옥 임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회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 두 언

최경희

성 윤 환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4인)

김성수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옥이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충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은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박 회 태 변웅전 서병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민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유 철 원 회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낙 연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두 언 정 몽 준 정 정미경 정 범 구 병 국 정세균 정 정양석 정 수 성 영 희 정 옥 임 정 정 의 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순 형 조 윤 선 조 진 형 주광덕 주 승 용 조 전 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식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류근찬 전병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김 광 림 권 영 진 김 낙 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세 연 김성 태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진 애 정 김 춘 진 김 진 표 김 충 환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백재 혅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민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영 윤 진 식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영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재 선 이 재 오 이정 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춘식 이 학 재 이 하 구 이 한 성 장 광 근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광덕 주 승 용 조 전 혁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옂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규성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규 식 추 미 애 한 기 호 최종원 최 인 기 한 선 교 허 태 열 현기환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정 옥 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권경석 숙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金先東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 성 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용구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태 원 김 태 호 김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 성 김호연 김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송 훈 석 신 낙 균 선 신 검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목 원 유 철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영 윤 이 군 현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성 허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윤 성 이종구 이 재 오 이정 선 이정희 이 주 영 복 이 진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전 병 헌 장 병 완 장 제 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조 문 환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한 기 호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천 홍일 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김성식·조전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및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13인, 반대·기권 의원 없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식 김세연 김 영 선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 재 경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남 경 필 류 근 찬 나성린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민 식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종 표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일 호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정범구 전 현 희 정 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양 석 정 영 희 정 정 옥 임 정 의 화 장 선 정 태 근 정 정 해 걸 희 수 정 하 균 정 조경태 조 영 택 조 윤 선 조 배 숙 조 원 진 주 광 덕 주 승용 조 전 혁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영 희 최 인 기 최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김희철 조순형

(노영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5인, 찬성 의원 203인임)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 천 강 기 갑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용구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경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김 희 철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박 민 식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송 영 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연 윤 영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석현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주 영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석 이춘식 이 학 재 이한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광덕 주 승 용 조 전 혁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옂 진 최경환 최규성 차 명 진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규 식 최 재 성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천 홍 일 표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영 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성종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무 성 김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 환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진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성 범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아 형 화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유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회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구 이 학 재 이 춘 식 이 해 봉 이화수 임동 장 광 근 장 병 규 완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미경 정범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태 근 정의화 정 장 선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주 광 덕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규성 최 규 식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희 덕 기권 의원(5인)

강승규 신낙균 신학용 이찬열 정두언

(김진표·나성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13인, 찬성 의원 208인, 기권 의원 5인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성조 김성 태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린 김희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배 은 희 진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심대평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유 정 복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0]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정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워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현 희 전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옥 임 정 정 의 화 정 장 선 태 근 정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김 태 환

이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6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성종 강 기 갑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화 김충환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 학 재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상 은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박 진 배 은 희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미경 이두아 이명수 이 명 규 이범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종구 이정선 이정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진 삼 이 차 열 이 한 구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해 봉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워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 병 국 정 옥 임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 장 선 정희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순 형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광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규식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사 덕 홍 재 형 현 기 환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강 명 순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선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변 재 일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민 순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정 복 유 재 중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상 권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윤 석 李玲愛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해 봉 이 화 수 이학재 이 한 구 장 제 임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워 전 여 옥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정 해 걸 조 배 숙 정희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 환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5인) 강 기 갑 곽 정 숙 이정희 金先東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강 명 순 장 병 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2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택 기 권 선 택 권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동성 김동철 김 기 쳙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정 김충조 김 태 원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류 근 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재 일 서 병 수 변 서 종 표 성 유 화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안 홍 준 화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한구 이 해 봉 이 화 수 동 규 임 해 규 임 장 광 근 장 병 완 제 원 전 병 헌 장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전 현 희 정미경 범 구 정병국 정 몽 준 정 정 수 성 정양석 영 정 옥 임 정 회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성 최 경 희 최 병 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건

영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5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기현 김 동 성 김 광 림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진 표 김 태 원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호연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종 근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회 백 원 우 성 윤 환 변 재 일 손 범 규 손 숙 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유기준 원 희 룡 원 희 목 유선호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이강래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화수 이 한 구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장 제 원 전 재 희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 영 희 정 수 성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옂 차 명 진 최경화 최경희 최 규 성 최 병 국 한 선 교 최 연 희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반대 의원(12인)

홍 준 표

장기갑 곽정숙 金先東 김진애 김춘진 박은수 안홍준 이미경 이 윤 성 이 정희 조 배숙 홍희 덕 **기권 의원(24인**)

김 영 록 김성 곤 김 혜 성 김 효 석 노 영 민 박 영 아 백 재 혀 서 병 수 서 종 표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성 범 양 승 조 오 제 세 유 재 중 임 해 규 정 회 수 유 정 현 전 현 희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최규식 (정해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57인, 기권 의원 24인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수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광 림 권 영 진 김 김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 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 소 남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학 용 김혜 성 김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상 진 건 신 영 수 신 성 범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상 수 아 형 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강래

반대 의원(1인)

한 기 호

기권 의원(1인)

최종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트프 이의(204이)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명순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기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태 원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 효 석 김호연 김 희 철 나성 린 문 희 상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은 수 박 보 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진 백 워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성 윤 환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명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 상 권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재선 이 윤 성 이 재 오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정희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원 전 여 옥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병국 정 미 경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회 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규성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종원 한 선 교 천 허 태 열 현기환 허 홍일 표 홍 사 덕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송영선 한기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5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 동 철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나성 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건 신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일호 유 기 준 유선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윤 옂 이강래 이 군 현 이 낙 연 이경재 이명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장 제 원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태 근 정의화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연 희 최영희 최 재 성 최종원 한 선 교 허 태 열 홍 사 덕 허 천 홍 재 형 황 영 철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한 기 호

(신낙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6인, 찬성 의원 205인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강 창 일 곽 정 숙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성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용 김혜성 김 희 철 남 경 필 김호연 나성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배 은 희 진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강래 이 군 현 이경재 이 낙 연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하 구 이 화 수 임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전 혜 숙 정 두 언 정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차 명 진 진 수 희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규성 최 연 희 최 재 성 최종원 최 인 기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희 덕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영 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1인)

한 기 호

기권 의원(2인)

신 낙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환 김 태 원 김 춘 진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병수 백 재 혀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영 선 손 숙 미 송 민 순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검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신 성 범 심 재 철 안 경률 안 홍 준 안 형 환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이 강 래 유 석 용 유 옂 유 진 식 이 낙연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헌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유 석 이 인 기 이 윤 성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학 재 임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미경 정병국 정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래 조 진 형 조 정 식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최 경 희 최규성 영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규식 최 재 성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허 태 열 한 선 교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정 옥 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21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성 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성수 金先東 김성동 김성조 김세연 김성식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표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종 표 변 재 일 송 민 순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신 낙 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정현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유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명 수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희 이 재 오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장 광 근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제 원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미경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정 하 균 정 해 걸 근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광덕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홍일 표 허 천 현기환 홍 재 형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성 곤 차 명 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협 상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24인)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권 선 택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성 곤 성 동 김성수 김 김성 태 김세연 김성식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호 김 희 철 남 경 필 김 효 석 나성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기 춘 박 상 은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건 신 학용 신 영 수 안 경 률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 석 용 윤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이 낙 연 이명수 이병석 이성남 이석현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혜 숙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조 영 택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진 래 진 영 최 규 성 최 규 식 최영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미 애 한 선 교 홍 영 표 황 우 여 현 기 환 홍 재 형 반대 의원(43인) 강 기 갑 강 명 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영 길

金先東

김 성 조

권 성 동

○故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199인)

(권영길·송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조 윤 선

홍일 표

찬성 의원 124인, 반대 의원 43인임)

최병국

황 영 철

최연 희

찬성 의원(134인)

조 문 환

홍 사 덕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부 겸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 을 동 김 재 균 김 김 진 애 정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대 해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백 원 우 배 은 희 백 재 현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검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이경재 이 낙연 이명수 이석현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 재 오 이 윤 성 이정희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차 열 이 학 재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장 제 원 전 혜 숙 정 두 언 정범구 전 현 희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수 회 조 진 래 차 명 진 최규성 최규식 최영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반대 의원(22인)

권성동 김 장 수 김충환 김 학 송 손 범 규 성윤환 심대평 여 상 규 유 승 민 유재중 이 범 래 이재선 이정선 정 수 성 조 순 형 주 호 영 진 영 최경환 최병국 한 기 호 홍 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43인)

강 길 부 강명순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김 무 성 김성조 김 세 연 김용 태 김 정 훈 김 태 원 서 병 수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진 서 종 표 신 성 범 안 홍 준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 강 래 이 군 현 이 사 철 이성남 이 애 주 이 인 기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화수 정 몽 준 정 양 석 정 영 희 임동규 정 옥 임 조 진 형 최경희 최 연 희 한 선 교 허 천 황 영 철

(박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34인, 기권 의원 43인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 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09인)

강 길 부 강석호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성 동 김 성 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용 태 김 을 동 김 정 훈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혜성 김희철 나성 린 김호연 남 경 필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종 근 박 배 은 희 진 성 윤 환 손 숙 미 손 범 규 송 민 순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희 목 유일호 유정복 윤 상 일 유 석 용 유 상 현 유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사 철 이 상 권 이 범 래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정선 이종구 이 윤 성 이 재 오 이 주 영 이진복 이춘식 이혜훈 장 제 원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 옥 임 정 수 성 정의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황 진 하

반대 의원(45인)

강 봉 균 권 선 택 김 부 겸 김 상 희 김성 곤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효 석 류 근 찬 문 희 상 박 우 순 박 은 수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송광호 송 훈 석 신 학 용 신 상 진 이 낙연 양 승 조 우 제 창 이강래 이명수 이 윤 석 이인기 이재선 이 찬 열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혜 숙 정세 균 주 승 용 정 하 균 조 정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기권 의원(24인)

김 태 호 서 병 수 강 명 순 김 장 수 송 영 선 안 상 수 안 효 대 유선호 유 재 중 유 정 현 이 철 우 이 학 재 전 재 희 정 병 국 정 양 석 정 영 회 정희수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진 래 진 영 최 연 희 최 재 성 황 영 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권 경 석 권 선 택 성 동 권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김기 현 림 김동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성 조 김성 태 김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용 구 김용 태 김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류 근 찬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박 백 원 우 진 서 병 수 백 재 현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일 유 석 용 윤 영 이 낙 연 이강래 윤 진 식 이경 재 이명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정희 이정선 이종구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한성 장 병 완 이 혜 훈 임 동 규 장 광 근 전 병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헌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원 진 조 경 태 조 유 선 조 전 혁 주 승 용 조 진 래 조 진 형 주광덕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규 식 최 재 성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신 성 범 우 제 창 (권영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2인, 기권 의원 2인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을 동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정 훈 정 김충조 김충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민 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은 수 박 짓 배 영 식 백 원 우 백 재 현 배 은 희 서 병 수 서종표 손범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낙균 신 성 범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원 희 룡 유 선 호 유 일 호 유성엽 유정복 유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이 군 현 이낙연 이명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진복 이정회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훈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 균 정 의 화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윤 선 주 승 용 조 진 형 주광덕 조 진 래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영 희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최종 워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안 민 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수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성태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충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형 환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강래 윤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명수 이범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기 이재선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혜 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미경 정병국 정세 균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워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진 래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규성 최규식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이 한 성 정 두 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6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봉 균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수 김 성 조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긲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기 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민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유기준 원 희 목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석 용 유 상 일 윤 윤 진 식 이강래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성헌 李玲愛 이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학 재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의화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승 용 주 광 덕 조 진 형 조 진 래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경 희 최규성 최 병 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강 기 갑 권 영 길 이정희 조 승 수 홍 희 덕

기권 의원(1인)

정 두 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무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 동 철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정 훈 김 춘 진 김충조 김 진 표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유 기 준 워 희 목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윤 영 이 낙 연 이명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성 헌 이애주 이 영 애 이 용 섭 李玲愛 이 윤 석 이재선 이 재 오 이 윤 성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 장 광 근 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허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전 현 희 전 혜 숙 정세 균 정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옥 임 정 양 석 정 영 희 정의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워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이인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성 동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동 김성 곤 성 수 김성식 김 김성 태 김세연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 을 동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충 조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희 룡 유 기 준 워 희 목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윤 진 식 이강래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수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미경 정 병 국 전 혜 숙 정몽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승 수 조 윤 선 조 진 래 조 진 형 조 전 혁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재 성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진 하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이용희 정 두 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8인) 찬성 의원(20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택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무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용 태 김 재 균 김 정 훈 김 진 표 김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남 경 필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은 수 박 종 근 박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짓 변웅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송 민 순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워 희 룡 원 회 목 유 선 호 유기준 유일호 윤 상 일 유 성 엽 유정복 유 석 용 유 진 식 이 강 래 유 옂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명수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진복 이 종 구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병 국 정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정세 균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차 명 진 최경환 진 최경희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 영 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첡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변 재 일

(박준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08인, 찬성 의원 207인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을 동

기권 의원(1인)

이종구

황 진 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6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수 김 성 동 김성 태 김성식 김 세 여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정 훈 김 진 애 김 정 김 김 진 표 김 춘 진 충 조 김 충 환 김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숙 미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정선 이 정 혅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화수 이 한 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젉 병 헍 전 재 희 정 수 성 정양석 정 두 언 정미경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 하 균 정 해 걸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영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한 기 호 최종원 한 선 교 홍 사 덕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영 길 강 기 갑 김성조 조 경 태 金先東 성 윤 환 홍 희 덕

기권 의원(3인)

정 범 구 정 태 근 최 재 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 창 일 강성 천 고 승 덕 고흥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동성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세연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정 훈 김 진 애 정 김충조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호 김 태 환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웅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민 석 안 상 수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진 식 윤 영 이경재 이명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인기 이 윤 성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현 이진복 이정선 이 종 구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춘식 이 학 재 이한성 이혜 이화수 훈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임 동 규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두 언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전 혁 조 윤 선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선 택 권 영 길 김 광 림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문 학 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워 우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형 환 안 효 대 우 윤 근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 원 일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윤 영 윤 진 식 이범래 이 상 권 이석현 이 사 철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재 오 이 유 성 이인기 이 재 선 이 주 영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혜훈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정 두 언 전 재 희 정미경 정 범 구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진성호 최경환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영 최연 희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영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첡 홍 영 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종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동 철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 성 식 김세연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 을 동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김 태 원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류 근 찬 문 학 진 노 영 민 노 철 래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송광호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민 석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상 수 안 효 대 여 상 규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원 일 유정복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윤 영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성헌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이화수 이혜훈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진 래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5인)

황 진 하

황 영 철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창일 고승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진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영 우 김 영 진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학 송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기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서종표 송 광 호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목 원 유 철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유 상 일 유 석 용 영 윤 상 현 윤 이 군 현 이 낙 연 윤 진 식 이경재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성 헌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 이종구 이 주 영 이정선 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수성 정양석 정 옥 임 정 영 희 정의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진섭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 재 성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유 원 일 이 한 성

찬성 의원(205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종 강 창 일 강 성 천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고 승 덕 권 영 길 권 영 진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부 겸 김 동 철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용구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노 영 민 문 학 진 나 성 린 노 철 래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박 준 선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현 유 워 일 유정복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선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혜 훈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정미경 정 범 구 정병국 정세 균 정 옥 임 정수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주호영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황 영 철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곽정숙 이윤성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투표 의원(212인)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종 강 창 일 강 석 호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 기 현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소 남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호연 김 효 석 김 혜 성 김 희 철 나성린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기 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영 아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신 학 용 안 경률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화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원 일 유선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윤 이 낙 연 이경재 이 군 현 이명규 이 범 래 이상권 이 사 철 이 석 혀 이애주 이 영 애 이 성 남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정선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주 영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혜훈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문 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재 성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첡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이 한 성

기권 의원(3인)

이성헌 정장선 정해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12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고 승 덕 권경석 고 흥 길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무성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옥 이 김 용 태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정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태 환 김혜성 김호연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재 일 서종표 손 숙 미 성 윤 환 손 범 규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상 진 신지호 심 재 철 안 상 수 안 형 환 여 상 규 원 희 목 유기준 원 희 룡 유 일 호 유 상 현 유성엽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윤 진 식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영 애 이 윤 석 李玲愛 이 은 재 이종구 이 윤 성 이정현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식 장 광 근 이혜훈 임동규 임 해 규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미경 정 수 성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해 걸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회 진성호 짓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인기 한 기 호 황 영 철 한 선 교 허 태 열 황 진 하 반대 의원(31인)

강 기 갑 강성천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선 택 권 영 길 김 낙 성 김동 성 金先東 김성 태 김 재 균 노 철 래 류 근 찬 박 기 춘 박 종 근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심대평 안 경 률 안 홍 준 양 승 조 유 원 일 이 명 수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희 이재선 정 하 균 최 종 원 홍 희 덕

기권 의원(53인)

강 명 순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식 김 영 우 김 장 수 김 정 권 김 을 동 김충조 김태호 김 효 석 노 영 민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서 병 수 신 학 용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선 호 유정현 윤 상 일 이성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재 이한성 이화수 임 영 호 장 병 완 정 두 언 정 범 구 정 병 국 정양석 정 영 희 정 태 근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정 식 주 광 덕 추 미 애 허 현기환 홍 사 덕 천 홍 영 표 홍일 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동 金先東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정권 김 장 수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충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김희철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보 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영 수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상 수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희 룡 원 유 철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선호 유성엽 유 원 일 유 일 호 유 정 현 유 정 복 윤 상 일 윤 상 현 이경재 유 석 용 유 영 유 진 식 이두아 이명수 이 낙연 이명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 애 주 이 석 현 이 성 남 이성헌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李玲愛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정 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정 두 언 전 재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옥 임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태 근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문 환 조 영 택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주 승 용 주호영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홍 영 표 허 첡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임 영 호

투표 의원(215인) 찬성 의원(183인)

오 제 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택 기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동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정 김 김 정 권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짉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송 민 순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유기준 유 일 호 워 회 목 유 승 민 유정복 유 재 중 유정현 윤 상 일 유 상 현 유 석 용 이경재 윤 옂 이 군 현 이 낙연 이 두 아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사 철 이석현 이 상 득 이 성 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주 영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춘석 이학재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혜 훈 이 한 성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임 해 규 전 여 옥 정 몽 준 전 재 희 정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정세 균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장선 정 진 섭 조 영 택 정희수 조 윤 선 조 전 혁 주 호 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광덕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허 태 열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21인)

강 창 일 강 기 갑 곽 정 숙 권 영 길 金先東 김 영 록 김 재 균 김 진 애 류 근 찬 박 은 수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원 일 이정희 전 병 헌 정 해 걸 최 영 희 최종원 조 경 태 최규식 홍 희 덕

기권 의원(11인)

권선택 김낙성 김성식 김효석 문학진 송영선 심대평 양승조 정두언 정태근 조문환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성 태 영 김 영 우 김옥이 김 소 남 김 록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재 김 정 김 진 김 균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혜 성 김호연 김 태 환 효 석 김 희 나 성 린 남 경 김 철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기 춘 박 보 환 박 병 석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짉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송 훈 석 선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심 재 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애 주 이 사 철 이상권 이 상 득 李玲愛 이용 이 윤 석 이 윤 섭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종구 이정선 이정 현 이정 회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찬 열 이 춘 석 이춘 식 이학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 장 광 근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미경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태 근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병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추 미 애 한기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홍일 표 홍 사 덕 홍 희 덕 황 영 철 (허원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8인, 찬성 의원 188인임)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8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선 택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김 동 무 성 성 곤 성 철 김 김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세연 김 영 록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혜 김호연 김 성 나 성 린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변웅전 짉 백 원 우 변 재 일 서 병 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민 순 훈 석 신 낙 균 송 신 상 진 신 성 범 영 수 신 지 호 신 심 대 평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안 홍 준 환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원 희 목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이미경 이 범 래 규 이 범 관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0] 정 혅 이 정 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해 규 읶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수 성 정 범 구 정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의 화 정 장 선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조 윤 선 주 승용 진 수 회 주 호 영 진 성 호 차 명 진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원 제 홍 사 덕 홍일 표 허 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성윤환 정두언

(박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98인, 기권 의원 2인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구 상 찬 고흥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유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희 상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변 웅 전 변 재 일 성 유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아 효 대 아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상 득 李玲愛 이 은 재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하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화수 임 해 규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미경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조경태 정 해 걸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진 래 주 승 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규 식 최연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유 성 엽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 곤 김성식 김성동 김성조 김성태 김 소 남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정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충환 김 태 화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숙미 송 영 선 송 훈 석 송 민 순 신 성 범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상 현 이경재 이 군 현 유 옂 유 진 식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 사 철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상권 이 상 득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재선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병국 정세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태근 정장선 정진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진 형 조 전 혁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희 영 차 명 진 진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허 태 열 천 홍일 표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유 승 민

찬성 의원(206인)

김성수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동 김성조 김성식 김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태 원 김 태호 김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희 철 김 효 석 나성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변웅전 변 재 일 서 병 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용 신지호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영 윤 진 식 이경재 윤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미경 이 범 관 이 사 철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윤 성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철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양석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옥 임 정장선 정 의 화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기권 의원(5인)

장길부 강명순 구상찬 김성수 성윤환

(유승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6인, 기권 의원 5인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 곤 김성동 김 세 연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박 기 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우 순 박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짓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규 백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원 유 철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워 희 룡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재선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종구 이정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화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병 헌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혜 숙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장 선 정 태 근 정의화 정 진 섭 정 해 걸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형 주 승 용 조 진 래 주 광 덕 영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홍 사 덕 홍일 표 홍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8인)

장명순 김성수 이미경 이정선 정범구 정옥임 최영희 홍영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길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식 김성 태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태 화 김 학 송 김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병 석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은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지 호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률 아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영 이 두 아 유 진 식 이 낙 연 이경재 이명규 이 명 수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옥 임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영 진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허 원 제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희 덕 반대 의원(1인) 신 성 범

기권 의원(4인)

강 명 순 곽 정 숙 안 민 석 황 진 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성동 김성 곤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호연 김 희 철 김 효 석 남 경 필 나 성 린 류 근 찬 박 기 춘 노 철 래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진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성 윤 환 송 민 순 손 숙 미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진 식 이두아 윤 석 용 이 낙연 이명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회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한 구 이 혜 훈 이화수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재 희 정 두 언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범 구 정병국 정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의 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경태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유 선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병 국 최 규 성 최규식 최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황 우 여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반대 의원(5인)

장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기권 의원(2인)

전병헌 황진하

○씨름진흥법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기 갑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구 김 장 수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충환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짓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웅 전 백 원 우 변 재 일 서병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지 호 심 대 평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두아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래 이 범 관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은 재 이용희 이 유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 재 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임동규 전 병 헌 전 여 옥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수 성 정양석 정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조 윤 선 조 진 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최 연 희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사 덕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김동철 안민석

(안민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03인, 기권 의원 2인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백 재 혐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양 승 조 여 상 규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유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윤 진 식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유 석 이 유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 재 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구 이춘식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해 규 장 광 근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두 언 정미경 전 현 희 정몽준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경태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주 광 덕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수 회 진성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사 덕 허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권 영 길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우 김세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 효 석 김혜성 나성 린 노 영 민 김 희 철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짉 변웅전 서병수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목 원 희 룡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사 철 이 상 권 이상득 이석현 이 애 주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주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장 선 정 태 근 정의화 정 진 섭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정 하 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규성 최 병 국 최연회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전 재 희 정 범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기권 의원(2인)

황 우 여

박 은 수 이 사 철 (전여옥 의원 표결기 조작

황 진 하

(전여옥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6인, 찬성 의원 174인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 석 호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 상 희 김 성 동 김성식 김 영 록 영 우 김 옥 이 김 세 연 김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기 춘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검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선호 유 일 호 유성엽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사 철 이 애 주 이석현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정선 이 재 선 이 정 혅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장 광 근 장 병 임 동 규 왂 전 여 옥 정 두 언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영 차 명 진 최경희 진 최규성 최연회 최 규 식 최병국 추 미 애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첡 홍 사 덕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김 재 균

이 정 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 영 우 김성식 김세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워 김 태 호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희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박 병 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신 상 진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정복 유선호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현 유 석 용 유 상 현 유 진 식 이두아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석 혀 이애주 이 용 섭 이용희 李玲愛 이 윤 석 이인기 이재선 이정선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한구 이 화 수 이 한 성 장 광 근 장 병 완 임 동 규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혀 희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 범 구 병 국 정세균 정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장 선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차 명 진 최경희 진 성 호 진 영 최 규 성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추 미 애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천 홍 사 덕 홍 일 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성 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성 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 영 록 김옥이 김성식 김 영 우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용구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재 김혜성 김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보 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혅 변 웅 전 서병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유 근 오 제 세 워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선 호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 경 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명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애주 이석현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석 이인기 이재선 이 종 구 이정선 이정현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한 구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이화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균 정 장 선 정의화 조경태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짉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식 최 연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허 태 열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회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5인)

장기갑 곽정숙 권영길 金先東 이정희

기권 의원(3인)

권 선 택 김 세 연 성 윤 환 (김세연·이정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9인, 반대 의원 5인, 기권 의원 3인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우 김세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화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진 변웅전 서 병 수 손 숙 미 성 윤 환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상 진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양 승 조 우 유 근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선호 유 일 호 유 기 준 유성엽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석 용 이경재 윤 진 식 이 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 명 규 이범관 이 범 래 이상권 이상득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재선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정현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여 옥 장 광 근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 균 정 영 희 정의화 정 장 선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조 정 식 주호영 진성호 차 명 진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첡 홍 사 덕 홍 영 표 현기환 홍일 표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3인)

이용섭 정두언 홍희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기현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 유 정 김 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유 김 김 진 애 정 김 진 표 춘 김충조 김 충 환 김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희철 김 혜 성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류 근 찬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짉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혅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진 식 이경 재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 낙 연 이 명 수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상 득 이석현 李玲愛 이용 이용희 이 윤 석 섭 이인기 이 재 오 이재선 이정 선 이정현 이 주 영 이정 회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학재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circ 임동규 광 근 장 병 전 여 옥 장 완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미경 정 병 국 정세 균 정 정 범 구 정 수 성 옂 회 정의화 정 장 선 정 정 해 걸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조 전 혁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영 최경희 최규성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워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황 우 여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 민 석 차 명 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고 승 덕 권 선 택 권 영 길 택 기 김 광 림 권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 성 식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조 충 환 김 태 원 김 김 태호 김 태 환 학 송 김 학 재 김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짉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숙 미 민 순 송 영 선 송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원 유 철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선 호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윤 상 현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 범 이 범 래 이 상 권 관 이 사 철 이 상 득 이석현 이 애 주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정 쳙 이 종 구 이 주 영 0]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화 수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전 여 옥 왂 전 재 회 전 현 회 정 범 구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성 진 최병국 최 규 식 최연 희 최영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허 태 열 첡 홍일 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1인)

李玲愛

기권 의원(1인)

성 윤 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무 성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효 석 김희철 나성 린 류 근 찬 남 경 필 문 학 진 노 영 민 박 병 석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박 준 선 백 재 형 변웅전 서병수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워 희 룡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 석 용 이경재 유정복 이 낙연 이두아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상득 이 석 현 이 애 주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여 옥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전 재 희 정미경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태근 정 해 걸 정 진 섭 정 하 균 조경태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원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희 진 영 최 규 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워 제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4인) 이미경 李玲愛 정 범 구 최경화 기권 의원(7인) 권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 춘 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정 영 희

서종표

투표 의원(174인)

김 태 환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성 식 김성회 김 김 영 록 김 영 우 김세연 김 소 남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진표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오 제 세 원 희 목 유성엽 유일호 원 희 룡 유정복 유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득 이 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유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현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정 두 언 정 범 구 전 현 희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 희 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병국 최연회 최인기 최 규 식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김성조

(노영민·박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4인, 찬성 의원 173인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영 길 권 선 택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세연 김성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재 김혜성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성 윤 환 손 숙 미 서 종 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지 호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양 승 조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이경재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득 이 사 철 이 용 섭 이 윤 석 李玲愛 이용희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세 장 광 근 장 병 완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범 구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의화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화 진 옂 최병국 최규식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허 태 열 현기환 천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홍 사 덕 황 진 하

(강명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77인, 기권 의원 없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고 승 덕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재 윤 김충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확 김 학 송 김 학 재 형 오 김 효 석 김 김 혜 성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백 재 현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송 민 순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규 백 아 민 석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우 윤 근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두아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사 철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상 득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 재 선 이정선 이정 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춘 식 이진복 이 찬 열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광 근 병 와 장 세 환 전 재 희 장 정 두 언 정 범 구 전 현 희 정 몽 준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의 화 정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정희수 조 원 진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장광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8인, 기권 의원 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림 김 기 현 김 무 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성 회 김세연 김 김 영 록 영 우 김 옥 이 김 소 남 김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춘 진 김 진 애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학 재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문 학 진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화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워 우 박 종 근 배 은 희 서병수 변 웅 전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민 순 송 영 선 송 송 훈 석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득 李玲愛 이 용 섭 이성남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정 혅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장 광 근 병 완 장 세 환 장 전 현 희 두 언 전 재 희 정 정 몽 준 정 범 구 정세균 수 성 정 영 희 정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조 경 태 정 해 걸 정희수 조 배 숙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병국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 연 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백재현 조원진 황진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소 남 김 유 정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춘 진 김 재 윤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형 오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문 학 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기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신 낙 균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득 이성남 이 용 섭 이용희 李玲愛 이 윤 석 이 은 재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혅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 몽 준 정 범 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태 정 해 걸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수 희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인) 유 성 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성 곤 김성동 김 김성식 김성조 성 회 김세연 김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 소 남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춘 진 김 재 윤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나성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은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손 범 규 송 민 순 서 종 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재 철 안 규 백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성 엽 유 정 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득 이성남 李玲愛 이 용 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용희 이 윤 석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현 이정 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정희 이진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두 언 정세 균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호영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최경화 짓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선 교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황 우 여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진 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동 김성조 김성회 김옥이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순 자 박 보 환 박 종 근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성 범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혀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성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유 석 이 인 기 이 은 재 이재오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학재 이 한 성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범구 정병국 정 수 성 정세 균 정 태 근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진 래 조 진 형 조 배 숙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차 명 진 영 최경환 진 수 희 진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규식 최인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현기환 홍 사 덕 허 천 홍 영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홍일 표

기권 의원(2인)

박주선 성윤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정권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형 오 김 학 송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송광호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우 유 근 안 효 대 여 상 규 원 혜 영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이경재 이두아 윤 석 용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성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학재 장 광 근 이 한 성 임 동 규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한 선 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택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 곤 김 동 철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우 김 옥 이 김세연 김 영 록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형 서병수 서 종 표 변 웅 전 성 유 환 손 범 규 송 영 선 손 숙 미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범 관 이 사 철 이성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학 재 이 한 성 임동규 장 광 근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회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 균 정 영 희 정의화 정 태 근 정진섭 정희수 정 하 균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짓 영 최경화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규식 최인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현기환 홍 사 덕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김 낙 성 송광호

(안홍준 의원 표결기 오작동. 실제 찬성 의원 172인, 기권 의원 2인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우 김성회 김 영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창 수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학 송 혜 김호연 김 성 김 희 철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훈 석 송 영 선 신 건 신 낙 균 신 영 수 신 상 진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원 혜 영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일호 유정복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 군 현 이 두 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사 철 이 범 래 이 용 섭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재 오 이 종 구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재 장 광 근 장 병 완 이 한 성 임 동 규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수 성 정병국 정세균 정 영 희 정 의 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병국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첡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동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영 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정 권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충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은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송광호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아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성 엽 유정복 유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미경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학재 이 한 성 임동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최경환 진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규식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태 열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황 영 철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성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균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진 애 김 창 수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학 송 김 형 오 김 혜 김 성 김호연 김 희 철 남 경 김 효 석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박 병 석 박 보 환 해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젉 서 병 수 손 범 규 서종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건 신 낙 균 신 영 신 학 용 신 성 범 수 신 지 호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원 유 철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혅 윤 석 용 이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이 범 관 이 범 래 7 李玲愛 이 사 철 이 성 이 영 애 남 이 은 재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 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학 이 한 성 임 동 규 재 장 광 근 장 병 장 세 환 전 재 희 완 현 희 몽 준 정 범 구 정 병 전 정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하 균 희 수 정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짓 옂 차 명 진 최경 최경희 화 최 규 식 최병 국 최 연 회 최영 회 최인기 최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이미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궈 경 석 권 선 택 성 권 영 길 택기 김 광 림 권 동 권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 동 성 김무성 김성 관 김 성 동 김 성 식 김 성 회 세 김 영 록 성 조 김 김 연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짓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류 근 찬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영 식 은 희 박 준 선 배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손 범 규 성 윤 환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지 호 신 상 진 신 성 범 영 수 신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위혜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성엽 유 기 준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정 윤 석 용 이경 이 군 현 혅 재 이 낙연 이두아 명 이미경 0]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재 오 이인기 이정 이정현 이정 이 종 구 선 회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영 회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회 정 하 균 정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환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희덕 황영철

기권 의원(1인)

최 종 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트표 이외(1010)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홍길 고 승 덕 권경석 권 선 택 권 택 기 김 광 림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 곤 김성동 김 성 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옥 이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창 수 김 충 조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호연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혀 변웅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건 신 영 수 심대평 안 경 률 신 학 용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유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은 재 이인기 이 유 석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장 광 근 이 한 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조 배 숙 조 진 래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조 해 진 진성호 진 수 희 짓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강명순 강 기 갑 강 봉 균 강 석 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병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광 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지 호 심 대 평 안 경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워 혜 영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정현 유 성 엽 유 정 복 이경재 윤 석 용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李玲愛 이 영 애 이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한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범구 정 병 국 정 몽 준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해 걸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현 기 환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9인)

이성남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선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세연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록 김옥이 김 소 남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충 조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백 재 현 서 병 수 서종표 손 범 규 성 유 화 송 광 호 송 훈 석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심 대 평 신 학 용 신 영 수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 군 현 이경재 이두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범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성 남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정 몽 준 전 혀 희 정범구 전 재 회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배 숙 정 해 걸 조 경 태 주 광 덕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용 주호영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연희 최인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조 원 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성동 김성 곤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 태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김 정 권 김 창 수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충 화 김 태 원 김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광호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상 진 신 검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 정 현 유 정 복 유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군현 이두아 이 범 관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성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은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현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정희 이 찬 열 이 한 구 이한성 임동규 전 재 희 임 해 규 장 광 근 장세 환 전 현 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 영 희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형 조 진 래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차 명 진 진 수 회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태 열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신낙균 이정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명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회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호 김 형 오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영 민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성 윤 환 변 웅 전 서 종 표 손 숙 미 송 광 호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건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형 환 안 민 석 아 효 대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룡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윤 석 용 유 정 현 이경재 이 군 현 이 두 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영 애 이 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하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세 환 재 전 현 희 전 회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의 화 정 진 섭 정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원 진 조 진 형 조 경 태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진 성 호 진 수 회 영 차 명 진 최경환 진 최병국 최경희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워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낙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172인)찬성 의원(172인)

강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성 회 김 영 록 김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옥 이 김용구 김 용 김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태 호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학 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은 수 배 은 희 백 원 우 서 병 수 백 재 현 변 웅 전 서종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성 범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미경 이 사 철 이 범 관 이 범 이 병 석 래 이상권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이용회 이 윤 석 섭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 선 이 주 영 이정현 이종구 이정 회 이진복 이 한 구 임동규 이 한 성 해 규 광 장 병 장 세 환 임 장 근 완 전 병 헌 혅 회 정미경 정 범 구 전 병 국 정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희수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정 조경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성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 경 희 최병 최 규 식 국 최연 회 최영 회 최 인 기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9인)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성 첡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경 권 석 권 선 택 권 영 길 영 세 권 택 기 권성동 권 김 기 현 김 광 림 김 동 성 김 낙 성 김 동 김 무 성 철 김 상 회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 성 식 김성회 김세연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 김 유 정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태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효 석 남 경 필 김 희 철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은 회 배 백 원 우 서병수 변 웅 전 서 종 표 손 숙 미 송 영 송 민 순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률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이경재 이두아 윤 석 용 낙 연 이 이미경 이 범 관 이 병 이 사 철 석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이 영 이 용 섭 용 애 이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현 이정선 이 종 구 주 영 이진복 이정 회 0] 이 한 구 이한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세 환 전 재 전 현 희 정 미경 정 범 구 회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주 승 용 진 수 회 덕 짉 성 호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회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허 원 제 11/ 허 허 태 열 홍 영 표 천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범 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태 원 김 태호 김 효 석 남 경 김 희 철 나 성 린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 대 해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백 워 우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송 훈 석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낙 균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희 룡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연 이미경 이두아 이명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 주 영 이정 쳙 이정 이 종 구 회 이진복 이한구 이한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미경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옂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홍 영 표 허 천 현 기 환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성 윤 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조 김성식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나성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기 춘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일호 유 성 엽 유 정 복 유정현 이경재 유 석 용 이 두 아 이 낙 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 영 애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정선 이 주 영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진 복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정미경 전 재 희 전 현 희 정범구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진 형 조 배 숙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최경희 진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현 기 환 홍일 표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조 진 래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 택 기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대평 신 지 호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워 유 철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상권 이성남 이 사 철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유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광 근 장 세 환 전 병 헌 전 현 희 전 재 회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진 섭 정 수 성 영 희 정 정 하 균 정 희 수 정 태 근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최경환 최경희 영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원제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성 윤 환 조 배 숙 황 영 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선 택 권성동 권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권 영 길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관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소 남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호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희철 류 근 찬 남 경 필 나성린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선 영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종 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형 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일 호 윤 석 용 유정복 이경재 유정현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석 현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선 이정선 이정 혅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재 희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균 정 영 희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최경환 최경희 진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희 덕 홍 재 형 황 우 여 황 영 철 황 진 하 (박영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3인, 찬성 의원 183인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6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동성 김 기 혅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영 록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호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병수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지호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신 학 용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원 유 철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일호 유정복 윤 석 용 유 정 현 이경재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병 국 정세 균 정 정 영 희 정 수 성 진 섭 정 태 근 정 정희수 조 경 태 정 하 균 조 배 숙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조 진 래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태 열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안 민석 황 영 철

(강창일·박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8인, 찬성 의원 186인, 기권 의원 2인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7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 곤 金先東 김성동 김성조 김 성 김성식 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기 춘 류 근 찬 문 희 상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병수 변 웅 전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은 재 이용희 이인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 선 이 주 영 이정현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장 세 환 임 동 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범구 정 수 성 정 병 국 정세 균 영 회 정태근 정 하 균 정 정진섭 정희수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인기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권 택 기 성 윤 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 성 조 김성회 김 영 우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옥이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김 을 동 김 재 균 정 김정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충환 김 태 호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영 아 백 원 우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손 범 규 송 민 순 송 훈 석 신 성 범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정 복 유정현 윤 석 용 이 경 재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병 석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재 오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 주 영 이 종 구 이정 회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해 규 임 동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재 성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4인)				
성 윤 환	유 성 엽	이 미 경	최 규 식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30인)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승 규 권 경 석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옥 이 김 영 록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워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백 원 우 박 준 선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손 범 규 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건 신지호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양 승 조 안 민 석 안 형 환 여 상 규 원 희 룡 오 제 세 우 윤 근 워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병 석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오 이정선 이정현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학재 임동규 임 해 규 장 광 근 전 재 희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정의화 정진섭 정 해 걸 정 희 수 조 배 숙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정 식 주 승 용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수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짉 옂 최종원 허 태 열 허 천 홍 영 표 홍 재 형 황 우 여

반대 의원(29인)

강기 갑 곽 정 숙 고 승 덕 고 흥 길 권 선 택 권 영 길 김 낙 성 金先東 김용구 류 근 찬 박선 영 변 웅 전 송 광 호 심대평 안 홍 준 유 성 엽 이애주 李玲愛 이 재 선 이정희 이 한 구 주 호 영 최경환 최경희 최연 희 최 병 국 한 기 호 홍 희 덕 황 진 하

기권 의원(35인)

강 창 일 권성동 김 상 희 김성회 김 영 우 김 을 동 김 김 태 환 정 박 주 선 문 학 진 박 보 환 배 은 희 서 병 수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안 효 대 원 유 철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이 사 철 이 한 성 이 혜 훈 정 영 희 정태근 정 하 균 추 미 애 최 규 식 한 선 교 허 원 제 현 기 환 홍일 표 황 영 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기 정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성 동 권택기 권 선 택 권 영 길 김기현 김 낙 성 김 광 림 김 동 성 김무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용 구 김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종표 손범규 손 숙 미 송 훈 석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혜 영 원 유 철 워 희 룡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정 복 유 재 중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회 이 윤 석 이 은 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 주 영 이정희 이종구 이진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임동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병국 정세 균 정수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허 태 열 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사 덕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2인)

한 기 호 허 원 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용구 김 영 록 김 옥 이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정 김 김정권 김 진 애 김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혜성 김 형 오 김호연 김 효 석 나 성 린 남 경 필 문 학 진 박 대 해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병수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건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신 지 호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상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우 윤 근 원 희 룡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석 용 유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주 영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학 재 이 철 우 이 한 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혀 희 정몽준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의 화 정진섭 정태근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형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조 해 진 진 수 희 영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최경희 최병국 최경환 최 규 식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박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3인, 기권 의원 없음)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세 연 김 소 남 김 영 김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균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정 김 정 권 김 춘 진 김충조 김 진 애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핔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주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혅 서병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이경 윤 상 일 윤 석 용 유 영 재 이 군 현 이명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병석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희 이 윤 석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 이정선 이 정 오 현 이 주 영 이정희 이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이 한 구 임동규 장 병 장 세 환 전 병 완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 균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회 수 정 태 근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 수 희 영 최 경 환 진 차 명 진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회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4인)

이 미 경

이 용 섭

이 한 성

정 범 구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명 순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기 현 김 낙 성 김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성동 성 식 김성조 金先東 김 김 세 연 김 영 록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정권 김 진 애 춘 진 김 충 조 김 김 태 원 김 충 환 태 화 김 학 송 김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박 은 수 백 워 우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재 일 서 병 수 송 민 순 송 훈 석 송 영 신 건 신 낙 균 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안 경 률 심 대 평 안 민 석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원 희 룡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윤 영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 이성남 혅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현 이정선 이 정 회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한 구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장 세 환 전 혀 희 전 재 회 정 범 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희수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광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회 최영희 최인기 추 미 애 허 원 제 최종원 한 기 호 허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사 덕 첡 홍 영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홍 재 형 기권 의원(1인) 이용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길 부 강 기 갑 강 봉 균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택 기 권 성 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 성 김동철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 소 남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정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배 은 희 변 재 일 서병수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건 신 낙 균 신 영 수 신 신지호 안 경 률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성 엽 유 정 복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이 성 남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회 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조 배 숙 조 정 식 주 광 덕 주호영 조 해 진 주 승용 진 수 희 영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혀 기 화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홍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강 명 순 손 숙 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선 택 권 성 동 영 길 권 택 기 권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 유 정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태 원 김호연 김혜성 나성 린 김 희 철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순 자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상 일 윤 영 이 경 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 범 래 이상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세 환 전 병 헌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의화 정 태 근 정 희 수 정진섭 정 하 균 조 경 태 조 정 식 조 배 숙 조 원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호영 조 해 진 진성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 영 희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태 열 현 기 환 허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홍 희 덕

기권 의원(2인)

이정희 이종구

찬성 의원(186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조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김정권 정 김충조 김 충 환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송 민 순 신 낙 균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회 룡 유 기 준 원혜영 워 회 목 유 재 중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유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유 영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섭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 재 선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정희 이 철 우 이학재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한성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임 해 규 장 세 환 정 범 구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병 국 최 연 희 최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허원제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김세연 손숙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낙 성 金先東 성 동 김성식 김 상 희 김 김세연 김성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학 송 김충환 김 태 원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영 아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은 수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손숙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건 신 낙 균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여 상 규 안 효 대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혜 옂 원 희 목 원 희 룡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윤 석 용 혅 윤 상 일 윤 영 이명규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상 권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윤 석 이용 이용희 섭 이 윤 성 이 인 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 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훈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전 현 희 장 세 환 전 병 헍 전 재 희 정몽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허 원 제 한 기 ই 허 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황 영 철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이미경 정범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 성 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을 동 김 재 균 김 김 김정권 김 춘 진 정 김 진 애 김충조 김 충 환 태 원 김 태 환 김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선 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백 원 우 배 은 희 백 변웅전 재 혅 서 병 수 변 재 일 손 숙 미 서 종 표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옂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연 이 범 관 이 범 래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 이정희 선 이 주 영 이종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장 병 완 임 해규 장 세 환 전 재 희 현 희 정 몽 준 전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세 균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호 최 경 환 진 수 회 짉 영 차 명 짓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첡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황 우 여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기권 의원(1인)

전 병 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4인)

장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권경석 권선택 권택기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상희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유정

김을동 김재균 김 정 김진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호 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근찬 문희상 박병석 박보환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 우 순박 주 선배 은 희백 원 우백 재 현변 웅 전변 재 일서 병 수

 서종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 낙균
 신 성 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미 경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영애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 윤 석

이 윤 성

이용회

이용섭

이 정 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 동 규 임 해 규 장 세 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범구 정병국 정수성 정영희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원진 조정식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황영철 황우여

반대 의원(5인)

장기갑 권영길 金先東 이정희 홍희덕

기권 의원(3인)

김 정 권 김 혜 성 전 병 헌 (이정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5인, 기권 의원 3인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참서 이의(187이)

찬성 의원(187인) 강 기 갑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 유 정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효석 김희철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병석 박보환 박선영

박순자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종표 손숙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우 유 근 워 유 철 여 상 규 오 제 세 원 회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유재중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윤 영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사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인기 이 윤 성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희 이종구 이정선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장 병 완 장 세 환 임 해 규 전 현 희 정몽준 정 범 구 전 재 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조 해 진 진 성 호 차 명 진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워 제 허 태 열 혀 기 화 허 첡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사 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전 병 헌

(강기갑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7인, 기권 의원 1인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5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권 경 석 곽 정 숙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옥 이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을 동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남 경 필 김 희 철 나 성 린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우 순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병수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민 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규 백 안 경 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원 희 룡 영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성엽 유 일 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석 용 이경재 윤 상 일 윤 영 이 군 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李玲愛 이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윤 석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 주 영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혜 훈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정몽준 정 병 국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해 진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옂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워 한 기 호 허 원 제 허 허 태 열 현 기 환 천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낙 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19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성동 권 택 기 김기현 김 광 림 김 무 성 김 낙 성 김성동 김성식 김 성 조 김성회 김 영 우 김세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충 조 김 학 송 김 정 권 김 태 원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준 선 백 원 우 변웅전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신 성 범 신 영 수 안 경 률 신 지 호 심 대 평 안 민 석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 일 호 유 기 준 유 승 민 유정복 유 정 윤 상 일 윤 석 용 현 윤 옂 이경 이 군 현 이 명 규 재 이 범 관 이 범 이 사 철 이 상 권 래 이애주 李玲愛 이 영 애 이용희 이 재 선 이 재 오 이종구 이 윤 성 이 주 영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차 열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혜 훈 임동규 전 재 회 정병국 정 수 성 영 희 정 태 근 정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회 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호영 조 해 진 진 성 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병국 최연희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42인)

강 기 갑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영 길 김 동 성 김 동 철 김 상 희 金先東 김 영 록 김 진 애 김 춘 진 김 효 석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은 수 백 재 현 서종표 송 훈 석 송 민 순 양 승 조 원 혜 영 신 건 안 홍 준 유성엽 이낙연 이성남 이 용 섭 이정희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정범구 정세 균 주 승 용 조 배 숙 최 규 식 최종원 추 미 애 최 인 기 홍 영 표 홍 희 덕

기권 의원(12인)

김유정 김재균 박주선 변재일 신학용 안규백 우윤근 이윤석 임해규 정하균 현기환 홍사덕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119인, 반대 의원 42인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장기갑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권경석 권성동 권영길 권택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동철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회 김 성 조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을 동 김 장 수 김 김 정 김 진 애 김 재 균 김 정 권 김 춘 진 김 태 원 김 충 조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혜 김호연 김 성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문 희 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박 주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손 범 규 송 민 순 서 종 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성 범 신 검 신 영 수 신 지 호 심 대 평 신 학 용 안 규 백 안 경률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상 권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한 성 이혜훈 임동규 임 해 규 병 완 장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병 국 정세 균 정 정 수 성 정 의 화 정태근 정 진 섭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주 광 덕 조 정 식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인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혀 기 화 홍 영 표 홍 사 덕 홍 재 형 홍일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이윤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3인, 찬성 의원 173인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19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 명 순 고 승 덕 고 흥 길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무성 김성동 김 동 철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성조 김 영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정 권 김 춘 진 김 충 조 김 충 환 김 학 송 김 태 원 김 형 오 김 태 환 김혜성 나 성 린 김호연 김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손 범 규 변 재 일 신 영 수 신지호 손 숙 미 신 성 범 신 학 용 안 민 석 심 대 평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정복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범 관 이 군 현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춘 식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임동규 임 해 규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조 원 진 정희수 조 배 숙 조 해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진성호 진 수 회 차 명 진 최경환 최병국 최 인 기 한 기 호 허 허 태 열 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사 덕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38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영 길 김동성 김 상 희 金先東 박 우 순 김 진 애 김 효 석 박 병 석 백 원 우 백 재 현 서종표 송 훈 석 신 건 안 경 률 양 승 조 원 혜 영 유 성 엽 이 낙 연 李玲愛 이 유 석 이정희 이한성 이혜훈 장 병 완 장 세 환 정 범 구 주광덕 주 승 용 짓 옂 최 규 식 최영희 최종원 추 미 애 홍 희 덕

기권 의원(19인)

김 영 우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문 학 진 송 민 순 김 정 오 제 세 우 윤 근 유 승 민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일 이미경 이 성 남 정 하 균 조 경 태 최 연 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4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김 광 림 권 택 기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옥 이 김 영 우 김 장 수 김 용 태 김 김 정 권 김충조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충 환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류 근 찬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종 근 박 준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워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목 유기준 유일호 유 정 복 유 승 민 유 재 중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윤 이 군 현 이 낙연 이 두 아 이명규 이 범 래 이 범 관 이 사 철 이성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윤 성 이재 선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성 임 해 규 이혜훈 임 동 규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워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 경 환 최 병 국 최 연 희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25인)

강 기 갑	곽 정 숙	권 영 길	김 동 성
金先東	김 영 록	김 재 균	김 진 애
김 효 석	문 학 진	문 희 상	송 훈 석
신 건	안 규 백	양 승 조	유 성 엽
이 미 경	이 석 현	이 정 희	장 병 완
장 세 환	최 규 식	최 영 희	최 종 원
홍 희 덕			

기권 의원(8인)

김을동 김춘진 노영민 박선영 우윤근 이학재 주광덕 차명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강 승 규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병 석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원 우 변웅전 변 재 일 백 재 현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송 영 선 송 훈 석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신 학 용 신 지 호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일호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유 상 일 유정복 유 석 용 이두아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한성 장 병 완 이혜훈 임 동 규 임 해 규 장 세 환 전 병 헌 정 몽 준 전 재 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의화 정 희 수 조경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진 형 주광덕 조 정 식 진 성 호 진 수 희 최경환 진 영 차 명 진 최 규 식 최 병 국 최연회 최 영 희 최 종 원 추 미 애 최 인 기 한 기 호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황 영 철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정범구

(최인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4인, 찬성 의원 173인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3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낙 성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선 영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원 우 변 웅 전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송 광 호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유 옂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용섭 이 윤 석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재 선 이 재 오 이인제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 해 규 장 세 환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정몽준 정 범 구 정병국 정세 균 정수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진 성 호 진 수 회 짉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병국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반대 의원(2인)

박 우 순 최종원

기권 의원(3인)

이미경 이 학 재 최 연 희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충 환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박 병 석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학 용 신 성 범 신 지 호 심대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승 민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 군 현 이 범 래 이병석 이 범 관 이 사 철 이 석 현 이성남 이 영 애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재선 이 재 오 이정희 이정선 이 주 영 이 종 구 이진복 이 차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성 이 춘 식 이혜훈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정 몽 준 장 세 환 전 재 희 정 병 국 정범구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배 숙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정 식 조 진 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짉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영희 최인기 추 미 애 한 기 호 허 태 열 허 첡 혀 기 화 홍 영 표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최종원

기권 의원(1인)

김기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2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명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성동 권 선 택 권 택 기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성동 金先東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송광호 서 종 표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성 신 검 범 신 영 수 신 학 용 심 대 평 신 지 호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워 유 철 워 혜 영 워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이 군 현 윤 이 낙 연 이명규 이미경 이 범 래 이석혂 이 병 석 이사 철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재선 이 재 오 이 주 영 이정선 이 정 회 이 종 구 이진복 이 춘 식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이 한 이혜훈 임 동 규 성 임 해 규 병 왂 장 세 환 전 병 장 헑 정 병 전 재 희 몽 준 정 범 구 국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의 화 정 진 섭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정희수 조 원 진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수 희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허 첡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손숙미 황영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장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승규 강창일 고흥길 곽 정 숙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 성 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영 록 영 우 김옥이 김 김용구 김용 태 유 정 김 을 동 김 김 장 수 김 재 균 김정권 김 정 김 정 김 진 애 춘 진 김충조 훈 김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희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박 대 해 문 학 진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보 환 박 병 석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재 일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훈 석 송 영 신 성 범 선 신 건 신 학 용 신 영 수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아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혜 원 희 목 원 영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윤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이 사 철 석 이 석 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은 재 재 이 재 오 이 윤 성 0] 선 이정선 이정희 이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성 혜 0] 훈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정 몽 준 정 병 국 전 재 희 정 범 구 정 영 희 의 화 정 진 섭 정 세 균 정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정 식 주 광 덕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최 경 환 짉 영 차 명 진 최 병 국 최 규 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미 애 한 기 호 현기환 허 천 허 태 열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권 경 석 (이윤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82인, 기권 의원 1인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학 송 김혜 성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선 영 박 보 환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백 워 우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우 윤 근 여 상 규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상 일 이경재 윤 석 용 윤 영 이미경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범 래 이 사 철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재 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학 재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한 성 이 혜 훈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정범구 정병국 정세 균 정수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진 형 조 원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수 회 진성호 차 명 진 진 영 최경환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문 학 진

(권택기·이윤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2인, 찬성 의원 181인, 기권 의원 1인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45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기 정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권 선 택 권 택 기 권 경 석 권성동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성식 김성동 김성조 김성회 김 옥 이 김세연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정권 김 정 훈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화 김 형 오 김 태 원 김 학 송 김호연 김희철 나 성 린 김 혜 성 류 근 찬 남 경 필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순 자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심대평 안 민 석 신 지 호 안 경 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윤 석 용 이경재 윤 상 일 윤 영 이두아 이 군 현 이 범 관 이상권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종 구 이 재 선 이정선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이혜훈 임 동 규 장 병 완 임 해 규 전 병 헌 정 몽 준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진섭 정태근 정희수 조 해 진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홍 사 덕 한 기 호 허 첡 현 기 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6인) 강 기 갑 곽 정 숙 권 영 길 김 상 희 金先東 김 영 록 김 진 애 김 춘 진 박 은 수 송 광 호 신 오 제 세 건 이정희 홍 희 덕 유 성 엽 이 성 남 기권 의원(13인) 김 동 성 서종표 송 영 선 신 학 용 양 승 조 우 윤 근 이미경 이석현 전 재 희 정범구 진 영 최 규 식 최 영 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김 광 림 권 영 길 권 택 기 김기현 김 무 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정권 김 정 훈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병수 서 종 표 송광호 송 영 선 손 범 규 손 숙 미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원 유 철 워 회 목 유성엽 유 재 중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상 일 유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석현 이성남 이 애 주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李玲愛 이 은 재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춘 식 이 찬 열 이 철 우 이 학 재 이혜훈 임 해 규 임 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정범구 정병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회 수 조경태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용 조 해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 병 국 최경희 최규식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인 기

(김무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75인, 찬성 의원 174인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정 강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 창 일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권성동 김 광 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 성 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옥 이 김용구 김 영 록 김 용 태 김유정 김 을 동 장 수 김 재 균 김 김 정 권 김 정 김 정 훈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학 송 김 혜 성 김호연 김 희 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아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성엽 유 기 준 유 승 민 유 일 호 유정복 유 재 중 윤 상 일 이경재 윤 석 용 윤 영 이미경 이 군 현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상권 이 애 주 이석현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춘 식 이학재 이 혜 훈 임동규 임 해 규 장 병 완 장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몽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희수 조경태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진성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화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 영 희 추 미 애 최 인 기 최종원 한 기 호 홍 사 덕 허 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4인)

이 철 우 차 명 진 최경희 황 영 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정 강 봉 균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창 일 고 흥 길 강 승 규 곽 정 숙 권 선 택 권경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무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소 남 김성회 김세연 김 영 록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정 김 김정권 김 정 훈 김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희철 나성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영 아 박 순 자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송광호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규 백 아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워 희 목 유 기 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이두아 윤 석 용 영 이경재 윤 이미경 이 명 규 이 범 관 이상권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재선 이 인 기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진복 이정희 이 주 영 이 찬 열 이철우 이 춘 식 이학재 이 혜 훈 임동규 장 병 완 임 해 규 전 병 헌 정 몽 준 장 세 환 전 재 희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태근 정 진 섭 정 희 수 조경태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차 명 진 최경환 진 수 희 진 영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사 덕 허 첡 현 기 환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2인)

이 군 현 이인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권 경 석 곽 정 숙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김 광 림 김기 현 권 택 기 김무성 김 상 희 김 낙 성 김 동 성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영 김 소 남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정 권 정 김 춘 진 김충조 김 훈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김호연 김 희 철 성 나 성 린 남 경 핔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병 석 문 희 상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종 표 서 병 수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영 수 신 성 범 신 건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이경재 이 군 현 윤 영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애 주 이 상 권 이석현 李玲愛 이용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제 이 재 오 이정 선 이정희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혜 훈 임 해 규 장 병 임 동 규 완 장 세 환 전 병 헍 전 재 희 정 몽 준 병 국 정 영 희 정 정세 균 정 수 성 정의화 정 진 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성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진 영 최경희 최병국 최 규 식 최 연 회 최인기 최영희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일 표 홍 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기권 의원(1인)

이 인 기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 기 정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석 호 강 봉 균 강 창 일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권 선 택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동 성 김 상 희 김성동 김 성 식 김성조 김세연 김 영 록 김성회 김 소 남 김 옥 이 김용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김 재 균 정 김 충 조 김정권 김 정 훈 춘 진 김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희 철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병 석 문 학 진 박 대 해 박 보 환 박 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배 은 희 박 준 선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광 호 송 영 선 송 송 훈 석 성 신 영 수 신 건 신 범 신지호 신 학용 심 대 평 안 경 률 안 민 석 안 규 백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혜 영 원 희 목 원 유 일 호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복 윤 상 일 유정현 윤 석 용 영 경 재 이 군 현 윤 0 이 낙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상 권 이석현 이 애 주 李玲愛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인 제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희 이 진 복 이종구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학 이혜 이 재 훈 장 병 완 장 세 환 임 해 규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세 균 정 영 희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해 진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진 최 규 식 최 병 국 최영희 최 연 희 추 미 애 한 기 호 최 인 기 최종원 허 혀 기 화 홍 사 덕 홍 영 표 첡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이혜훈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181인, 찬성 의원 181인임)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강 기 정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석호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무성 김 낙 성 김 동 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옥 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조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화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호연 김 회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문 학 진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변 웅 전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손범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건 신 학 용 안 경 률 심 대 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성 엽 유 승 민 유정복 유정현 유 상 일 유 석 용 이두아 유 영 이경재 이 낙연 이 명 규 이미경 이 범 관 이상권 이석현 이 용 섭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종구 이 정 선 이정희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혜훈 임 해 규 임동규 장 병 완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 영 희 의 화 정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조 진 형 주 광 덕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인기 최 영 희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첡 홍 사 덕 홍 영 표 현 기 환 홍 일 표 홍 희 덕 황 우 여

기권 의원(3인)

박은수 홍재형 황영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3인)

이 경 재

이 낙연

이 두 아

이 명 규

강 봉 균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동성 김 상 희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옥이 김 영 록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조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워 우 백 재 현 변웅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홍 준 안 형 환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희 목 워 혜 영 유기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윤 석 용 유정현 윤 상 일 윤 영

이미경 이 범 관 이상권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임 동 규 장 병 완 장세환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몽 준 정범구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회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정태근 조 해 진 조경태 조 워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수 희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영희 최 연 희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홍 영 표 허 첡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임 해 규

기권 의원(7인)

장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무성 안민석 이정희 전병헌 (진수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73인, 기권 의원 7인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1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권 경 석 권 택 기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진 김 낙 성 김 광 림 김 기 현 김동성 김무성 김 상 희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재 균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정훈 김춘 진 김 진 애 김 충 환 김 태 환 김충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형 오 김혜성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우 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서 병 수 서종표 변 재 일 서 상 기 손 범 규 송광호 송 영 선 손 숙 미 송 훈 석 신 성 범 신 영 수 신 검 신지호 신 학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여 상 규 우 유 근 오 제 세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윤 석 용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이경재 이 군 현 이 낙 연 유 옂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이 범 관 이 상 권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용희 이 용 섭 이 윤 석 이 윤 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종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식 이학재 임동규 장 병 완 장세환 전 재 희 전 현 희 정 범 구 정 몽 준 정 병 국 정세 균 정 수 성 정 영 희 정 의 화 정진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경태 주 광 덕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희 짉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최 종 워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첡 홍일 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인)

임 해 규

기권 의원(7인)

장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정권 양승조 이정희 홍희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07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경석 권 택 기 권 선 택 김 기 현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용구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정 김 정 권 김 진 애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환 김 형 오 김 희 철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희 상 박 병 석 박 은 수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종 근 백 워 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종표 손 숙 미 손 범 규 송광호 송 훈 석 신 신 영 수 건 신 학 용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원 혜 영 유기준 유성엽 유 정 복 윤 석 용 이 낙 연 유정현 이경재 이두아 이미경 이 상 권 이 성 남 이애주 이 윤 석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성 이 재 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 찬 열 이 춘 식 이 철 우 임동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정 몽 준 정 의 화 정범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해 걸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주 광 덕 진성호 진 수 희 영 진 차 명 진 최경희 최 영 희 추 미 애 허 천 현기환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20인) 김호연 김 낙 성 김성조 류 근 찬 박선 영 변웅전 서 병 수 송 영 선 신 성 범 신 지 호 심 대 평 안 홍 준 양 승 조 李玲愛 이 영 애 이 인 기 이인제 정 영 희 최 병 국 최 연 희 기권 의원(41인) 강 기 갑 권 성 동 권 영 진 김 광 림 김 무 성 김 옥 이 김동성 김성회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훈 김 충 조 김 학 송 김 혜 성 김 태 원 나 성 린 박 대 해 박 영 아 박 준 선 배 은 희 여 상 규 원 희 목 유 승 민 유 재 중 유 일 호 윤 상 일 윤 영 이 명 규 이 은 재 이 주 영 이진복 이 학 재 임 해 규 전 현 희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 희 수 조 해 진 최경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2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택 기 권 영 진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김 상 희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성 회 김 세 연 김 김 소 남 김 옥 이 용 구 김용 태 김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김정권 김 진 애 정 김 정 훈 김 춘 진 김 충 조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희철 나성린 류 근 찬 남 경 필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 보 환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서 병 수 일 서종표 서 상 기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 성 범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안 경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형 화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준 워 희 목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이경재 이 낙연 이미경 이상권 이성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헌 전 현 희 전 재 희 정 몽 준 정 범 구 병 정 수 성 정 국 정 영 희 정의화 진 섭 정 태 근 정 정 하 균 정 해 걸 정 희 수 조 경 태 조 원 진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경희 최병국 최연 희 최 영 희 최 종 원 허 첡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희 덕 황 우 여 황 영 철

기권 의원(2인)

김 영 록 추 미 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7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기 정 강석호 강 승 규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림 김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무성 金先東 김성동 김성식 김성조 김 성 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옥이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재 균 김 장 수 김 김 정 정 권 김 정 훈 김충조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희 철 김 혜 성 김 호 연 나 성 린 남 경 필 류 근 찬 문 희 상 박 대 해 박 병 석 박선 영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종 근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재 현 백 원 우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서종표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신 학 용 심대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형 환 안 홍 준 오 제 세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회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일호 유 재 중 유정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석 용 영 이경재 이 낙 연 윤 이두아 이미경 이 상 권 이 성 남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용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재 이정 이정 선 선 현 이종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학재 이 춘 식 임 동 규 임 해 규 장 병 완 전 병 전 재 희 헑 전 현 희 정 몽 준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조 경 태 조 워 진 조 해 진 주 광 덕 조 진 형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영 회 최종원 추 미 애 허 천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황 우 여 홍 희 덕 황 영 철

○출석 의원(276인)

강 명 순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성종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구 상 찬 권 선 택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영 진 김 낙 성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 태 김 성 조 김성회 김세연 김 김 소 남 영 록 김 영 우 영 진 김옥이 김 영 선 김 김용구 김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재 균 김 재 윤 김 김 김정권 정 김 진 애 정 김 훈 김 창 수 김 충 조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환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송 김 학 재 김 형 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 석 김 희 철 남 경 필 나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은 수 박 우 순 박 종 근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회 태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워 우 변 웅 전 서 병 수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성 윤 환 손 범 규 서 상 기 손 숙 미 송 광호 민 순 송 영 선 송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건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재 철 심 대 평 안 경 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제 창 우 윤 근 원 유 철 워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성엽 유 승 민 유 원 일 유일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유 석 용 유 상 현 유 옂 유 진 식 이경재 이강래 이 군 현 이 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 명 수 이미경 이 범 래 이 병 이 범 곾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 재 오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 종 혁 이종구 이 주 영 이 진 복 이진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화수 이회창 이혜훈 임 해 규 임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세환 장 제 원 전 병 헌 전 재 희 전 여 옥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수 성 정세균 정양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순 형 조 승 수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윤 선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진 수 희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병국 최연 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한 선 교 허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천 홍 영 표 홍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96인)

강 봉 균 강 기 갑 강 명 순 강성종 강성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고 흥 길 곽 정 숙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낙 성 김동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부 겸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성태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용 태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균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정 김충조 김 태 원 김 태호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호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대 해 박 민 식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주 선 박 준 선 박 진 박 희 태 배 은 희 백 원 우 백 재 현 서 병 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성 유 환 송 훈 석 송 영 선 신 건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형 환 안 홍 준 양 승 조 안 효 대 여 상 규 오제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워 희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정복 유정현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이 명 규 윤 진 식 이 낙 연 이 두 아 이명수 이미경 이 병 석 이 범 래 이 사 철 이상권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제 이재선 이정선 이 종 구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봉 이 화 수 임동규 이회창 해규 장 광 근 임 장 병 완 장세환 병 헌 전 재 희 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몽 준 전 현 희 정 범 구 세 균 정 수 성 정미경 정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회 수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승 수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형 조 윤 선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진 성 호 진 수 회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진 옂 최병국 최 영 희 최규성 최 규 식 추 미 애 최 종 원 최 인 기 한 기 호 현기환 한 선 교 허 첡 허 태 열 홍 일 표 황 영 철 홍 영 표 홍 희 덕

○산회 시 재석 의원(10인)

강 기 갑 강 명 순 양 승 조 김 소 남 이 인 기 전 현 희 전 혜 숙 정 해 걸 홍 희 덕 홍 재 형

○청가 의원(6인)

김성순 김 우 남 이 상 민 박 선 숙 이 용 경 이 종 걸

○국회사무처

사 무 중 총 장 윤 원 입 법 곤 차 장 김 성 의 사 국 장 항 공 식

○출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박	재	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circ	주	ই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	광	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	규	용
지식경제부장관	홍	석	우
보건복지부장관	임	채	민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고용노동부장관	\circ	채	필
여성가족부장관	김	금	래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 석 환 방송통신위원회 부 위 원 장 홍 성 규

【보고사항】

○의안 제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 권영길·김선동·김춘진·유성엽·조배숙· 최규성·조승수·유선호 의원 발의)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9 정부 제출)

12월 3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9 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 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 김소남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이사철·정희수·정해결·이화수· 한기호·김우남·김호연·김태환·강석호· 정의화 의원 발의)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김재균·이춘석·장세환·강창일· 주승용·안규백·김희철·최규식·이종걸· 문학진·정양석·유선호·우윤근·최인기· 이낙연·김동철·김영진·박주선·장병완· 김영환·노영민·조정식·김영록·박상천· 이윤석·이용섭·조영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김영우·정진섭·정해걸·권영진· 신성범·손숙미·이사철·변웅전·배영식· 이화수 의원 발의)

12월 3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29 정부 제출)

12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강창일·김춘진· 김용구·김우남·김성수·안민석·김영진· 신건·오제세·강기갑·정병국·이상민· 권영길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강창일·김춘진· 김용구·김우남·김성수·안민석·신건· 오제세·정병국·이상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김춘진·김용구·

김성수·안민석·김영진·신건·오제세· 정병국·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3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김춘진·김용구· 김성수·안민석·김영진·신건·오제세· 정병국·이상민 의원 발의)

12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김춘진·김용구· 김우남·김성수·안민석·김영진·신건· 오제세·강기갑·정병국·이상민·권영길 의원 발의)

12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강창일·김춘진·김용구·김우남·김성수·안민석·김영진·신건·오제세·강기갑·정병국·이상민·권영길 의원 발의)

12월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안(대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17건 2011. 12. 30 국토해양위원장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이상 3건 2011. 12. 30 정무위원장 제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 2011. 12. 30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11. 12. 30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대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1. 12. 3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11. 12. 30 지식경제위원장 제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11. 12. 30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1. 12. 30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1. 12. 30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 (대안)

(2011. 12. 30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제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11. 12. 30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 2011, 12, 30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11. 12. 30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폐기하기로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3 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홍희덕·강창일·백재현·이미경·이용섭· 이진삼·유성엽·최철국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6. 30 김종률·강창일·김동철·김부겸·김영진·김유정·김진표·김충조·김효석·박기춘·박선숙·서갑원·장세환·전혜숙·조경태·조배숙·조정식·홍재형 의원 발의)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6 송영길·양승조·이윤석·강운태· 강창일·변재일·유성엽·우제창·김성곤· 오제세·박영선·김성순·김동철·노영민· 우윤근·최재성·백원우·이종걸·이성남· 김희철·강봉균·안규백·박주선·김재윤 의원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천정배·강창일·김재윤·이종걸· 김상희·장세환·권영길·강기갑·문학진· 최인기·유성엽·김낙성·우윤근·박은수 의 원 발의)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0. 2. 11 이영애·김용구·정옥임·강용석·고흥길·조윤선·황우여·임동규·이학재·홍일표 의원 발의)

통상절차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1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류근찬·유성엽·이용희·이재선·이진삼·임영호·정하균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김동철 의원 외 86인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박선숙·신건·김성곤·조배숙· 강창일·강봉균·박영선·홍재형·오제세· 김효석·박주선·백재현·조영택·신낙균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3. 10 김호연·구상찬·박민식·박준선· 서병수·유기준·윤상현·이명규·이사철· 이진복·임동규·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9 박은수·조영택·전현희·최영희· 주승용·김상희·백원우·강창일·곽정숙· 양승조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유재중·김금래·이윤성·권영진· 김소남·원희목·오제세·현기환·손숙미· 윤석용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7. 27 오제세·최규성·김성곤·변웅전· 조배숙·박은수·유선호·임영호·강창일· 김영록·백재현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 19 신상진·배영식·이한성·이인기· 김정권·정갑윤·이명규·권영진·이계진· 진수희·나경원·권경석·김성태·김성수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0. 9. 30 김성곤·정두언·최인기·유성엽· 김영록·신상진·조배숙·김효석·정병국· 주승용·김춘진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08. 10. 29 임해규·권영진·이사철·강석호· 서상기·공성진·이명규·정영희·김정훈· 이군현·원유철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1 김종률·강창일·김성순·김우남· 김세연·김진표·김충조·박종희·유성엽· 이낙연·이진삼·이한성·이혜훈·임두성· 전혜숙·조정식·최인기·최재성·홍장표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2010. 7. 9 권택기·이한성·박순자·김성태· 권영진·이인기·이성헌·이해봉·김옥이· 김태원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3. 2 이상민·임영호·이명수·이용희·변웅전·유성엽·김용구·권선택·류근찬·김낙성·심대평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8. 5 김재균·김동철·주승용·노영민·

최규성·박주선·강창일·최종원·전혜숙· 장병완·박선숙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2. 8 김충환·안홍준·임동규·이철우· 정병국·홍사덕·이종구·강석호·이주영· 김희철·권선택·안규백·김충조·백재현· 문학진·허천·박선영·박종희·김성순 의원 바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0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9. 9 김을동·이윤성·윤석용·홍사덕· 이명수·한기호·노철래·조경태·서상기· 변재일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30 정부 제출)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9건 정무위원장 보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 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1. 9. 30 정부 제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 2011. 9. 30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0. 9. 28 이정희·강기갑·권영길·곽정숙· 홍희덕·김성곤·신학용·유원일·백재현· 조영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1. 7. 15 이종걸·양승조·이석현·장세환· 정동영·최종원·권영길·김재균·안규백· 정장선·문학진·조승수·장병완·조영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1. 8. 17 한선교·강승규·이철우·진성호· 김금래·손범규·김태원·고흥길·허원제· 김성동·이경재·홍사덕·남경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1. 8. 18 윤상현·구상찬·김성수·김영우· 김옥이·김충환·김호연·유기준·윤상일· 정옥임·차명진·홍일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0. 7. 26 이용섭·이미경·최재성·조정식· 박영선·백재현·조배숙·박선숙·김진애· 오제세·신낙균·김영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9. 7. 31 이용섭·김상희·강창일·김동철· 우제창·양승조·원혜영·이시종·이명수· 김재윤·박선숙·유성엽·김성곤·강기정· 최인기·이종혁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0. 7. 26 이용섭·이미경·최재성·조정식· 박영선·백재현·조배숙·박선숙·김진애· 오제세·신낙균·김영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5 이정희·강기갑·권영길·곽정숙· 홍희덕·조영택·백재현·김영진·홍영표· 오제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11. 5. 4 정두언·김용태·정태근·남경필· 황우여·강용석·공성진·임해규·이진복· 김정권·김세연·진영·김성식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5. 20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 김창수·류근찬·변웅전·이명수·이용희· 이진삼·임영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1. 7. 15 이종걸·장병완·장세환·이석현· 양승조·최종원·김재균·김영진·정장선· 문학진·조영택·정동영·권영길·안민석· 김성곤 · 조승수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1. 7. 25 이혜훈·백재현·김금래·강길부· 박보환·한기호·유일호·박종근·김혜성· 구상찬·유승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7. 1 김광림·고흥길·최구식·윤영· 유재중·장윤석·김세연·이한구·강창일· 허천·강석호·한기호·황영철·강길부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3 이주영·이한성·임두성·안홍준· 안상수·유성엽·신영수·박종희·이명수· 강석호·이화수·조해진·박상돈·김성태 의 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 밤의)

(2009. 2. 12 전현희·박은수·최영희·백원우· 최재성·양승조·이춘석·최규성·우윤근· 송영길·최철국·김희철·김상희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2 오제세·김성식·배영식·김영진· 이한성·김춘진·임영호·이명수·이성헌· 정범구·이시종·이용섭·이인기·양승조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1. 13 김혜성·김성동·손범규·이애주· 노철래·정옥임·강용석·유성엽·김세연· 송훈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3 이낙연·김용구·주승용·전혜숙· 이성남·이용희·이애주·유선호·신상진· 오제세·김우남·이명수·한선교·윤석용· 이주영·최인기·김재경·최규성·신건· 이인기·현기환·조배숙·김성곤·이정희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4 김성식·이한성·김학송·김정권·

김태원·주광덕·권영진·이종혁·조진래· 김무성·정희수·구상찬·강길부·남경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조정식·노영민·김재균·정태근· 이화수·이상권·권성동·이종혁·정영희· 최연희·김진표·김태환·김재경·김낙성· 이학재·박민식·김영환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1. 7. 25 이혜훈·백재현·김금래·강길부· 박보환·한기호·박종근·김혜성·구상찬· 최경희·유승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4 오제세·김창수·김재균·정장선· 박주선·양승조·김효석·김춘진·안민석· 최규성·조경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8. 24 오제세·김창수·김재균·정장선· 박주선·양승조·김효석·김춘진·안민석· 최규성·조경태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8. 24 오제세·김창수·김재균·정장선· 박주선·양승조·김효석·김춘진·안민석· 최규성·조경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근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18 박종근·김효석·허태열·진성호· 김성식·서상기·이광재·강길부·박보환· 임두성·이명규·윤영·박준선·김무성· 유일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5 김효석·우제창·김정권·강성종· 변재일·강창일·김재윤·안상수·배영식· 김충조·오제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김효석·강창일·홍재형·문학진·

김동철·김영진·김영록·송영길·김종률· 유성엽·김상희·김성순·강기정·권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3. 9 김효석·백재현·최철국·전현희· 우윤근·박은수·이석현·변재일·우제창· 이광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 밤의)

(2009. 3. 30 최인기·우제창·문학진·김성순· 김우남·강기정·김영진·안규백·김종률· 이용섭·김효석·전현희·주승용·김재윤· 김영록·김희철·이윤석·김충조·김춘진· 김동철·김유정·김재균·최규식·송영길 의 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1 이용섭·김재윤·최문순·김영진· 이미경·송민순·최영희·안민석·박은수· 김재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9. 6. 26 전혜숙·김우남·최철국·김희철· 이미경·송민순·조정식·신낙균·김효석· 김영록·원희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발 의)

(2009. 11. 18 오제세 의원 외 8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6 김성식·서병수·배영식·권성동· 김선동·홍사덕·신성범·권영세·현기환· 권영진·구상찬·황영철·박보환·조전혁· 차명진·강명순·김성태·이화수·이정선· 정태근·김용태·김재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2009. 10. 28 이정희·최영희·유성엽·홍희덕· 권영길·강기갑·곽정숙·오제세·신건· 이석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 발의)

(2009. 9. 11 강운태·노철래·김성수·김영록· 김재균·박은수·안규백·이윤석·최영희· 오제세ㆍ이낙연ㆍ강창일 의원 발의)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27 강운대·유성엽·김성수·조영택· 김재균·강기정·안규백·백재현·김효석· 김영록·최인기·강창일·송민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2010. 9. 27 이철우·김광림·김성조·나성린· 유승민·유일호·이정선·이한성·임해규· 정갑윤·정희수·최구식·최인기·허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 발의)

(2010. 9. 30 정범구·김형오·최규식·백원우· 최인기·박주선·김재윤·이미경·전현희· 이춘석·최규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29 서병수·박민식·이진복·유재중·최구식·이사철·정두언·장제원·박준선·홍정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2010. 10. 18 이명규·고승덕·이한성·김정· 김태원·임동규·박종근·이진복·한선교· 나성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3 권영진·박보환·김선동·현기환· 박민식·김성식·최구식·김세연·신성범· 황영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25. 이혜훈·남경필·정태근·구상찬·조진래·박상은·현기환·이성헌·김혜성·김태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3 류근찬·윤영·김영진·임영호·김영록·변웅전·강기갑·주승용·이한성·김창수·김낙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9 오제세·임영호·유성엽·이인기·

김효석·김재윤·김춘진·최문순·최철국· 김용구·정장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4. 13 최규성·강기정·강창일·김재윤· 노영민·이찬열·강기갑·김재균·김영진· 박기춘·유선호·백재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1. 4. 14 박병석·조영택·유선호·홍영표· 김재균·신건·원혜영·박영선·최종원· 전현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4 임영호·김창수·이명수·김낙성· 권선택·이재선·이진삼·변웅전·김용구· 이상민·류근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2. 18 최인기·주승용·유승민·김효석·유선호·김태원·이낙연·김재균·강기정·김영록·박주선·박우순·최규성·정갑윤·김재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3. 9 오제세·김재균·백재현·김영록· 정장선·김성곤·김춘진·이찬열·김진표· 유선호·박영선·유성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1 오제세·정장선·김용구·최재성· 전병헌·김재균·강창일·유선호·김춘진· 김영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2. 28 박병석·양승조·조영택·박영선· 이미경·김재균·우제창·홍영표·김상희· 김효석·신학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4. 7 김혜성·윤석용·김세연·안홍준· 정하균·윤상일·노철래·김을동·김정· 배은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 의원 대표발의) (2011. 3. 25 송훈석·김영진·전병헌·최경희· 전현희·이인제·김세연·고흥길·장제원· 강기갑·이윤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1. 1. 25 신학용·권영진·박영선·손범규· 김진표·이찬열·신낙균·최재성·백재현· 이낙연·김재균·유성엽·유선호·박기춘· 원혜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오제세·김호연·유선호·김효석· 김영록·김우남·전병헌·박주선·박우순· 우제창·김용구·박은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봉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1. 7 강봉균·우제창·김성수·백재현· 장세환·김성곤·변재일·조배숙·신건· 송훈석·윤영·류근찬·성윤환·유일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3. 21 오제세·이낙연·김창수·유선호· 안민석·박주선·이찬열·김부겸·김재균· 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김성곤·김춘진·김재윤·주승용· 박은수·조배숙·강창일·노영민·김효석· 조정식·정장선·오제세·김부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윤선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0 조윤선·정희수·김효재·이한성· 전재희·조진형·허원제·김성동·안홍준· 최구식·조문환·배영식·진영·박대해· 구상찬·차명진·권택기·강성천·유승민· 유정현·이상권·정태근·이명규·박진· 이경재·정진섭·홍사덕·안형환·이인기· 이은재·김성수·신성범·여상규·성윤환· 권성동·강석호·김성태·이진복·손숙미· 김태원·김장수·김동성·김성회·한기호· 원유철·최병국·김기현·김옥이·고승덕· 김태환·이성헌·한선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7 권경석·김세연·김태원·신지호· 권영길·조진래·이혜훈·이종구·김성조· 임동규·강길부·최구식·이상권·최경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1. 6. 16 나경원·김소남·이명규·유기준·황영철·이정선·이한성·한선교·김기현· 김태원·주성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1 김우남·정해결·최종원·김효석· 강기갑·이사철·강창일·강기정·조경태· 김재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윤석용·권영진·김정권·박은수· 이경재·신상진·유성엽·윤영·안홍준· 박준선·김무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9 백재현·백원우·최규성·안민석· 장세환·안규백·최재성·박우순·전병현· 문학진·김효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1. 6. 28 임영호·이명수·이진삼·이재선· 김창수·류근찬·권선택·김용구·정영희· 변웅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5. 12 김호연·김성수·김춘진·박보환· 박준선·신성범·오제세·윤진식·이경재· 이명규·이명수·이사철·이용희·이학재· 이한성·이화수·임동규·정해걸·조진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11. 4. 21 김효석·최규성·유성엽·유선호· 강봉균·박은수·백재현·정동영·오제세· 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30 이정희·최종원·홍희덕·권영길· 金先東·곽정숙·조승수·강기갑·유원일· 김영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4. 22 김우남·유성엽·강봉균·강창일· 김영록·김효석·강기정·이사철·최규성· 강기갑·김상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

(2011. 5. 23 최인기·변재일·주승용·김성수· 정범구·김부겸·김영록·서종표·강기정· 김우남·정장선·조영택·박영선·신낙균· 박우순·이용섭·박선숙·유선호·장병완· 황영철·우제창·김성곤·전혜숙·강석호· 박상천·이윤석·백재현·박지원·여상규· 정희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1 구상찬·박영아·유일호·황진하· 주호영·김충환·유기준·강명순·이애주· 최구식·조전혁·허천·장윤석·김성수· 강승규·김학용·성윤환·이성헌·진수희· 정태근·이상권·나성린·김성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2011. 8. 12 우윤근·박은수·전현희·김낙성· 김성곤·이춘석·최인기·이용희·박지원· 김학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3 김성곤·주승용·유선호·김효석· 오제세·이정현·허원제·김춘진·배영식· 유일호·김정·백재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1. 8. 26 이정현·박은수·유성엽·박대해· 손범규·허원제·최경환·한선교·조윤선· 구상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11. 9. 16 김성조·유승민·윤석용·배영식· 이한성·주성영·김정권·이철우·김광림· 조원진·강길부·조진래·김태환·이명규· 이윤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1. 8. 17 강길부·김세연·윤진식·권경석· 윤영·정희수·나성린·정갑윤·신영수· 유일호·김혜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1. 9. 27 나성린·정양석·강길부·권경석· 이종구·서병수·안효대·유정현·강석호· 정해걸·유일호·배은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1. 8. 22 이용섭·송민순·김영진·김충조·최종원·강창일·전병헌·강기정·박은수·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11. 8. 23 이용섭·송민순·김영진·김충조· 최종원·강창일·전병헌·강기정·박은수· 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4 김재경·김정권·정영희·이한성· 유성엽·김태환·김소남·김성식·이종혁· 서상기·이화수·이상권·이낙연·정태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대표발의)

(2011. 8. 22 최경환·이한성·조원진·강석호· 김옥이·윤상현·나성린·강길부·이철우· 배영식·조전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1. 7. 13 주승용·백원우·조영택·조정식·양승조·노영민·최규성·박은수·강창일·이춘석·김성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8. 11 오제세·김효석·박우순·강창일· 박기춘·조영택·최규성·김재균·김성곤· 김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1. 8. 1 백재현·유선호·오제세·박우순· 문학진·최경희·전현희·김효석·조경태· 최규성·박기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8. 1 오제세·최규성·김우남·유선호· 김영록·김성곤·양승조·김용구·이용희· 김춘진·노영민·정범구·변웅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9. 1 강창일·김재균·유선호·오제세· 조영택·장세환·전병헌·강기정·김춘진· 박은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1. 8. 10 이낙연·김세연·정범구·정영희· 김영진·김호연·박영선·이종걸·김춘진· 강창일·조배숙·신낙균·이인기·조영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4 김성식·이한성·김정권·이종혁·배영식·김태원·주광덕·권영진·조진래·김무성·정희수·이주영·구상찬·강길부·권경석·남경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7 김성식·조진래·김무성·주광덕· 정희수·이주영·구상찬·강길부·권경석· 권영진·남경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7. 1 오제세·장세환·유선호·이낙연· 조배숙·김성곤·최규성·김우남·김춘진· 김충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7. 1 김광림·고흥길·최구식·윤영· 유재중·장윤석·김세연·이한구·강창일· 허천·강석호·한기호·황영철·강길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1. 7. 28 임영호·김용구·류근찬·변웅전· 이재선·김낙성·이진삼·권선택·정영희· 김창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 윤영·윤석용·허천·손숙미·

성윤환 · 김성수 · 정해걸 · 노철래 · 김낙성 · 이화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7. 12 강창일·조영택·장세환·최규성· 김춘진·유성엽·김영진·이낙연·이윤석· 주승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1. 8. 22 남경필·유기준·이한성·손범규· 박대해·손숙미·정두언·강용석·김태호· 한선교·이두아·구상찬·이윤성·김정훈· 조진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1. 7. 20 추미애·조정식·문학진·강창일· 이미경·이찬열·장병완·박선숙·원혜영· 신낙균·김재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회 의원 대표발의)

(2011. 8. 30 전재희·손범규·안상수·고승덕· 진성호·김태원·조진래·손숙미·윤진식· 이정선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5 전병헌·강창일·김성곤·김영진·김재윤·김춘진·백재현·안민석·양승조·이미경·이용섭·최종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4. 13 김광림·나성린·김용구·강길부· 장윤석·황영철·정해걸·이철우·송광호· 이한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2011. 3. 24 김성식·김세연·김정권·홍준표· 정양석·유기준·홍사덕·안효대·김충환· 김광림·황영철·송훈석·이성헌·한선교· 이학재·김학송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0 권영세·정미경·강용석·김정권· 송민순·황진하·장윤석·원희목·이상권· 정옥임·유승민·박순자·성윤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6. 23 김광림·나성린·권경석·김성식· 강길부·유일호·윤진식·이종구·정양석· 이한구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2011. 9. 16 김성조·이철우·김광림·권영진· 조원진·강길부·윤석용·조진래·김소남· 김태환·이명규·이윤석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1. 8. 31 김광림·유재중·박영아·김성식· 김호연·박선숙·정희수·안효대·윤영· 이상권·한기호·이두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

(2009. 1. 23 이용섭·강창일·양승조·이성헌· 김재윤·최문순·배영식·홍재형·김효석· 송민순·김우남·김영진·유성엽·우제창· 박은수·김상희·임영호·양정례·김동철· 윤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3 박상은·강창일·김성곤·윤영· 이경재·김정권·송영선·안규백·장광근· 최연희·이윤성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0. 2. 25 오제세·박영선·임영호·이시종· 유성엽·강운태·김우남·변재일·안민석· 송영길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

(2011. 1. 19 임동규·김정권·손범규·이한성· 권영진·강성천·이종혁·이경재·주광덕· 임해규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9 정하균·정수성·노철래·권성동· 김을동·정영희·윤상일·김정·이한성· 이진복·김혜성·허천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최규성·강기정·조경태·

박선숙·이낙연·장세환·조영택·장병완· 박은수·주승용 의원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강창일·최규성·강기정·조경태· 박선숙·이낙연·장세환·조영택·장병완· 박은수·주승용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7. 13 최규성·노영민·김우남·백재현· 이찬열·장세환·유선호·박기춘·강창일· 강기정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25 오제세·김재균·전병헌·문학진· 신낙균·최규성·이찬열·박기춘·김효석· 김재윤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발의)

(2011. 5. 19 정범구·박은수·이춘석·전현희·백원우·김우남·김효석·황영철·이윤석·최규성·정세균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3 김광림·나성린·권경석·김성식· 강길부·유일호·윤진식·이종구·정양석· 이한구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1 유일호·정진섭·김성회·김정훈· 송광호·백성운·이정선·정해걸·성윤환· 이화수·유재중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1. 8. 31 김광림·유재중·박영아·김성식· 김호연·박선숙·정희수·안효대·윤영· 이상권·한기호·이두아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8. 30 김성조·배영식·이한성·김혜성· 김소남·조배숙·권영진·조원진·강길부· 이철우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3 오제세·김영록·김우남·최규성· 박기춘·김용구·김춘진·강창일·박우순· 김성곤·유선호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

(2011. 8. 24 유일호·이종구·강길부·김학용· 정해걸·강석호·김성수·윤영·이화수· 한기호·김광림·안홍준 의원 발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30 정부 제출)

(이상 13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8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23 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 홍희덕·강창일·백재현·이미경·이용섭· 이진삼·유성엽·최철국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

(2008. 6. 30 김종률·강창일·김동철·김부겸· 김영진·김유정·김진표·김충조·김효석· 박기춘·박선숙·서갑원·장세환·전혜숙· 조경태·조배숙·조정식·홍재형 의원 발의)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08. 9. 16 송영길·양승조·이윤석·강운태· 강창일·변재일·유성엽·우제창·김성곤· 오제세·박영선·김성순·김동철·노영민· 우윤근·최재성·백원우·이종걸·이성남· 김희철·강봉균·안규백·박주선·김재윤 의원 발의)

통상협정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천정배·강창일·김재윤·이종결· 김상희·장세환·권영길·강기갑·문학진· 최인기·유성엽·김낙성·우윤근·박은수 의원 발의)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0. 2. 11 이영애·김용구·정옥임·강용석·고흥길·조윤선·황우여·임동규·이학재·홍일표 의원 발의)

통상절차법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1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용구·류근찬·유성엽·이용희·이재선·이진삼·임영호·정하균 의원 발의)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9 김동철 의원 외 86인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3 정수성·이종혁·이인기·한기호· 박대해·김을동·정갑윤·최병국·임동규· 김소남·김태원·김정권·안경률·유정현· 진영·윤상일·이명수·신지호·안효대· 김충조·문학진·장세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9. 7. 6 이미경·강창일·신학용·김우남·양승조·최철국·정세균·김동철·김상희·이용섭·박은수·김진표·김종률·김성곤·이성남·이시종·김영진·박영선·정병국 의원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2011. 5. 27 정부 제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6 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 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 임영호·권선택·이영애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09. 5. 29 정옥임·유기준·심재철·안상수· 이진복·김금래·이한성·김성태·백성운· 이정선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10. 12 권경석·이정현·이명규·정두언· 신성범·김성조·정갑윤·김정권·조진래· 유정현·김태원·신지호·김소남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0. 3. 26 조정식·박주선·조영택·최영희· 전혜숙·박기춘·문학진·김상희·김진애· 박은수·홍재형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 이명수·박대해·안효대·이윤석· 유정현·윤상일·권선택·이진삼·김용구· 임영호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6 김태원·공성진·이인기·홍정욱· 이한성·김정권·손범규·김충환·김소남· 안홍준·강창일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0 이명수·김창수·김을동·김정권· 권선택·임영호·심대평·이상민·변웅전· 김용구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 발의)

(2011. 3. 17 김성조·김효재·주성영·안홍준·김혜성·한선교·이철우·김정권·조진래·김태환·강용석·정진섭·권영세·이해봉·황우여·윤상현·김태원·이화수·김광림·최경희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29 정부 제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9. 30 이명수·김을동·이진삼·임영호· 권선택·김창수·김용구·정의화·이재선· 김낙성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29 정부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4 임두성·한선교·정해결·김성수· 허태열·최욱철·정갑윤·최경환·서상기· 김무성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09. 6. 30 원희목·손숙미·이한성·신학용· 강명순 · 김성회 · 이춘식 · 안효대 · 김춘진 · 전혜숙ㆍ김정훈ㆍ허원제ㆍ김용태ㆍ유정현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한선교·안홍준·이한성·이인기· 김금래 · 박대해 · 안형환 · 허원제 · 강승규 · 정갑유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권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5 이상권·권성동·김성회·김재경· 김태환 · 박민식 · 신상진 · 이인기 · 이종혁 · 이한성 · 이화수 · 정영희 · 정태근 · 최연희 · 홍일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1. 2. 7 이학재·이화수·김금래·손범규· 이명규 · 정옥임 · 권영진 · 윤상현 · 여상규 · 김효재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영호 · 김낙성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 유정현·원유철·이범래·이은재· 김태원 · 김소남 · 김유정 · 이윤석 · 박민식 · 강석호・신지호・노철래・김성태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발의)

(2009. 11. 30 임두성·한선교·윤석용·정옥임· 김무성 · 윤영 · 임동규 · 김옥이 · 이경재 · 나성린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워 대표발의)

(2009. 12. 10 김유정·노영민·이인기·홍재형· 김상희 · 박선숙 · 김재윤 · 김태원 · 손범규 · 송영길·박영선·정갑윤·김성순·강기정· 원혜영·김영진·이명수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월 25일 정부 제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4. 8 이명수·김용구·김을동·김창수· 권선택 · 임영호 · 윤상일 · 김태원 · 정의화 · 김낙성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워 대표발의)

(2011. 4. 29 백원우·박은수·최재성·전현희· 주승용 · 문학진 · 조정식 · 장병완 · 이석현 · 장세환 · 최규식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 의원 대표 발의)

(2010. 3. 9 조진형·김낙성·김소남·유정현· 송훈석 • 이사철 • 정해걸 • 김영진 • 신성범 • 정갑윤·이화수·최연희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9. 16 정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2011. 2. 7 이학재·이화수·김금래·손범규· 이명규 · 정옥임 · 권영진 · 윤상현 · 여상규 · 김효재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21 정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 선택 · 류근찬 · 이재선 · 김용구 · 심대평 · 임 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7 정부 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6 박대해·이진복·유재중·김세연· 이종혁 · 허원제 · 정의화 · 정해걸 · 김정훈 · 서병수・김무성・장제원・유기준・조경태・ 허태열 · 현기환 · 김형오 · 박민식 · 안경률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9 황진하·김성수·신상진·손범규· 김영우 · 허원제 · 홍사덕 · 김을동 · 홍영표 · 조진래·문학진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1. 4. 28 정부 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1. 9. 14 김성수·이한성·김우남·허원제· 신성범·이병석·노철래·유성엽·강석호· 성윤환·윤영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4. 5 오제세·김성곤·김우남·김용구· 조영택·김효석·양승조·김창수·유재중· 정장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

(2011. 3. 21 김정권·김학송·김태원·나성린· 이한성·김소남·황영철·김성수·김성동· 김효재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

(2011. 3. 10 김호연·박민식·박준선·서병수· 유기준·이명규·이사철·이진복·임동규· 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1. 2. 23 안효대·김소남·김정권·송훈석· 손범규·강길부·임동규·신지호·정해걸· 강석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

(2011. 5. 27 유정현·정영희·박대해·정옥임· 이명수·김용구·배영식·김소남·노철래· 원유철·박보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8. 9 이종혁·서상기·이두아·박상은· 여상규·김재경·안경률·현기환·윤석용· 김을동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2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21 정부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16 유정현·박순자·김태원·정영희· 안효대·김소남·윤석용·정해걸·신지호· 노철래·김성수·김용구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3. 7 유정현·김소남·신학용·김정권· 이윤석·김효재·정영희·김성동·원희목· 홍정욱·김태원·배영식·김성수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28 정부 제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5 박대해·김정권·이정선·권경석· 김세연·정해걸·최구식·유재중·박준선· 원희목·조원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최규성·강기정·김영록·김우남· 조영택·유선호·김재윤·박기춘·문학진· 강기갑·노영민·강창일·정범구·이윤석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2011. 5. 9 이종혁·여상규·김을동·서상기· 강용석·이한성·김정훈·유성엽·김영선· 한선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7. 28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5 안효대·김소남·김선동·권영진· 최경희·원희룡·박민식·조진래·장제원· 김태호 의원 발의)

(이상 5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2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29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09. 4. 30 서상기·홍사덕·김태환·이해봉· 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 이명규·조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 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 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 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 이철우·이성헌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2. 13 김춘진·양승조·박은수·최재성· 김영진·안민석·김상희·이석현·백재현· 이미경·서갑원·송민순·문학진·김재윤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09. 6. 29 김영진·김성순·박은수·강기갑· 김동철·김재윤·박기춘·정해결·김부겸· 최재성·백원우·이명수·안민석·박주선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회 의원 대표 발의)

(2011. 1. 27 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 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 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3 배은희·이경재·김기현·김세연· 서상기·박보환·김태환·이정선·이상민· 김무성·임해규·정의화·나성린·조전혁· 권영진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1. 10. 6 주광덕·임해규·박보환·서상기· 김춘진·김선동·김세연·배은희·박영아· 박민식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5 배은희·권영진·김무성·김세연· 박보환·서상기·유성엽·이상민·임해규· 조전혁·김소남·김충환·김태환·나경원· 나성린·성윤환·손숙미·신상진·안형환· 유기준·윤석용·윤진식·이명규·이정선· 이한성·임영호·정갑윤·정양석·정의화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23 강창일·최규성·이종걸·추미애· 조영택·이낙연·박기춘·장세환·박선숙· 김영진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1. 1. 27 배은희·김소남·이정선·윤상현· 서상기·황영철·이인기·나성린·김세연· 이명규·손숙미·박보환·허원제·김동성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9 박보환·조전혁·김세연·조원진· 서상기·정진섭·정두언·김선동·배은희· 권영진·박영아·임해규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5. 3 김춘진·김호연·김영록·오제세· 김성순·전혜숙·유성엽·김영진·김성곤· 안민석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5 박보환·서상기·조전혁·김선동· 권영진·유정현·김세연·구상찬·주광덕· 이철우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9 주광덕·윤석용·박보환·조전혁· 김학용·이한성·손범규·조해진·강성천· 이범관·김옥이·김동성·원유철·박순자· 안효대·정양석·김소남·김태원·조문환· 김용태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08. 7. 15 안민석·김진표·김영진·김재윤· 김효석·서갑원·신낙균·안규백·이미경· 이용섭·최규성·최재성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29 정부 제출)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09. 6. 10 김선동·한선교·박은수·유정복· 이성헌·김성태·허원제·조전혁·우제창· 유재중·남경필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6. 29 김영진·김성순·박은수·장기갑· 김동철·김재윤·박기춘·정해걸·김부겸· 최재성·이명수·안민석·박주선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6 주광덕·임해규·박보환·서상기· 김춘진·김선동·김세연·배은희·박영아· 박민식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8. 13 정부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2. 6 정부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6 강창일·최규성·이찬열·조정식· 박영선·김효석·강기갑·유선호·최문순· 조영택·송민순·장세환·전혜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4 정의화·이명수·김을동·안규백· 이사철·여상규·박준선·원유철·박주선· 김학송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6 주광덕·임해규·박보환·서상기· 김춘진·김선동·김세연·배은희·박영아· 박민식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

(2008. 12. 8 임동규·유성엽·홍정욱·정장선· 이인기·김태환·이달곤·이명규·정영희· 정하균·백재현·김정훈·주승용·배은희 의 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10. 3. 19 김금래·김세연·박은수·신낙균· 신영수·안홍준·원희룡·원희목·유정현· 이두아·이인기·이한성·이해봉·조영택· 한선교·허원제·홍영표·홍정욱·홍희덕· 황우여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4. 22 박선영·권선택·김낙성·김옥이· 김용구·김재윤·김혜성·박순자·변웅전· 신낙균·윤상일·이명수·이재선·이진삼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4. 15 권영진·김선동·정두언·장제원· 서상기·김세연·조전혁·김영우·최구식· 권택기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6. 30 이상민·임영호·이명수·유성엽·류근찬·김용구·김창수·안민석·권선택· 이재선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0. 3. 2 정영희·심대평·조경태·송영선·임영호·노철래·유정현·임해규·윤상일·박보환·조전혁·허천·김정·정해걸·김혜성·안민석·김용구·김춘진·황우여·김영진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 발의)

(2008. 8. 27 강성종·강석호·강창일·김동성· 김성수·김재윤·김우남·김종률·김진표· 김춘진·김충조·김희철·박대해·박종희· 송민순·안상수·안홍준·양승조·양정례· 오제세·윤석용·이낙연·이성헌·이종걸· 이진삼·최문순·최인기·한선교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0. 8. 26 유재중·이성헌·원희목·임두성· 손숙미·박대해·현경병·현기환·최구식· 신성범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

(2010. 8. 26 유재중·이성현·원희목·임두성· 손숙미·박대해·현경병·현기환·최구식· 신성범 의원 발의)

학교체육진흥법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

(2011. 3. 14 박영아·김을동·홍정욱·김태원· 이은재 · 손범규 · 윤석용 · 이한성 · 노철래 · 김소남 · 강용석 · 박순자 · 허원제 · 신낙균 의원 발의)

학교체육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1. 5. 11 안민석·이종걸·김영진·유성엽· 권영길 · 김춘진 · 김상희 · 김재윤 · 최재성 · 백재현 · 변재일 · 최영희 · 조영택 · 강기정 · 이찬열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8. 8. 11 이상민·변웅전·김용구·김창수· 이진삼 · 류근찬 · 김낙성 · 이재선 · 권선택 · 임영호 · 김재윤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08. 8. 11 이상민·변웅전·김용구·김창수· 이진삼 · 류근찬 · 김낙성 · 이재선 · 권선택 · 임영호 · 김재윤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2 김선동·한선교·권영진·이한성· 유기준 · 임동규 · 남경필 · 유성엽 · 윤석용 · 임해규·정영희·허원제·강용석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 의원 대표 발의)

(2009. 8. 4 고승덕·배영식·신학용·임두성· 유정현 · 임영호 · 이한성 · 이혜훈 · 장광근 · 이성헌 · 신영수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

(2009. 11. 17 김진표·김영진·김춘진·안민석· 최재성 · 이찬열 · 최영희 · 홍영표 · 권영길 · 조승수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8 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 오제세 · 강기갑 · 황영철 · 김우남 · 김영진 · 김선동 · 김용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 조전혁 · 권영진 · 심재철 · 조원진 · 이한성 · 김태환 · 배은희 · 구상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25 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 조승수 · 안민석 · 최문순 · 홍희덕 · 김상희 · 김영진 · 유원일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8 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 오제세 · 권영길 · 강기갑 · 신건 · 황영철 · 김우남·김용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8 유성엽·김성수·이명수·강창일· 오제세 · 강기갑 · 황영철 · 김우남 · 김영진 · 김선동·김용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5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 조전혁 · 권영진 · 심재철 · 조원진 · 이한성 · 김태환 · 배은희 · 구상찬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6 박보환·서상기·정두언·이철우· 조전혁 · 권영진 · 심재철 · 조원진 · 이한성 · 김태환 · 배은희 · 구상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25 정부 제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3. 31 김영진·김동철·최규성·안민석· 장세환 · 장병완 · 김상희 · 권영길 · 홍영표 · 김재균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1 김세연·유기준·신학용·이종혁· 이명수 · 조경태 · 이해봉 · 이성헌 · 김태원 · 강용석 · 정해걸 · 홍영표 · 김성태 · 주광덕 · 이계진 · 황우여 · 박보환 · 이한성 · 정갑윤 · 김금래·이정선·이인기·김무성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4 황우여·주광덕·김옥이·이성헌· 김영진 · 고승덕 · 이애주 · 김세연 · 김기현 · 김선동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

(2009. 6. 2 조전혁·강명순·강석호·권영진·

김부겸 · 김선동 · 김성수 · 김성조 · 김성회 · 김옥이 · 김장수 · 김춘진 · 김태환 · 김학용 · 김효재 · 박보환 · 박상은 · 박영아 · 박준선 · 서병수 · 서상기 · 손숙미 · 신상진 · 신지호 · 신학용 · 안상수 · 안홍준 · 여상규 · 원유철 · 원희목 · 유기준 · 유정현 · 윤상현 · 윤석용 · 이경재 · 이계진 · 이두아 · 이상득 · 이윤성 · 이은재 · 이인기 · 이정선 · 이종혁 · 이주영 · 이학재 · 이한성 · 임해규 · 장제원 · 정갑윤 · 정두언 · 정몽준 · 정양석 · 정의화 · 정태근 · 정해걸 · 조문환 · 조윤선 · 조진형 · 차명진 · 한선교 · 허태열 · 현경병 · 홍일표 · 황영철 · 황우여 의원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9. 8. 19 최재성·백원우·김영진·김춘진· 최규식·신학용·송영길·홍영표·최영희· 김진표·김부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09. 4. 20 이철우·강석호·권영진·김세연· 김충환·송영선·안효대·양정례·윤영· 이계진·이인기·정해결·정희수·최구식· 황우여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9. 9. 18 이정현·홍정욱·신학용·배영식· 정해걸·이윤석·신영수·유성엽·서병수· 이종혁·정병국·김성태·손범규·박민식· 임영호·이명수·김선동·심대평·권경석· 김효재·황우여·이정선·한선교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09. 12. 4 김세연·강용석·권경석·김부겸·김태원·여상규·이용섭·이윤성·정두언·정해결·최구식·현기환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8 김기현·신학용·유기준·김정권· 김성순·권영진·임영호·이성헌·이명수· 이한성·배영식·조배숙·이해봉·윤상현· 정병국·손숙미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0. 10. 1 김춘진·이한성·신상진·김동철·

유성엽·김성곤·전혜숙·김영록·이용경· 유원일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0 장윤석·현경병·이찬열·최경희· 이한성·이인기·신상진·박순자·주성영· 정갑유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 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6 서상기·박보환·김세연·조전혁· 박종근·한선교·정희수·임해규·김태환· 이해봉·이한성·이계진·이철우·이군현· 구상찬·이종혁·김효재·이화수 의원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1. 11. 4 서상기·정두언·김세연·박보환· 조전혁·조진래·원희목·이종혁·배은희· 권영진 의원 발의)

(이상 6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5건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보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09. 5. 13 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 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 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 이경재·안홍준·안상수·이성헌·강승규· 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2011. 6. 15 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 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 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 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윤선· 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유선 의원 대표발의)

(2011. 2. 24 조윤선·유기준·원혜영·고흥길· 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 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 홍사덕·조진형·나성린·박진·이한성· 정두언·한선교·허원제·이철우·진성호· 장광근·황영철·신성범·김성수·조전혁· 이춘식·유일호·이은재·이사철·배은희· 진영·임동규·최경희·이성헌·김금래· 황진하·김장수·이정현·강명순 의원 발의) 씨름진흥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1. 8. 16 이철우·강승규·김성동·김세연· 박보환·이경재·임해규·정해결·정희수· 조윤선·조전혁·주호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2011. 11. 1 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 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 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5. 20 김성동·이한성·한선교·김기현· 허원제·신성범·이애주·김을동·김광림· 손숙미·조윤선 의원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1 정부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7. 21 임두성·정희수·정해결·김일윤· 이주영·김소남·강창일·김종률·손숙미· 박대해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8 정부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29 조배숙·송민순·최규성·박주선· 김영진·강창일·문학진·이용섭·유선호· 장세화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 발의)

(2010. 11. 12 강승규·김성동·한선교·김용태· 허원제·이종혁·조전혁·나경원·황진하· 박준선·이혜훈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 발의)

(2011. 3. 21 윤석용·김정권·신상진·손범규· 유재중·황영철·박은수·손숙미·김혜성· 권영진·황우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11. 8. 17 한선교·강승규·이철우·진성호· 김금래·손범규·김태원·고흥길·허원제· 김성동·이경재·홍사덕·남경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17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09. 7. 6 최문순·강기갑·강기정·곽정숙· 김동철·김상희·김영진·김재윤·김종률· 김창수·박선숙·박영선·박은수·송영길· 신학용·오제세·이미경·이용경·이종걸· 장세환·조승수·조영택·최영희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

(2009. 9. 18 김금래·박대해·홍사덕·정갑윤·성윤환·김옥이·박민식·이경재·강승규·김소남·윤석용·고흥길·한선교·원유철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10. 4. 20 최문순·강기갑·강기정·김부겸· 김재윤·김진애·문학진·박은수·신학용· 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성남·이용섭· 장세환·정동영·조승수·조영택·최영희· 홍희덕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문순 의원 대표발의)

(2010. 4. 21 최문순·강기갑·강기정·김부겸· 김재윤·김진애·문학진·박은수·신학용· 양승조·원혜영·이미경·이성남·이용섭· 장세환·정동영·조승수·조영택·최영희· 홍희덕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10. 9. 27 전병헌·문학진·서갑원·박주선·최문순·김부겸·김춘진·최종원·오제세· 전혜숙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10. 12. 9 김재윤·최규성·이용섭·박은수· 강창일·김세연·권선택·홍희덕·원혜영· 김우남·김상희·송민순·이미경·이찬열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9 장병완·강기정·김영록·양승조· 유선호·이춘석·전혜숙·조영택·조정식· 주승용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1. 4. 5 이낙연·우제창·박은수·김재균· 강창일·조영택·조승수·유선호·이주영· 권영세·최인기·김진표·김성곤·손범규· 김낙성·김충환·강봉균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1. 1. 11 김성동·손범규·유정현·김세연· 김성곤·강용석·장윤석·이애주·강명순· 허원제·박보환·김광림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0. 9. 14 전혜숙·강창일·박기춘·신낙균· 김부겸·안규백·서갑원·전병헌·김재균· 송민순·최문순·박은수·최철국·이용경· 장세환·김성곤·이용섭·최종원·문학진· 조영택·이종걸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2010. 9. 27 전병헌·문학진·서갑원·박주선· 최문순·김부겸·김춘진·최종원·오제세· 전혜숙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2 이군현·김성동·김용태·박대해· 박민식·서상기·신성범·여상규·유재중· 이명규·허원제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2 정부 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1. 3. 18 이철우·정두언·권영진·박보환· 여상규·정희수·김세연·한선교·김성동· 이군현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사덕 의원 대표발의)

(2011. 5. 23 홍사덕·강용석·권영진·김금래· 김성동·김을동·김정훈·김효재·박종근· 서상기·유성엽·유승민·유일호·이경재· 이명규·이종혁·이해봉·이혜훈·장윤석· 정의화·정하균·조원진·조진형·주성영· 한선교·허원제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9 장병완·강기정·김동철·김영록·김영적·김영진·김재균·박주선·양승조·유선호·이용섭·이춘석·조영택·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0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8. 17 김우남·강기정·조경태·이용희· 김효석·오제세·이사철·송훈석·최인기· 최영희·김성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9. 2 김우남·김성수·김상희·김효석· 김영록·송훈석·정해걸·오제세·강기갑· 강석호·조경태·이용희·김춘진·김학용· 최인기 의원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1. 9. 9 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결·황영철·이사철·이철우· 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 여상규·박보환·김성회·안효대·윤영· 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 이화수 의원 발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9. 10. 30 김우남·강창일·양승조·조경태· 강기정·원희룡·유성엽·김영록·김재윤· 김동철·최규성·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3 최규성·강창일·김부겸·김성곤· 김세웅·김영록·김우남·김춘진·김희철· 노영민·류근찬·문학진·박선숙·배영식· 변재일·신낙균·안민석·양승조·여상규· 이강래·이시종·장제원·전병헌·정세균· 정해걸·조배숙·조진래·최규식·최인기· 최철국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10. 7. 16 권경석·윤영·신성범·최구식· 김정권·김학송·이명수·정두언·김태원· 노철래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범구 의원 대표 발의)

(2010. 6. 30 정범구·정해결·이찬열·노철래· 김우남·송민순·김세연·박주선·유선호· 강창일·김재윤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 발의)

(2010. 10. 27 류근찬·변웅전·임영호·김낙성· 김영록·이진삼·심대평·김성수·김창수· 이명수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1. 27 유선호·양승조·이춘석·김성곤· 조영택·조정식·강창일·최규성·김춘진· 장병완·이석현·김상희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3. 14 정부 제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8. 4 김우남·오제세·유선호·김춘진· 유성엽·김성수·김을동·강기정·김영록· 이용희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 발의)

(2010. 6. 11 이재선·변웅전·이상민·류근찬· 이진삼·이인제·이명수·김용구·강길부· 임영호·조정식·김창수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9. 9 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결·황영철·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여상규·박보환·김성회·안효대·윤영·

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 이화수·김금래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8. 2 정부 제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31 최인기·성윤환·여상규·이낙연· 윤영·김우남·김학용·조영택·유성엽· 김성곤·유선호·전현희·송훈석·강봉균· 신건·김영록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0 성윤환·송훈석·신성범·김혜성· 박우순·황영철·이낙연·여상규·김학용· 최인기·송광호·정해걸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4 김성수·김우남·박상은·이한성· 김학용·유성엽·노철래·강석호·성윤환· 윤영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26 정부 제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5 성윤환·송훈석·신성범·김혜성· 황영철·여상규·김학용·최인기·정해결· 유재중·윤영·조진래 의원 발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4 정부 제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1. 3 최경희·임동규·황영철·윤석용· 장제원·허원제·이종구·정해결·윤영· 안효대 의원 발의)

(이상 1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보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8. 24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 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이명규· 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7. 15 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 김재균·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 이찬열·전병헌·송훈석·김진표·홍재형· 김영환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8. 25 김재균·노영민·주승용·강창일· 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전병헌· 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31 노영민·최규성·박우순·김진표· 강창일·김재균·조경태·박주선·유선호· 홍영표·주승용·조정식·김창수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1. 9 정부 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1. 3. 28 김재균·강기정·김영진·김영록· 김동철·조영택·장세환·유선호·이용섭· 주승용·장병완·김효석·이낙연 의원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

(2011. 4. 26 김유정·이윤석·김재균·김상희· 유선호·최영희·김진표·강창일·백재현· 강기정·정범구·변재일·김영환 의원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0. 3. 8 서상기·강운태·김영진·박종근·배영식·유승민·이명규·이한구·이해봉·조원진·주성영·주호영·홍사덕 의원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1. 12. 8 강창일·김재균·조정식·조영택· 장병완·주승용·강성종·오제세·최규성· 이낙연 의원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1. 11. 10 정부 제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1. 6. 30 김영환·김춘진·이명규·조영택· 최규식·김성곤·강기정·정장선·조경태· 조정식·주승용·최영희 의원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9. 30 이명수·김을동·이진삼·임영호· 권선택·김창수·김용구·정의화·이재선· 김낙성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이춘석·정범구·안규백·백재현· 강기정·박지원·조정식·주승용·박우순· 전현희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 정갑윤·박준선·신성범·이사철· 김태환·김소남·노철래·최구식·이화수· 김세연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 강창일·유선호·유성엽·강기갑· 조영택·오제세·조배숙·김재균·조정식· 박은수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 발의)

(2011. 8. 24 김재균·강기정·주승용·강창일· 박은수·오제세·전병헌·유선호·박주선· 정장선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지식경제위원장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9. 6. 12 정미경·강석호·김성조·박종희· 손범규·심재철·유성엽·유정현·이인기· 이정선·이한성·이해봉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 전현희·백원우·최철국·박민식· 박지원·정범구·우윤근·최규성·최재성· 최인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영호 의원 대표발의)

(2009. 6. 24 임영호·김창수·박상돈·이재선· 이용희·류근찬·김용구·이명수·이진삼· 권선택·김낙성·심대평·변웅전 의원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0. 12. 30 정부 제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9. 20 신상진·이종구·권경석·강길부· 나성린·정양석·유정현·안효대·강명순· 임해규·이춘식·최경희·원희목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

(2009. 4. 3 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 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 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7 이영애·전여옥·황우여·김을동· 송영선·정옥임·조윤선·고흥길·강용석· 고승덕·오제세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6. 24 김소남·홍정욱·안효대·이해봉· 김충환·권경석·이명수·원희룡·유정현· 손숙미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10. 29 정부 제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2 윤석용 · 임동규 · 임두성 · 이명수 · 김태원 · 김충조 · 주광덕 · 권영진 · 이상민 · 정하균 · 유재중 의원 발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10. 11. 3 정부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3 이재선·신상진·정옥임·심대평· 이명수·이상민·이인제·류근찬·김용구· 임영호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8 신상진·이낙연·유성엽·강명순· 박상은·박순자·이명수·김을동·정의화· 이해봉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2008. 12. 4 정하균·김성태·김성회·손범규· 송훈석·최연희·이인제·노철래·이한성· 이화수·임두성·유정복·권영진·신상진· 홍장표·이윤석·정영희·원희목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3. 10 이정선·유기준·주광덕·임동규·박은수·안상수·황우여·이화수·신영수·정두언·안홍준·원희목·이인기·오제세·안효대·유재중·이한성·이애주·손숙미·정미경·이해봉·손범규·강성천·김소남·서청원·나성린·심재철·고흥길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0. 10. 21 주승용·최철국·박은수·전현희· 이춘석·양승조·장병완·김성곤·김재균· 정장선·조영택 의원 발의)

외국인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11. 4. 8 서울 마포구 연남동 255-34 서진 빌라 C동 401호 왕애려 외 1800인으로부터 곽정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 발의)

(2011. 6. 10 박상은·이애주·강명순·김금래· 최경희·김성수·신성범·이춘식·신상진· 여상규·성윤환·김학용·김광림·나성린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14 이정현·권영진·최인기·이한성· 이성헌·김장수·이경재·이종혁·김성곤· 김학송·최경환·홍사덕·곽정숙·유성엽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2. 11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4. 30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0. 5. 17 신상진·김호연·박은수·강기정· 강명순·최영희·김성수·유재중·김성태· 원희목 의원 발의)

(이상 2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7 정부 제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7 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 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 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헌·이화수· 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 황영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

(2011. 9. 22 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 김낙성·김창수·변웅전·이영애·주승용· 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 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 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 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0. 18 정부 제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26 정부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7 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오· 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 김호연 의원 발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6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09. 11. 13 조원진·강성천·박종근·박준선· 유정현·이두아·이명규·이사철·이화수· 정병국·조문환·허태열 의원 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12. 24 정부 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1 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 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 박대해 의원 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1. 16 정부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6. 10 이미경·백재현·정범구·추미애· 최영희·김진애·장병완·김충조·홍영표· 김상희·김성곤·오제세·김영록·최재성· 송민순·이찬열·박지원·박우순·노영민· 안규백·강창일·이용섭·박은수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5 이정선·손범규·원희룡·정진섭· 정병국·이범관·강성천·김성순·김용구· 박대해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1. 4 이명수·김창수·임영호·김용구· 김정권·이상민·권선택·정의화·이용희· 김을동 의원 발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1. 4. 29 정부 제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 14 정부 제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11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8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11. 3. 31 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 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 손범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 3. 2 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 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 이한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8 장윤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 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 최구식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 발의)

(2011. 9. 27 안홍준·송민순·원희목·유재중· 윤석용·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 이한성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9 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 강창일·강기갑·노영민·이찬열·오제세· 김재윤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2011. 8. 17 정부 제출)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09. 12. 31 박민식·원희룡·박준선·이한성· 김세연·정갑윤·현기환·전현희·유재중· 박대해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 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 김낙성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10. 19 정부 제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1. 24 안홍준·박순자·현경병·이한성· 유재중·송민순·원희목·유성엽·이찬열· 공성진·윤석용·신상진·김소남·이애주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1 최규성·조배숙·강창일·유선호· 노영민·김효석·김영진·조영택·최인기· 정세균·조경태·박기춘·김희철·김영록· 김우남·서종표·원혜영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5. 31 최규성·박기춘·강기정·백재현· 강기갑·이찬열·정범구·노영민·유선호· 김재윤·강창일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29 정부 제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7. 12 김우남·오제세·김상희·김영록· 최규성·양승조·강창일·김성수·이사철· 조경태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근찬 의원 대표발의)

(2011. 5. 4 류근찬·김영진·김영록·권선택· 김낙성·이용희·이명수·김용구·김창수· 이진삼·변웅전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4. 20 정부 제출)

대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09. 11. 5 장윤석·정진석·박진·최규성· 황영철·이은재·허태열·노철래·조영택· 손범규·홍일표·이한성·유정현·이인제 의원 발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1. 5. 24 정부 제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 발의)

(2010. 5. 14 김소남·이명수·이한성·이해봉· 김유정·이인기·김성태·김태원·김성수· 김낙성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2011. 9. 14 김희철·이찬열·백재현·유선호·박기춘·김영진·최규성·유성엽·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11. 8. 30 허천·정희수·김성태·윤영·최연희·권성동·정영희·한기호·이정선·장광근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 발의)

(2011. 3. 2 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 박선영·송훈석·윤상일·이종혁·서상기· 김혜성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7. 12 김우남·오제세·김상희·김영록· 최규성·양승조·강창일·강기정·김성수· 이사철·조경태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 의원 대표 발의)

(2009. 8. 14 임두성·김무성·윤석용·이경재· 정해걸·윤영·임동규·한선교·이성헌· 김옥이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8 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 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 이정현·박기춘·이성헌·강성천·신영수· 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 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5. 11 정부 제출)

고령자 주거안정법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08. 8. 1 김소남·이한성·황우여·현기환· 김효재·박보환·장제원·구본철·홍장표· 임두성·박준선·진영·이경재·박종희· 신상진·정하균·김성수 의원 발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6 이병석·허천·김성태·정희수· 윤영·박상은·백성운·박순자·장광근· 김정권·송광호·윤두환·전여옥·유정복· 이해봉·김소남·신영수 의원 발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09. 6. 25 신영수·송영선·이주영·주광덕· 김태원·정양석·이성헌·안효대·임동규· 김정권·원희목·박상돈·오제세·이종구· 이종혁·강석호·이재선·임영호·홍정욱· 심대평·김성태·권영진·유성엽·김재윤· 이병석 의원 발의)

장애인 주거지원법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9. 11. 25 곽정숙·강기갑·권영길·김성곤·

박은수·백재현·양승조·유원일·이명수· 이정희·이종걸·조승수·조영택·최규성· 홍희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1. 9. 15 백재현·유선호·안민석·박우순· 김효석·조경태·오제세·이성남·문학진· 백원우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5 백재현·유선호·안민석·박우순· 김효석·조경태·오제세·이성남·문학진· 백원우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0 노영민·주승용·최철국·김재균· 이용삼·이시종·우윤근·강성종·김유정· 김창수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2010. 12. 3 안홍준·손범규·홍여표·현경병· 김소남·원희목·이병석·유일호·유재중· 조승수·윤석용 의원 발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1. 1. 7 박순자·김정권·김소남·이한성· 강용석·김성태·주광덕·김태환·김태원· 정희수·박보환 의원 발의)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3 이병석·강석호·정희수·조원진· 김정권·손범규·신영수·김성순·신상진· 김성태·권영진·장광근·윤영·현기환 의원 발의)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8 이정선·현경병·양승조·배은희· 김장수·이애주·유기준·윤상현·안상수· 이정현·박기춘·이성헌·강성천·신영수· 진성호·유성엽·김성곤·정병국·진영· 정미경·심재철·이두아 의원 발의)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1 권경석·노철래·이명수·박대해· 정영희·이은재·정진섭·신성범·김소남· 김영우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

(2008. 9. 2 김효재·김정권·고흥길·이인기· 진수희·박대해·이해봉·안경률·백성운· 한선교·양정례·현기환·조진래·정양석· 박종희·강석호·안상수·김정훈·김성태· 이한성·박선영·김태환·조문환·박보환·배은희·유성엽·강성종·임영호·나성린· 강성천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08. 8. 14 박준선·권영진·김동성·김소남· 김정권·백성운·손범규·안상수·안형환· 양정례·유기준·이해봉·조경태·한선교· 김효재·강승규·장제원·김기현·이한성· 김성태·박선영·홍일표·유성엽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08. 11. 3 이병석·이상득·김충환·정희수·김일윤·유성엽·박상은·정의화·조윤선·정영희·정미경·김옥이·박민식·최연희·이은재·원유철·강석호·김성곤·안상수·김성태·윤석용·황영철·이명규·김효재·김태원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2009. 5. 18 박상돈·원희룡·김우남·변재일· 김춘진·유성엽·이명수·임영호·김창수· 김성곤·이재선·김용구·심대평·이두아· 김성태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08. 11. 10 원유철·나성린·정갑윤·송영길· 이화수·김성곤·유성엽·황영철·김용구· 김태원·조경태·김일윤·안규백·이병석· 이윤석·조정식·장윤석·홍일표·김유정· 이은재·김광림·강석호·김옥이·안상수· 김성수·황우여·임해규·정미경·정진섭· 강창일·정영희·이범관·이주영·진성호· 권영진·신상진·최연희·박민식·현경병· 심재철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1. 4. 15 박선영·강창일·권선택·김낙성· 김옥이·김용구·류근찬·문학진·변웅전· 유성엽·이명수·이진삼·장세환·장윤석· 정수성·현경병 의원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0. 6. 30 정부 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9. 24 손범규·김정권·신학용·김옥이·박순자·이인기·임동규·이한성·신상진· 구상찬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11. 9. 15 김진표·안민석·노영민·김용구·조정식·백재현·남경필·이찬열·정미경·백원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0. 4. 28 권경석·김세연·정갑윤·이인기·이사철·김소남·김태원·윤영·이명규·정두언·허천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1. 9. 1 김기현·이한성·유기준·주호영· 윤석용·김성태·윤상현·나성린·김정· 안홍준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1 최규성·조배숙·강창일·유선호· 노영민·김효석·김영진·조영택·최인기· 정세균·조경태·박기춘·김희철·김영록· 김우남·서종표·원혜영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5 최규성·백재현·유선호·박기춘· 오제세·이찬열·강창일·노영민·김춘진· 조배숙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9. 6. 19 이정희·강기갑·곽정숙·권영길· 김재윤·김창수·유성엽·유원일·홍재형· 홍희덕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8 이정희·강기갑·강명순·곽정숙· 권영길·유성엽·유원일·이용섭·조승수· 홍희덕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8 김진애·강창일·오제세·양승조·이용섭·김재윤·박은수·이해봉·김상희·김유정·박선숙·고승덕·김진표·강기정·김부겸·송민순·박지원·조영택·조정식·김성곤·노영민·주승용·유선호·안규백·

이성남·최영희·이미경·이찬열·문희상· 최규성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 20 신영수·송영선·구상찬·원희룡· 이명수·이한성·정의화·김정권·김성수· 현기환·허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29 이종걸·안민석·전혜숙·이석현· 김태원·손범규·정진섭·백재현·심재철· 김성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0. 3. 15 장제원·신성범·정의화·박대해· 원유철·유정현·권경석·정해걸·조원진· 김정훈·유기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0. 2. 26 주호영·홍사덕·주성영·배영식·조원진·김정권·정의화·유기준·이한성·서상기·박종근·이명규·정옥임·박순자·임영호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0. 4. 8 손범규·박보환·현기환·고흥길· 홍사덕·김영선·임해규·박준선·김성수· 정미경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

(2010. 3. 26 전여옥·강길부·신영수·윤영·현기환·강승규·김용태·김정권·이병석·김성태·정진섭·박상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0. 3. 29 김성태·박순자·이명규·나성린· 주광덕·이화수·유기준·권영진·허천· 신영수·강운태·윤석용·이한성·강성천· 황영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 7. 14 정부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2010. 6. 11 김진애·강창일·신학용·조영택· 조승수·김재윤·강기갑·양승조·김희철· 유원일·조정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8. 5 이명수·홍희덕·임영호·유성엽· 김을동·김용구·박선영·김효재·김창수· 김재윤·권선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2010. 12. 28 신영수·문학진·윤영·김정권·김태원·강기정·안효대·강길부·허원제·정미경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 19 김상희·장세환·이석현·유선호· 최종원·신낙균·안민석·박주선·이미경· 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2011. 2. 21 김희철·유선호·김진표·김재윤· 신영수·강기정·강창일·이윤석·김영록· 이찬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 6 강승규·허천·안홍준·장제원· 장윤석·이학재·한선교·전여옥·원희목· 정희수·조해진·김영우·최구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허원제·신영수·유기준·현기환· 김성동·박순자·최구식·박민식·박대해· 서병수·원희목·이해봉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2011. 4. 22 이재오·강용석·최병국·홍준표· 장제원·허천·김효재·원희목·이윤성· 손범규·현경병·이한성·권택기·정옥임· 이화수·이군현·황우여·이종혁·백성운· 유정현·정의화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1. 4. 19 임해규·고승덕·황우여·차명진· 남경필·박보환·서상기·이범래·조문환· 김선동·강명순·김금래·이애주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1. 4. 20 김성태·황우여·김효재·강성천·황영철·윤석용·정하균·김호연·김선동·현기환·김성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1. 8. 12 이종걸·양승조·이석현·장세환· 안민석·김영진·장병완·김재균·최종원· 조영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2011. 8. 24 김진애·강기갑·강기정·김상희· 김영진·김재윤·김진표·김효석·문학진· 문희상·박영선·박우순·박주선·신학용· 유선호·이미경·조승수·조영택·조정식· 최규성·홍희덕 의원 발의)

재정비촉진사업 전수조사를 위한 임시조치법안 (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3 김진애·강기갑·이윤석·유선호· 이미경·이찬열·조정식·문희상·안민석· 박기춘·이석현·김상희·백원우·김성순· 권영길·정장선·조승수·최규성·金先東· 곽정숙·이용섭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2 임해규·진수희·주광덕·강길부· 이정선·안홍준·강석호·정해걸·신성범· 김소남·이화수·황영철 의원 발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2011. 10. 24 정부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7 이미경·김부겸·김상희·김성순· 김진애·김희철·문학진·박영선·백원우· 백재현·안민석·원혜영·이용섭·이종걸· 이찬열·전병헌·정장선·조정식·추미애· 최규성·최규식·홍영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2. 12 김상희·이석현·김부겸·김영진· 장세환·유성엽·백원우·최종원·안민석· 양승조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2011. 11. 1 장기갑·곽정숙·이정희·김진애· 권영길·홍희덕·金先東·조승수·유선호· 유성엽·조경태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5 최규성·백재현·유선호·박기춘· 오제세·이찬열·강창일·노영민·김춘진· 조배숙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11. 3. 24 차명진·손범규·김효재·김용태·정진섭·조문환·조전혁·이화수·김영우·김성동·이상권·한기호·강승규·이범관·김성회·김태원·유일호·이정선·김장수·박준선·윤상현·안형환·신지호·임동규·강성천·이범래·임해규·현경병·권택기·이사철·이주영·진성호·김충환·원유철·나성린·이인기·유정현·김형오·진영·박순자·백재현·백원우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차명진·정태근·권성동·김학용· 이화수·이은재·이정선·이애주·이두아· 김태원·김옥이·윤상일·김을동·박준선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5. 16 최규성·송민순·최규식·장세환· 이종걸·유선호·강창일·노영민·이춘석· 이석현·이찬열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해규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2 임해규·진수희·주광덕·강길부· 안홍준·이정선·강석호·정해걸·신성범· 김소남·이화수·황영철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8. 18 김상희·이용섭·안민석·유성엽·김영진·장세환·김우남·이석현·장병완·김부겸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1 이미경·김부겸·김상희·김성순· 김진애·문학진·박영선·백원우·백재현· 안민석·원혜영·이용섭·이종걸·이찬열· 전병헌·정장선·조정식·추미애·최규성· 최규식·홍영표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진수회 의원 대표발의)

(2008. 11. 28 진수희·정진석·김용태·박준선· 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 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 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09. 1. 29 이상민·안민석·김춘진·정영희· 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세연·김용구· 임영호·권선택·李玲愛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1. 4. 5 송광호·오제세·윤진식·정범구·이인제·노영민·변재일·백성운·이학재·정의화·정수성·최구식·최규성·홍재형·장제원·조원진·장윤석·현기환 의원 발의) (이상 8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1건 국토해양위원장 보고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1. 10. 26 장병완·이종걸·양승조·유선호· 전병헌·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 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1. 3. 18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0 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 임해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 김성동 의원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1. 8. 2 김춘진·김영진·오제세·유성엽·김성곤·안민석·김영록·이용경·최재성·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8. 5 정영희·권경석·김정·노철래· 변웅전·심대평·유정현·윤상일·윤영· 임영호·정옥임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0 오제세·김호연·장병완·이종걸·유선호·김효석·김영록·김우남·전병헌·박주선·정장선·박우순·김용구·박은수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8. 12 오제세·김창수·최규성·김재균· 유선호·주승용·이종걸·박우순·김춘진· 김효석·정장선·박주선·양승조·조배숙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4. 6 김우남·정해결·최규성·최종원· 김효석·강기갑·이사철·강기정·조경태· 김재윤 의원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0. 8. 23 신낙균·김재윤·김혜성·이낙연· 박은수·유원일·이한성·박대해·문학진· 박주선·송민순·백재현·김영진·김상희· 장세환·전혜숙 의원 발의)

조손가족지원법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1. 2. 14 이정선·김소남·김정권·김태원· 김호연·노철래·이한성·손숙미·유기준· 임해규 의원 발의)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9. 10. 21 이주영·주성영·이시종·이계진· 이종걸·정영희·박순자·이상민·권경석· 우윤근·장윤석·손범규·홍일표·노철래· 박영선·박지원 의원 발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

(2009. 5. 19 주성영·김성조·성윤환·유승민· 박종근·이한성·이해봉·정두언·서상기· 나경원·이성헌·강석호 의원 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1. 5. 13 박순자·원희목·최경희·오제세· 손범규·이한성·박선영·이애주·정옥임· 김성동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0. 7. 15 오제세·배영식·강기정·조배숙· 정장선·박영선·김용구·최철국·신낙균· 유성엽·우제창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 밤의)

(2010. 12. 31 현기환·황영철·김정권·유기준· 윤석용·권영진·백성운·주광덕·유재중· 김성태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

(2011. 9. 14 유선호·문학진·강기갑·김재균· 최규식·김학재·박영선·김춘진·강창일· 김영진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2010. 8. 2 강기정·서갑원·김우남·김재균· 이윤석·양승조·최규식·신건·백원우· 최철국·조영택·김재윤 최재성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0. 6. 11 신성범·김성태·김성수·권영진· 유재중·권경석·정갑윤·여상규·최구식· 황영철·조진래 의원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2008. 12. 31 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 김영우·김정훈·이진복·주광덕·현기환· 황영철 의원 발의)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08. 10. 9 김충환·유기준·김태원·박선영·배영식·정영희·강석호·신학용·안상수·이인기·이해봉 의원 발의)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9. 12. 29 진영·강명순·강용석·고승덕· 구상찬·권영세·권영진·김동성·김성곤· 김정권·김창수·김태원·박근혜·박준선· 박진·송민순·신상진·안상수·안효대· 여상규·원희룡·유기준·유성엽·유일호· 이명수·이범관·이성헌·이종혁·이해봉· 이혜훈·임영호·정영희·정의화·정희수· 현기환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6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 김낙성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1. 5. 13 김영록·김우남·김재균·김춘진· 박은수·신건·안규백·유선호·전현희· 조경태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1. 4. 29 황영철·공성진·김선동·김성동· 김영우·박순자·박준선·성윤환·안효대· 유기준·윤석용·윤진식·이경재·홍일표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

(2011. 4. 6 김충환·조원진·이진삼·유기준· 김진애·김영우·김효재·이명수·김용구· 문희상 의원 발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5. 17 김태원·김소남·이한성·유기준· 정해걸·이정선·조배숙·정희수·김영선· 손범규 의원 발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

(2010. 4. 29 이성헌·권영진·이명수·이해봉· 안홍준·황우여·김우남·이한성·신학용· 유재중·배영식·임두성 의원 발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 발의)

(2011. 7. 27 김영선·이한성·김충환·김태원· 김선동·강길부·유승민·강명순·손숙미· 이경재·조전혁·고승덕·박상은·이애주 의원 발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3 조경태·김을동·손범규·강창일·백재현·김우남·김영록·이낙연·유선호·이한성·박선숙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2011. 1. 11 박순자·손범규·조배숙·김성동· 김충조·정희수·박보환·강용석·김태환· 최경희·김태원·박선영·전혜숙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1. 5. 25 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이상 27건 폐기하기로 의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3 오제세·전병헌·김영록·정장선· 박주선·김금래·김성곤·김춘진·김용구· 홍영표·손범규·변웅전 의원 발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 발의)

(2010. 12. 9 최규성·강기정·김영록·김우남· 조영택·유선호·김재윤·박기춘·문학진· 노영민·강창일·정범구·이윤석 의원 발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 발의)

(2011. 9. 14 유선호·김재균·오제세·김성곤· 조영택·백재현·강창일·이찬열·박선숙· 송민순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1. 2. 11 오제세·정장선·김용구·최재성· 전병헌·김재균·강창일·유선호·김춘진· 김영록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 7. 18 정부 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1. 7. 28 여상규·서상기·신건·김학송· 김태환·조진래·황영철·김정·김학용· 임영호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정선 의원 대표발의)

(2010. 11. 19 이정선·임동규·이해봉·이성현· 유성엽·이낙연·황진하·오제세·김성곤· 신상진·고승덕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2011. 8. 29 김소남·이한성·이정선·신영수·

안효대·손숙미·서병수·배은희·권경석· 이한구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3. 23 권경석·김태원·김학송·서상기·최구식·손숙미·신상진·나성린·여상규·조진래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11. 6. 9 최규식·박선숙·박영선·이낙연· 백재현·이명수·강창일·심대평·김태원· 최영희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1. 5. 3 정옥임·이한성·이춘식·신성범·조문환·이재선·유정현·김성태·강용석· 신영수·조원진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1. 10. 13 전현희·백원우·주승용·박지원· 양승조·송훈석·이춘석·박은수·김효석· 박주선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성유환 의원 대표발의)

(2011. 10. 20 성윤환·김혜성·여상규·조진래· 송훈석·최경희·박우순·김성수·김무성· 정해걸·이낙연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유정 의원 대표발의)

(2011. 10. 5 김유정·강기정·권영길·김영진·김영환·김재윤·김춘진·박주선·안민석·정범구·최규식·최영희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9. 6 최영희·곽정숙·김유정·박영선· 박은수·박지원·양승조·우윤근·원혜영· 이낙연·이춘석·주승용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1. 9. 30 신낙균·추미애·박우순·문학진· 정동영·조영택·원혜영·김영록·김우남· 송민순·이미경·박주선·김동철·김성곤· 이석현·문희상·유원일·손범규·김춘진· 조배숙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1. 6. 30 최영희·강기정·김상희·박은수·백원우·이미경·이성남·이춘석·전현희·조정식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낙균 의원 대표발의)

(2011. 9. 29 신낙균·문학진·김춘진·김유정·이낙연·정동영·박지원·강기정·이성남·원혜영·박우순·조정식·이용섭·신건·박선숙·김성곤·유선호·이석현·손범규·양승조·안규백·박주선·이찬열·조배숙·이미경·송민순·전혜숙·문희상·주승용·장병완·추미애·유원일·조영택·김영록·박은수·전현희·최인기·최영희·홍재형 의원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2011. 9. 30 정의화·이명수·원유철·김용구· 김을동·이종혁·여상규·권영진·김옥이· 김학송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혜성 의원 대표발의)

(2011. 10. 4 김혜성·김소남·노철래·김옥이· 권성동·김정·정장선·권영진·윤상현· 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20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2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충조 의원 대표발의)

(2010. 8. 12 김충조·김소남·이미경·홍영표· 박선숙·최규식·김성곤·정양석·김정· 박영선·김부겸·김재윤·이성헌·주승용 의원 발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 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1. 10. 31 김성곤·유선호·주승용·김충조· 우윤근·이윤석·장세환·오제세·신학용· 양승조·박병석·신건·이성남·조경태· 조진형·김성회·김용구·김정·김태호· 김효석·유일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1년도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 공적자금원리금 2011년도 상환내역 및 2012 년도 상환계획

(이상 2건 2011. 12. 29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12. 29 정부 제출)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